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

2024년 연천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확인·점검(안전점검 등)
-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 조치,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 발생한 경우 대응(대비)·복구에 관한 사항 등

□ 전 부서에서는 본 매뉴얼을 공통으로 적용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종사자가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에 대비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인용된 법령 및 지침 등은 참조하시는 시점에서 개정이나 폐지, 정책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규정, 공문으로 안내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I. 중대시민재해 개요 | 5 |
| 1. 중대시민재해 관련법 | 5 |
| 2. 중대시민재해 개요 | 5 |
| 3. 연천군 적용대상시설 현황 | 8 |
| 4.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 14 |
| II. 안전보건관리체계(주요구축사항) | 15 |
| 1. 추진방향 및 과제 | 15 |
| 2. 연천군 안전·보건 관리 대응체계 | 16 |
| 3. 연천군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및 반별 역할 | 16 |
| 4. 세부추진계획 | 17 |
| III.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 25 |
| IV.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시정사항 이행 | 37 |
| V.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38 |
| 1. 행정담당관 | 40 |
| 2. 문화체육과 | 49 |
| 3. 복지정책과 | 64 |
| 4. 사회복지과 | 72 |
| 5. 회계과 | 89 |
| 6. 건설과 | 99 |
| 7. 의료지원과 | 146 |
| 8. 농업개발과 | 177 |
| 9. 기술보급과 | 203 |
| 10. 전곡읍 | 212 |

서식 및 참고자료

| | |
|--|-----|
| [서식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체점검표 | 224 |
| [서식2] 관리감독자 선임장(안) | 227 |
|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228 |
| - 원료·제조물 | 228 |
| - 건축물 | 229 |
| - 교량 | 232 |
| - 터널 | 234 |
| - 사면(급경사지) | 236 |
| - 옹벽 | 238 |
| [서식4]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대장 | 240 |
| [서식5]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안) | 241 |
| [서식6]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 242 |
| [서식7] 대피(훈련) 실시(안) | 243 |
| [서식8]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 247 |
| [서식9]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개인별 임무카드(예시) | 248 |
| [서식10] 상황판단 회의자료(안) | 250 |
| [서식11] 재해 재발방지대책 계획서(안) | 254 |
| [참고1]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주소 | 256 |
| [참고2] 원료 및 제조물 업무처리 절차표준(안) | 261 |
| [참고3] 법 적용대상 | 262 |
| - 원료 및 제조물 | 262 |
|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266 |
| -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법률 | 270 |
| [참고4] 유해·위험요인 목록(예시) | 273 |
| [참고5]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및 주요 임무 | 276 |
| [참고6] 연천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도 및 주요 임무 | 280 |
| [참고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84 |

□ 중대시민재해 관련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시민재해 개요

○ 정의 및 적용대상, 처벌규정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구분 | | 중대시민재해 |
|------|------|---|
| 정의 |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 | 부상자 | 동일 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의 치료 要) |
| | 질병자 | 동일 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의 치료 要) |
| 적용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 피해자 |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
| 처벌규정 | 처벌요건 | 재해발생 + 의무사항 위반 + 의무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 | | | | |
|------------------------|-----------|--|-------------|------------|
| | 처벌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 | |
| | 처벌내용 | < 사망자 발생 시 > | | |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 <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 | | |
| | | 경영책임자 처벌 | 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총괄부서 | 안전총괄과 | | | |
| 관리부서 | 각 시설 소관부서 | | | |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의미 참고**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함
 -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 ①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 ②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여 조율하고,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 의무주체(처벌대상)

| 구 분 | | 의무주체(처벌대상) |
|-----|---------|--|
| 민간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공공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 | |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

○ 법적 의무사항

| 법(제9조) | 령 | 의무사항(시행령 제8조~제11조) | |
|--------|---------------------------------|--------------------|--|
| 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 안전계획 수립 , 필요한 인력 /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예방업무 수행 |
| | | 2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 | | 3 | 반기 1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 | | 4 |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 | | 5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
| | | 6 |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이상 점검 |
| 2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
|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 4 |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 1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
| | | 2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

□ 연천군 적용대상시설 현황(2024. 3. 기준)

○ 총괄 현황

| 계 | 원료·제조물 취급 |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
|-----|-----------|--------|--------|
| 122 | 10 | 112 | 해당없음 |

○ 원료 및 제조물: 10개소(5개 부서)

| 계 | 화학물질관리법 | 비료관리법 | 식품위생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 10 | 2 | 2 | 5 | 1 |

○ 공중이용시설: 112개소(9개 부서)

| 관련법 | 구분 | 세부구분 | 적용대상 | 개소수 |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특별법 | 교량 | 도로교량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교량 | 16개소 |
| | | |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교량 | 60개소 |
| | 옹벽 | 옹벽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옹벽 | 2개소 |
| | 육교 | 육교 | 「시설물안전법」 상 보도육교 | 1개소 |
| | 하천 | 제방 | 「시설물안전법」 상 2종 제방 | 24개소 |
| 실내 공기질 관리법 | 건축물 | 1·2종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1개소 |
| | | | 연면적 5천㎡ 이상 의료시설 | 1개소 |
| | | |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 1개소 |
| 의료기관 | |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 | 2개소 |
| |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 | 2개소 |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 | | 3개소 (1개소 중복) |

○ 세부 현황

- 원료 및 제조물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관련법 | 원료·제조물 |
|----|-------|----------------------------------|---------|--------|
| 1 | 농업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나동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 | 화학물질관리법 | 제한물질 |
| 2 | 농업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다동 (친환경농업관리실) | 화학물질관리법 | 제한물질 |
| 3 | 농업개발과 |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 식품위생법 | 식품 |
| 4 |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센터 마동 (유용미생물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 비료관리법 | 부산물비료 |
| 5 |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센터 바동 (고체미생물발효실) | 비료관리법 | 부산물비료 |
| 6 | 의료지원과 | 연천군보건의료원 (구내식당) | 식품위생법 | 식품 |
| 7 | 의료지원과 |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 식품위생법 | 식품 |
| 8 | 의료지원과 | 연천군보건의료원(약국) | 마약류관리법 | 마약 |
| 9 | 사회복지과 | 연천군노인복지관 | 식품위생법 | 식품 |
| 10 | 행정담당관 | 연천군청 구내식당 (본관 지하1층) | 식품위생법 | 식품 |

- 공중이용시설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관련법 | 세부구분 |
|----|-------|------------|----------|------------------|
| 1 | 문화체육과 | 고대산 야구장 옹벽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옹벽 |
| 2 | 문화체육과 | 연천수레울아트홀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문화 및 집회시설 |
| 3 | 복지정책과 | 연천군 종합복지관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노유자시설 |
| | | | 실내공기질관리법 | 복합건축물 |
| 4 | 사회복지과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 실내공기질관리법 | 어린이집 |
| 5 | 사회복지과 | 연천어린이집 | 실내공기질관리법 | 어린이집 |
| 6 | 회계과 | 연천군청(본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 업무시설 |
| 7 | 회계과 | 연천군청(신관) | 실내공기질관리법 | 업무시설 |
| 8 | 건설과 | 남계대교 | 시설물안전법 | 제1종 교량 |
| 9 | 건설과 | (구)초성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0 | 건설과 | (구)한탄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1 | 건설과 | 고탄교(구)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관련법 | 세부구분 |
|----|------|--------------------|--------|--------|
| 12 | 건설과 | 고탄교(신)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3 | 건설과 | 공신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4 | 건설과 | 대광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5 | 건설과 | 동막1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6 | 건설과 | 백의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7 | 건설과 | 보막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8 | 건설과 | 사랑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19 | 건설과 | 신천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20 | 건설과 | 옥산2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21 | 건설과 | 옥산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22 | 건설과 | 와초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23 | 건설과 | 왕림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교량 |
| 24 | 건설과 | 조형석옹벽(전곡읍 남계로 408)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옹벽 |
| 25 | 건설과 | 구미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26 | 건설과 | 구미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27 | 건설과 | 군남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28 | 건설과 | 노곡석장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29 | 건설과 | 대전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0 | 건설과 | 동이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1 | 건설과 | 동이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2 | 건설과 | 무등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3 | 건설과 | 북삼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4 | 건설과 | 북삼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5 | 건설과 | 선곡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6 | 건설과 | 아미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7 | 건설과 | 우정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8 | 건설과 | 우정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39 | 건설과 | 원당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관련법 | 세부구분 |
|----|------|---------|--------|--------|
| 40 | 건설과 | 원당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1 | 건설과 | 원당3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2 | 건설과 | 초성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3 | 건설과 | 초성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4 | 건설과 | 초성3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5 | 건설과 | 초성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6 | 건설과 | 학곡1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7 | 건설과 | 학곡2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8 | 건설과 | 학곡제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제방 |
| 49 | 건설과 | 강내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0 | 건설과 | 강내3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1 | 건설과 | 강내4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2 | 건설과 | 강내5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3 | 건설과 | 강내6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4 | 건설과 | 공삼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5 | 건설과 | 내산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6 | 건설과 | 내산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7 | 건설과 | 내산5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8 | 건설과 | 내산새마을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59 | 건설과 | 노동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0 | 건설과 | 노동3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1 | 건설과 | 노동5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2 | 건설과 | 노동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3 | 건설과 | 논골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4 | 건설과 | 대광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5 | 건설과 | 대만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6 | 건설과 | 동막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7 | 건설과 | 동막3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관련법 | 세부구분 |
|----|------|-------|--------|--------|
| 68 | 건설과 | 두일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69 | 건설과 | 마전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0 | 건설과 | 백석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1 | 건설과 | 백세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2 | 건설과 | 백학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3 | 건설과 | 부흥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4 | 건설과 | 부흥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5 | 건설과 | 삼거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6 | 건설과 | 삼거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7 | 건설과 | 석장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8 | 건설과 | 석장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79 | 건설과 | 석장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0 | 건설과 | 설운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1 | 건설과 | 성창마을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2 | 건설과 | 수동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3 | 건설과 | 수동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4 | 건설과 | 신기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5 | 건설과 | 아미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6 | 건설과 | 양원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7 | 건설과 | 양원3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8 | 건설과 | 양원4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89 | 건설과 | 양원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0 | 건설과 | 연못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1 | 건설과 | 옥계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2 | 건설과 | 옥계3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3 | 건설과 | 옥계4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4 | 건설과 | 옥계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5 | 건설과 | 옥골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관련법 | 세부구분 |
|-----|-------|---------------------|----------|----------|
| 96 | 건설과 | 와천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7 | 건설과 | 유촌1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8 | 건설과 | 유촌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99 | 건설과 | 유촌3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0 | 건설과 | 유촌4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1 | 건설과 | 은대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2 | 건설과 | 절골천2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3 | 건설과 | 진천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4 | 건설과 | 집중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5 | 건설과 | 찬우물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6 | 건설과 | 학곡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7 | 건설과 | 골미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08 | 건설과 | 차탄잠수교 | 시설물안전법 | 육교 |
| 109 | 건설과 | 마거교 | 시설물안전법 | 제3종 교량 |
| 110 | 보건의료원 | 연천군보건의료원 | 시설물안전법 | 제2종 의료시설 |
| | | | 실내공기질관리법 | 의료기관 |
| 111 | 농업개발과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가동 | 실내공기질관리법 | 복합건축물 |
| 112 | 전곡읍 | 연천군문화체육센터(전곡행정복지센터) | 실내공기질관리법 | 복합건축물 |

※ 시설물별 주소는 [참고1]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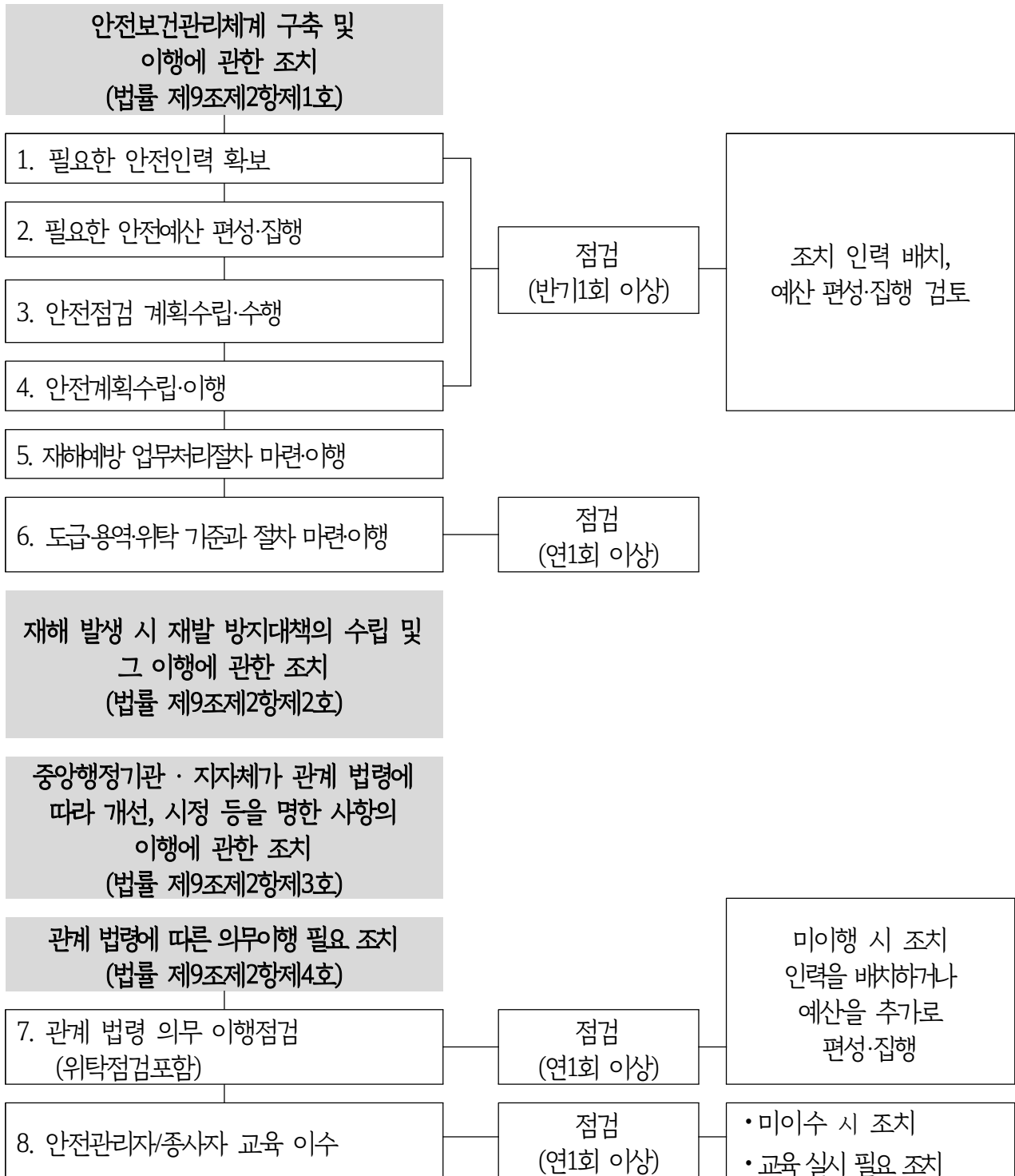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2024 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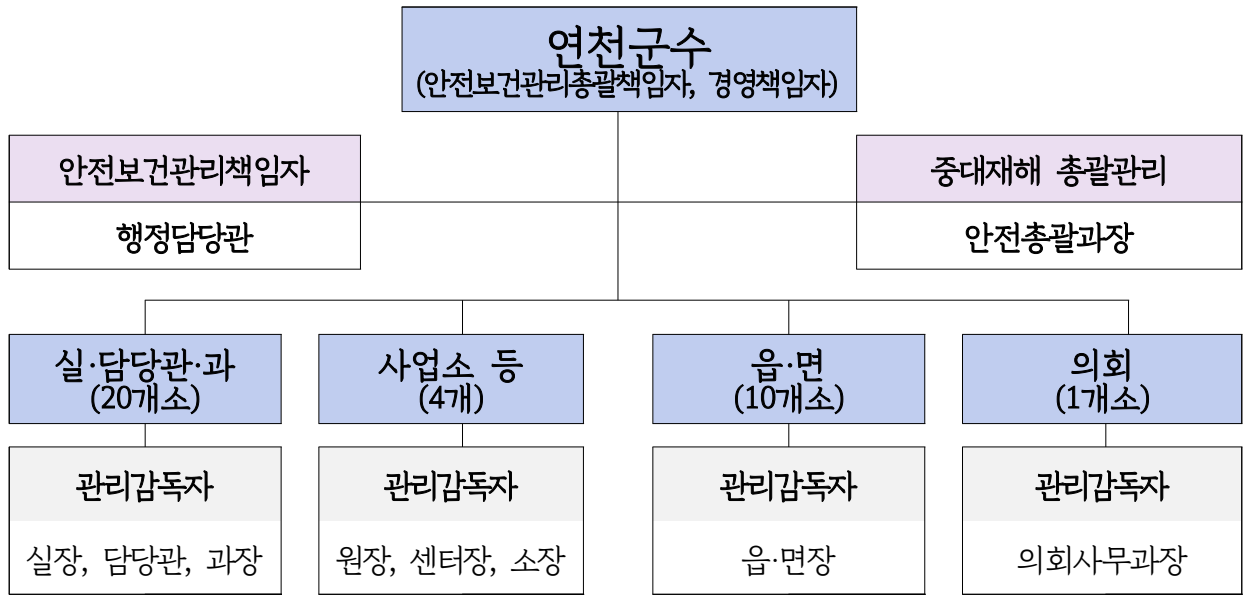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관리시설 수 | | |
|-------|--------|-----|--------|------------|------------|
| | | | 계 | 원료· 제조물 | 공중이용 시설 |
| 행정담당관 | 행정담당관 | ○○○ | 1 | 1 | - |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 ○○○ | 2 | - | 2 |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장 | ○○○ | 1 | - | 1 |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 ○○○ | 3 | 1 | 2 |
| 회계과 | 회계과장 | ○○○ | 2 | - | 2 |
| 건설과 | 건설과장 | ○○○ | 102 | - | 102 |
| 의료지원과 | 의료지원과장 | ○○○ | 4 | 3 | 1 |
| 농업개발과 | 농업개발과장 | ○○○ | 4 | 3 | 1 |
|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장 | ○○○ | 2 | 2 | - |
| 전곡읍 | 전곡읍장 | ○○○ | 1 | - | 1 |

※ 인사발령 시 직위에 따라 당연 지정

□ 추진 방향 및 과제



□ 연천군 안전·보건 관리 대응체계



□ 연천군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및 반별 역할

| | | |
|---|---|---|
| 중대시민재해 총괄반 | 중대시민재해 대응반 | 중대시민재해 지원반 |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팀 | 각 사업부서 | 지원부서, 유관기관 |
| 주요역할 | 주요역할 | 주요역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중대시민재해 동향 파악 및 대응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 점검 ·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확인 | <p>(중대시민재해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시설물 관리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계획) 구축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 유해위험요인 등 중대재해 예방 관리 · 사업장별 안전보건 교육 이수 <p>(중대시민재해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긴급 대응 및 상황 보고 · 재발 방지 계획수립 및 이행 조치 ·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및 문제점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담당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수습, 사후조치 등 필요 예산 편성 협조 · (행정담당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력 지원 · (미디어콘텐츠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홍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언론 대응 · (유관기관) 안전점검 협조 · (소방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 · (경찰서) 교통 및 출입통제 등 |

□ 세부추진계획

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집행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집행하여야 함
(시행령 제10조 제1호,제2호)

-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라.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에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필요인력·예산 세부사항

-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확보 노력
- 비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업무는 비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추진사항 | 필요인력 | 필요예산 |
|-------------------------|--|--|
| 안전계획 이행 | · 안전계획 수립 및 집행(연 1회) 인력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 인력 · 안전계획의 자체 이행점검(반기 1회 이상) 수행 인력 ·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인력 |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비용 ·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비용 |
| 위기관리 업무처리 절차 이행 |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인력 ·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 조치 인력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인력 · 대피훈련 시행 인력(1종 시설물) | · 유해위험요인 점검 비용 · 유해위험요인 발견 때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비용 · 대피훈련 시행 비용(1종 시설물) |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인력 |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비용 |
|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 | · 개선·시정 사항 이행 인력 | · 개선·시정 사항 이행 비용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인력 · 의무이행 자체점검(연 1회) 인력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자체점검 인력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의무이행 점검 위탁 비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용 |

②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시행령 제10조 제3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 계획·수립

○ 관계법령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 구분 | 점검근거 | | 내용 | 등급 | 점검주기 |
|------------------------------------|---------------------|----------------------|----------------|---------------------|------------|
| | 관련법 | 조항 | | | |
|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 공중이용시설 | 식품위생법 | 제40조 | 건강진단 | | 연 1회 |
| | | 제41조 | 식품위생교육 | | 연 1회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 | 안전보건교육 | | 분기 1회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12조 | 설치 검사 | | 최초 1회 |
| | | | 정기시설검사 | | 2년 1회 |
| | | 제15조 | 안전 점검 | | 월 1회 |
| | 건축물관리법 | 제20조 | 안전 교육 | | 2년 1회 |
| | | 제13조 | 건축물 정기점검 | | 3년 1회 |
| | 전기안전관리법 | 제16조 | 건축물 안전진단 | | 노후도에 따라 상이 |
| | | 제11조 | 정기 검사 | | 설비에 따라 상이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 |
| | | 제25조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 | 3년 1회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 |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 | 3년 1회 |
| | | 제31조 | 승강기 자체점검 | | 월 1회 |
| | | 제32조 | 승강기 안전검사 | | 종류에 따라 상이 |
| | 도시가스사업법 | 제22조 | 소방시설 작동점검 | | 연 1회 |
| | | | 소방시설 종합점검 | | 연 1회 |
| | | | 소방시설 외관점검 | | 월 1회 |
| | 수도법 | 제17조 | 가스시설 정기검사 | | 연 1회 |
| | | | 가스정압실 정압기 분해점검 | | 4년 1회 |
| 저수조 청소 | | | | 반기 1회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저수조 위생상태점검 | | 월 1회 | |
| | | 급수관의 상태검사 | | 5년 경과 시 1회 2년 1회 | |
| | | 교육 | | 3년/5년 1회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ABC | 반기 1회 | |
| | | | DE | 1년 3회 | |
| |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A | 4년 1회 | |
| | | | BC | 3년 1회 | |
| | | | DE | 2년 1회 | |
| | | | A | 3년 1회 | |
| |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그 외 시설물) | BC | 2년 1회 | |
| | | | DE | 1년 1회 | |
| | | | A | 6년 1회 | |
| | | | BC | 5년 1회 | |
| 제11조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DE | 4년 1회 | | |

※ 위의 법률 외에도 시설물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점검계획에 반드시 반영

○ (참고)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 시설종류 |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 비 고 |
|------------------|---|-----------|
| 건축물 (공통)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 행정안전부령 |
|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청고시 |
| |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 행정안전부고시 |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 산업통상자원부령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산업통상자원부령 |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 환경부령 |
| 건축물 (유기시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 건축물 (체육시설) |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 대통령령 |
|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 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행정안전부고시 |
| 건축물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대통령령 |
| 건축물 (장례식장) | 장사법 시행규칙[별표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 보건복지부령 |
| 하천시설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 상수도관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

③ 안전계획 수립·시행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시행(시행령 제10조 제4호)

- 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계획 개요

- 수립주체: (시설별) 관리부서
- 수립시기: 매년 3월 중 수립·제출 (시설물 관리부서 → 안전총괄과)
- 수립대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연천군 직접관리시설) 122개소
- 수립내용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의 건축물 현황
 - 시설물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예산·인력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전담조직 체계도
 - 안전점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분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대피훈련 계획
 -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은 대피훈련 반드시 포함)
 -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계획(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 등)

○ 안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부서 실정에 맞춰 실행 가능한 안전계획 수립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계획에 맞는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이월·불용 지양
- 비상연락망 현행화
- 안전계획 및 중대시민재해 관련 문서 보존기간(5년) 준수

④ 안전계획 이행점검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 이행점검(시행령 제10조 제5호)

-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집행, 안전점검, 안전계획 수립·이행 등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점검개요

- 점검주체: 안전총괄과 중대재해팀
- 점검대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연천군 관리시설) 122개소
- 점검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 이행점검 결과(증빙자료 포함) 안전총괄과에 제출
 -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이행 여부 자체점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 점검시기
 - 매년 1. 1. ~ 6. 30. 실적: 매년 7월까지 점검자료 제출
 - 매년 7. 1. ~ 12. 31. 실적: 익년 1월까지 점검자료 제출
- 주요내용: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안전계획 수립·이행 절차

| 이행내용 | 수행기관 | 추진일정 |
|------------------------------------|--------------------|----------------------|
|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전년도 7.1.~12.31.실적) | 시설물 등 관리부서 → 안전총괄과 | 매년 1월까지 |
| 안전계획 수립·제출 | 시설물 등 관리부서 → 안전총괄과 | 매년 3월 15일까지 |
| 안전계획 수립 현황 및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 안전총괄과 → 연천군수 | 매년 3월31일까지 (개선요구) |
| 보고 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확정 | 시설물 등 관리부서 | 매년 4월까지 |
| 반기 추진실적 점검·제출 (1.1.~6.30.실적) | 시설물 등 관리부서 → 안전총괄과 | 매년 7월까지 |
| 반기 추진실적 보고 | 안전총괄과 → 연천군수 | 매년 8월까지 (개선요구) |
| 보고 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실행 | 시설물 등 관리부서 | 연말까지 |

⑤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시행령 제10조 제8호)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관리부서(위탁자 등)의 의무

-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 ◇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현황(대응체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 유해·위험요인 발견 방법 및 발견 시 처리 절차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해당 기관의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 이력 및 행정처분사항 등 |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 등)은 부서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계획·협약 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안전계획 이행 |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 및 수당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 등 |
| 시민재해 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 | · 유해·위험요인 점검 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 때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비용 · 대피훈련 시행 비용(제1종 시설물)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용 |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연 1회 이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력 유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여부 - 재해대응체계 유지 여부, 유해·위험요인 발견·처리 실적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교육 이행 여부 등 ◇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타 비용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지 여부 |
|---|

○ 수급인·수탁자 등의 의무

※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 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에 필요한 인력 확보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반기 1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 조치
- 시민재해 관리 의무사항 이행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위기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시설물안전법」제1종 시설물)

⑥ 비상상황 대비 대피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실시

「시설물안전법」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은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시행령 제10조 제7호)

-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이행주체: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관리주체

○ 대피훈련 내용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 목표, 참여 범위
- 리스크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 파악
 - 과거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예상 사고 유형 예측
- 대피훈련 시나리오(상황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작성
 - (상황 시나리오) 재해유형 선정, 가상 재해발생 상황 시나리오 작성
 - (대응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별도 마련
- 대피훈련 평가방법 결정 ※ **평가필요시**

○ 대피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마련 및 결과 공유

- 대피 목표시간 설정, 목표시간 달성 여부(정량적 평가)
-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적절성 평가
- 시나리오 적절성 평가
 - 대피경로 적절성
 - 총괄지휘자, 피난유도자 지정 여부
 - 임시 피난장소 지정 여부
- 대피 원활 여부(병목현상 발생 여부)

□ 관련 근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 제7호)

- 가.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확인·점검(인력, 예산, 시설·장비, 안전점검 등)
- 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조치, 이용제한, 보수·보강, 개선
-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및 개선조치
- 라. 비상·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시설물안전법」제1종시설물)

□ 추진목표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총괄부서)/안전계획(시설물관리부서) 수립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소관 임무·역할, 행동 조치사항 규정
-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단계별 이행 및 준비 절차 마련
- 소관부서별 상황에 맞게 능동적 대응 매뉴얼 정비·시행

재난발생

| 구분 | 예 방 | 대 비 | 대응 및 복구 | |
|-------|--|---|---|---|
| 이행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개선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구조구급) • 상황보고 및 유관 기관 전파 • 긴급 안전점검 추가 피해방지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원인 조사·시설물 복구 |
| 준비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매뉴얼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안전계획의 이행(인력, 장비, 예산확보 등) 여부 확인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활용
 - (※ 붙임5의 체크리스트 참조하여 각 시설유형별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이용자 위험성 측면에서「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대장」마련

○ 유해·위험요인 개선

- 경미한 경우: 시설물 즉시 보수 및 조치결과 기록 보존
- 중대재해 발생 우려: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조치
 - (관리부서) 연천군수 보고 → (연천군수) 조치사항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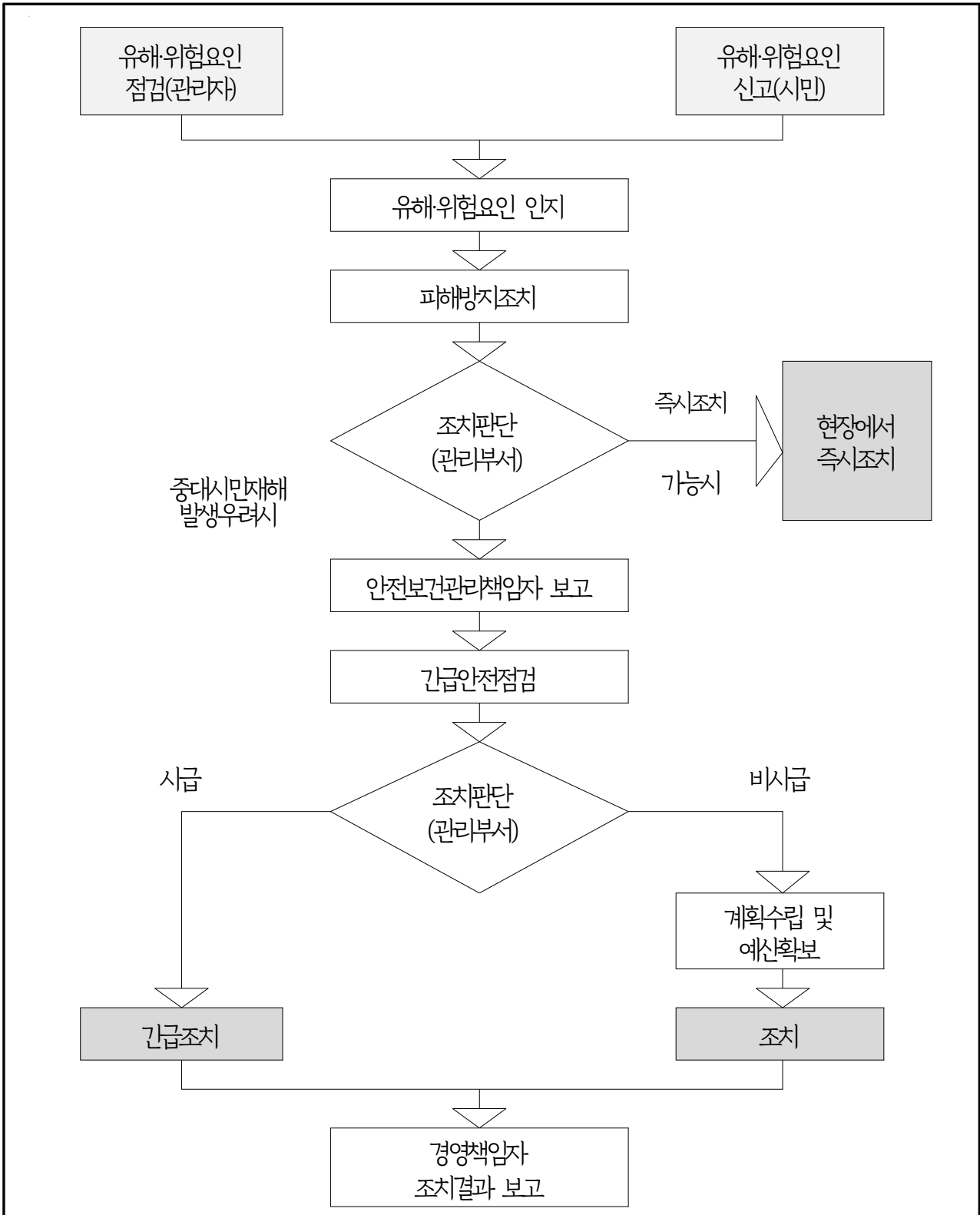
○ 주체별 주요임무

| 주 체 | 주 요 임 무 |
|-------------|--|
| 시설물 관리부서 | 【시설물 확인·점검】 ○ 확인주기: 분기 1회 이상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확인 ▶ 시민 및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시설물 신고접수 (시민신고 접수 시 시설물 관리부서 통보) ○ 점검, 신고접수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상 관리 |
| | 【개선 조치】 ○ 유해·위험요인 시설 점검 및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시설물 즉시 보수 및 조치결과 기록 보존 ▶ 중대재해 발생 우려: 이용제한, 보수·보강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천군수에게 보고 철저 (★반드시 확인 및 조치결과 각각 보고) ○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이용제한 등 실시 ○ 유해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
| 연천군수 |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 유해·위험요인 신고

- 시민 및 근로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시설물 신고접수
 - 시민에 의한 신고(119, 안전신문고)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통보

□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 대응절차



※ 유해·위험요인 점검, 확인 및 발견시 조치계획이 기록되어야 함

-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대장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안)

□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 세부처리절차

○ 관리자 점검·발견 시 처리 절차

①【점검-관리자】

- 정기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상반기/하반기, 해빙기/우기/동절기
- 수시점검: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 관찰(분기별 1회 이상)

②【유해·위험요인 인지】

- 현상, 사고 가능성 등
- 발생일시, 장소, 현상 및 원인, 피해발생 가능성 등 파악

③【피해방지조치】

- 시설물 소관부서장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유선 전파
- 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후 안내
(※ 이용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 (필요시) 연천소방서, 연천경찰서, 한국전력, KT, 도시가스, 유지보수 업체 등 상황전파 및 현장 방문 요청
- 긴급대비가 필요한 경우 비상통로 확보 및 대피유도요원 배치

④【조치판단】

·경미한 사항

- 유관기관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조치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 → 상황종료

·중대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중대 유해·위험요인 사항 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보수·보강 지시

⑤ 【긴급안전점검】

- 중대사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 실시

⑥ 【조치판단-긴급조치】

·긴급안전점검 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긴급보수요원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긴급조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 이용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긴급안전점검 결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경우

- 자체계획 수립, 예산확보
- 유해·위험시설·설비의 보수·보강 및 교체 시행

⑦ 【조치결과보고(문서화)】

-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결과 보고(문서)
- 조치결과 확인 및 관련 문서 보존(5년 이상)

○ 시민 신고 시 처리 절차

①【신고접수】

- 접수자,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 등 확인
- 소관부서 및 대상 시설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 내용 전파

②【유해·위험요인 인지】

- 현상, 사고 가능성 등
- 발생일시, 장소, 현상 및 원인, 피해발생 가능성 등 파악

③【피해방지조치】

- 시설물 소관부서장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유선 전파
- 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후 안내
(※ 이용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 (필요시) 연천소방서, 연천경찰서, 한국전력, KT, 도시가스, 유지보수 업체 등 상황전파 및 현장 방문 요청
- 긴급대비가 필요한 경우 비상통로 확보 및 대피유도요원 배치

④【조치판단】

·경미한 사항

- 관계기관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조치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 → 상황종료

·중대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중대 유해·위험요인 사항 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보수·보강 지시

⑤ 【긴급안전점검】

- 중대사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 실시

⑥ 【조치판단-긴급조치】

·긴급안전점검 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긴급보수요원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긴급조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 이용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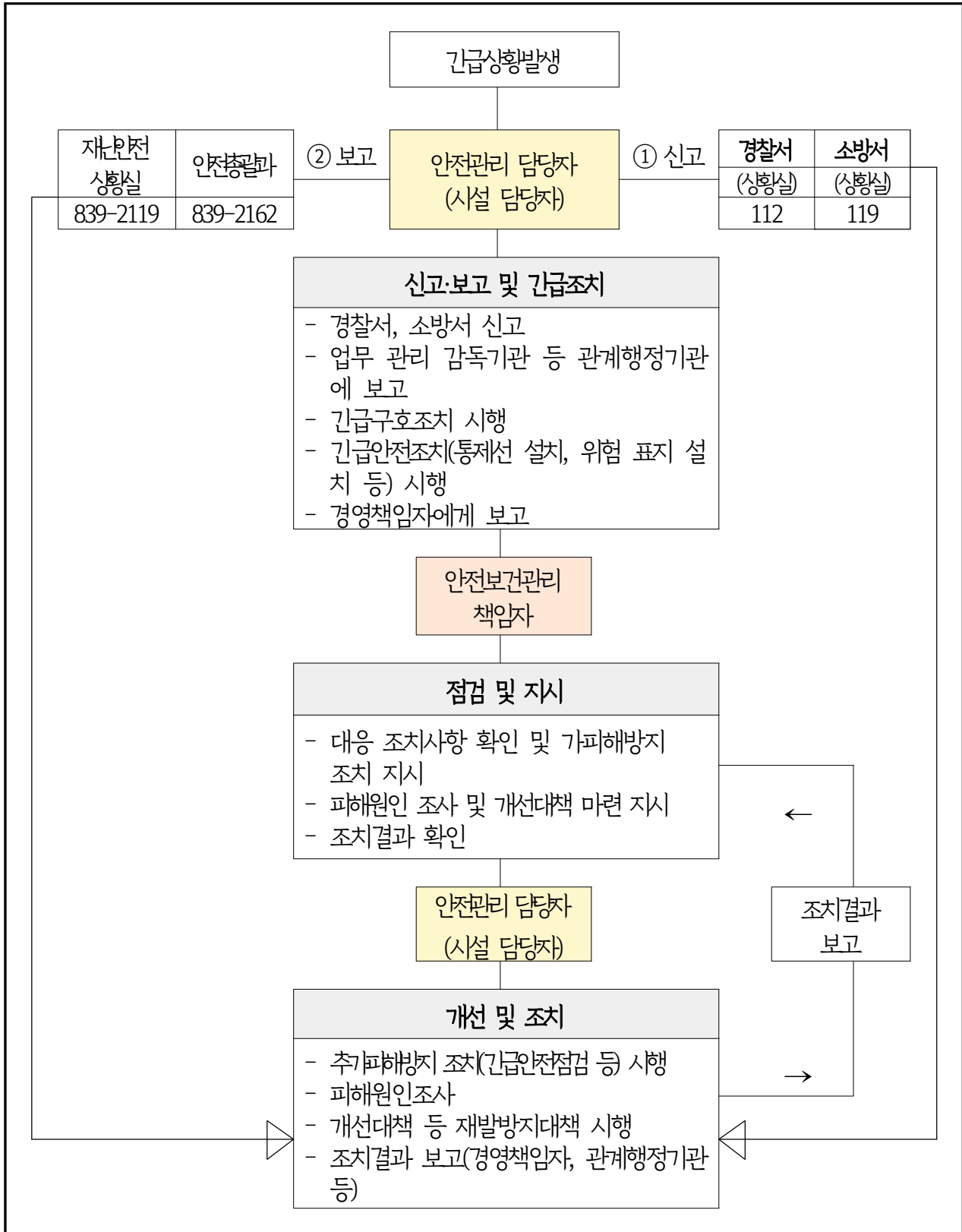
·긴급안전점검 결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경우

- 자체계획수립, 예산확보
- 유해·위험시설·설비의 보수·보강 및 교체 시행

⑦ 【조치결과보고(문서화)】

-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결과 보고(문서)
- 조치결과 확인 및 관련 문서 보존(5년 이상)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업무처리절차도



※ 본 업무절차처리도 외의 대응·복구 처리절차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준용

※ 세부처리절차는 시설물별 안전계획 내용 참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시설물 관리부서 대응 업무처리절차도

| 상황단계 | | 조치내용 |
|------------------|----------------------------|---|
| 1단계: 징후 감지 | ① 신고 및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시설 등 이용자 등으로부터 위험 상황 또는 재해발생 접수 * 접수 시 112, 119 신고 여부 확인 또는 개별 신고 * 연천소방서(119)는 시민, 직원, 노동자 등으로부터 최초 사고 접수 시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및 안전총괄과(031-839-2162)에 즉시 통보(일시, 장소, 사고상황,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 - 사고 발생 인지 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발생 전파 - 보고체계에 따라 기관장 등 사고 발생 보고 * 각 시설물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비상연락망 활용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보존” 안내 |
| 2단계: 초기 대응 | ② 긴급구호 및 출입 등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피해자 응급처치 및 119 구급대 연락 병행· 긴급 후송 * 필요시 소방서로 협조 요청, 소방서 출동 후에는 소방서의 지시를 따라 이행 - 시설 등 이용제한(업무중지) 조치 후 시민 등 대피 안내 - 시설물 관리부서에 안내방송(비상방송) 요청 - 부착된 비상대피 안내도 및 대피로 동선을 따라 이동 -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교통통제 * 필요시 경찰서(112)에 협조 요청 * 붕괴징후 건물 주변 도로통제 및 차량통제 제한 * 건물 주변 및 도로·터널 우회도로 확보 |
| | ③ 현장확인 및 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사고현장 보존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CTV 확보 ② 사고 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 명시, 접근금지 조치 ③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이용제한(금지) 및 이용자 등 대피 · 기관 실정에 맞게 대피 장소 지정·운영, 직원교육 등 주지 - 2차 재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고 확대 방지 조치 -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보존 |
| 3단계: 비상 대응 | ④ 상황보고· 전파 및 언론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관계기관 상황전파·공유 · 보고: 군수실, 부군수실, 주관부서 소속 국장 * 중대시민재해 총괄부서(안전총괄과) 경유 · 내용: 발생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 · 방법: 최초 보고, 수시 보고, 최종보고 - SNS 대응방 운영 및 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 실시간 공유 - 재난발생 상황, 실시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이용 등 긴급상황 보도 -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여부 판단 후 발송 |

| <p>3단계: 비상 대응</p> | <p>⑤ 상황판단 회의 개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참석대상: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책임자 · 회의주재: 연천군수(상황에 따라 부군수 등 주재) * 상황판단회의 시 서식8 참조하여 회의록 작성 - 부서장은 위험상황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방법, 업무·작업 개시 여부, 위험수준 경감 조치 지시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또는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가동 판단 | | | | | | | | | |
|---------------------------------|--|---|---------|-------|---------|----------|------------------|---|----------|---|--|
| <p>4단계: 수습 · 복구</p> | <p>⑥ 피해자 및 가족 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사상자 가족에서 연락 및 병원 입원·장례 절차 지원 등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 제공 · 심리치료, 현장 방문 차량 제공, 임시숙소, 음식 등 | | | | | | | | | |
| | <p>⑦ 피해복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원인 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고지점 일대 현장보존 -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 시행 -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등 지원 * 자체인력예산 등 부족 시, 관계기관으로 지원요청 * 구호 및 복구 등의 동원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 | | | | | | | | |
| | <p>⑧ 재발방지 대책 마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시행 - 복구 장비, 인원, 자재소요 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시행 * 자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상위기관, 관계기관에 지원 협조 요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5%;">사전 준비</th> <th style="width: 45%;">수습 및 복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기 복구</td> <td>- 재해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td> <td>- 시설 정비 및 피해 부분 보수 - 내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임시건물 마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기 복구</td> <td>- 재정지원 및 법률상담 -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 - 전기·기계 등 설비 안전점검 - 위험성 평가 실시</td> <td>-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 기반시설 복원 등 복구 작업 - 정기적인 위험요인 제거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피해 방지 조치 및 정리 · (재발 방지대책) 재해 발생원인 제거, 예방대책 수립·실시 · (개선조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선 | 구분 | 사전 준비 | 수습 및 복구 | 단기 복구 | - 재해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 시설 정비 및 피해 부분 보수 - 내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임시건물 마련 | 장기 복구 | - 재정지원 및 법률상담 -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 - 전기·기계 등 설비 안전점검 - 위험성 평가 실시 |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 기반시설 복원 등 복구 작업 - 정기적인 위험요인 제거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 | 구분 | 사전 준비 | 수습 및 복구 | | | | | | | | |
| 단기 복구 | - 재해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 시설 정비 및 피해 부분 보수 - 내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임시건물 마련 | | | | | | | | | |
| 장기 복구 | - 재정지원 및 법률상담 -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 - 전기·기계 등 설비 안전점검 - 위험성 평가 실시 |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 기반시설 복원 등 복구 작업 - 정기적인 위험요인 제거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 | | | | | | | |
| <p>⑨ 상황종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등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공식적 마무리 과정 - 재발방지책 마련(내부결재) 시 종결 선언 · 재발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고의 원인조사·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 | | | | | | | | | |

| | | |
|-----------------------|------------|--|
| 4단계: 수습 · 복구 | ⑩ 언론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기관 공유 [미디어콘텐츠과 언론홍보팀 및 중대시민재해 총괄부서 즉시 통보] - 언론대응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브리핑룸 운영 검토 및 지원 - 중대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 피해자 위로 등(언론홍보팀과 협의) - 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배포 |
|-----------------------|------------|--|

※ 각 상황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변경 가능

※ 각 시설물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참조

○ 책임자별 주요임무

| 주 체 | 주 요 임 무 |
|-------------|---|
| 시설물 관리부서 | <p>【긴급조치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112), 소방서(119) 및 관계기관 통보·협조 요청 ○ 사상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등 긴급구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출동 후에는 구급구조에 대해 소방서의 지시 이행 ○ 시민 대피, 출입·교통통제 등 긴급안전조치(추가피해방지 조치) ○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및 총괄부서(안전총괄과) 등에 보고 ○ 사고 현장 인근에 신속하게 대책본부 설치 ○ 유족 및 부상자 가족별로 회의 공간 제공 ○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
| | <p>【결과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피해방지 조치(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원인 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책임자, 총괄부서 및 관계행정기관 등) |
| 미디어 콘텐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실 또는 브리핑룸 운영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 선정 및 언론 대응 창구 단일화 - 언론에 신속하게 정보 전달 - 브리핑룸 설치 및 브리핑 정례화로 과도한 취재 경쟁 방지 |
| 연천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조치사항 확인, 추가피해 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지시 |

□ 위기상황 판단기준 및 대응 기본절차도

○ 사고상황 및 유형

| 구분 | 위기유형 | 위 기 상 황 |
|----|------|---------------------------------|
| 1 | 화재 |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시설 피해 |
| 2 | 지진 | •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시설 피해 |
| 3 | 테러 | • 테러로 인한 폭발, 인질 발생 |
| 4 | 침수 | • 풍수해 또는 유사 원인으로 인한 침수로 발생하는 피해 |
| 5 | 붕괴 | • 노후 등으로 시설물 붕괴 피해 |
| 6 | 가스누출 | • 시설물 내 유해가스 누출 및 유입으로 인한 피해 |
| 7 | 폭설 | • 폭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 피해 |

※ 당해시설 위기 유형 선정은 시설관계자, 인근시설 관계자, 유관기관(소방, 경찰 등) 등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위기상황 판단 기준표

| 위기단계 | 위기상황(판단기준) | 위 기 상 황 | |
|----------------|--------------|--|--------------------------|
| 평상시 (예방/대비) | 평상시 업무수행 | •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자재 및 장비 비축, 상황감시, 안내방송 멘트 점검 등 예방 대비 활동 ※ 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 |
| 대응 단계 | 초동 | 자체 수습 가능 | • 대피유도 및 상황전파, 자체 초동대응 등 |
| | 총력 | 자체 수습 불가 | • 자체대응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 등 |
| 복구단계 | 위기상황 종료 후 복구 | •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 원인파악 및 피해상황 집계 • 인명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전기, 통신, 가스 등 | |

○ 위기상황 대응 기본절차도

| 위기단계 | | 대응절차 |
|-------|---------------|---|
| 평상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담당부서 시설관계자 등 예방·대비 활동 |
| 대응 단계 | 초동 ※ 3분 이내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기상황 최초 발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전파/시설물 담당부서 신고 - 비상벨 누름/유도/초동대응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설물 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 (외국어 포함) - 관계기관 신고 - 복구반 가동 - 비상연락망 가동 등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p>현장대응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출동/초동대응 보장 </div> |
| | 총력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체진압 가능?</p> <p>↓</p> <p>Y (초동대응 성공)</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N (초동대응 실패)</p> <p>중대시민재해 임시대응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지휘 - 상황판단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피유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별 대피 유도 - 재해약자 우선 대피 등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현장대응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확산지역 및 위험요소 제거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의료지원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지원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원 등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유관기관 도착 후 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p> </div> |
| 복구단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 원인파악 및 피해상황 집계 • 인명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전기, 통신, 가스 등 |

※ 초동조치 3분 이내는 권고사항이며 위기상황 또는 시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시정사항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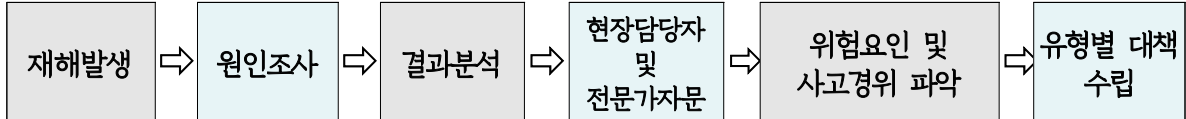
- 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방지대책 수립
- 나. 재해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와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 마련

○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절차



- 「사고발생 및 대응 보고(안)」활용
※ 상황별·시설물별 서식 변경 가능

○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해 재발방지대책 계획서(안)」활용
※ 상황별·시설물별 서식 변경 가능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주요 이행 점검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 이행점검
- 행정처분 완료 등 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 이행점검
- 유해·위험이 초래될 경우 기계·설비 등 사용중지 및 대체·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시설개선 조치 이행점검 등

V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소 속 | 개소 | 안전계획 수립 | 중대시민재해 임시대응조직 구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수립 |
|------------|------------|---------|---------------------|------------------------|
| 합 계 | 122 | | | |
| 행정담당관 | 1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문화체육과 | 2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복지정책과 | 1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사회복지과 | 3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회계과 | 2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건설과 | 102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의료지원과 | 4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농업개발과 | 4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기술보급과 | 2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전곡읍 | 1 | 수립완료 | 구성완료 | 수립완료 |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인력·예산 현황

| 소 속 | 개소 | 인력 현황(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비고 |
|------------|------------|------------|----------------------------|----|
| 합 계 | 122 | 139 | | |
| 행정담당관 | 1 | 14 | 위탁(용역업체) | |
| 문화체육과 | 2 | 13 | 위탁(용역업체) | |
| 복지정책과 | 1 | 4 | 위탁(행정담당관) | |
| 사회복지과 | 3 | 59 | 위탁(용역업체) | |
| 회계과 | 2 | 5 | 위탁(행정담당관) | |
| 건설과 | 102 | 2 | 해당없음 | |
| 의료지원과 | 4 | 22 | 안전관리자: 위탁 보건관리자: 1명(자체) | |
| 농업개발과 | 4 | 8 | 위탁(행정담당관) | |
| 기술보급과 | 2 | 6 | 위탁(행정담당관) | |
| 전곡읍 | 1 | 6 | 3명(자체) | |

□ 도급·용역·위탁관리 현황

| 소 속 | 개소 | 시 설 명 | 운영방식 | 운영주체 |
|-------|----|------------------|------|--------------|
| 합 계 | 8 | | | |
| 행정담당관 | 1 | 연천군청구내식당 | 위탁 | 연천군노인복지관 |
| 문화체육과 | 1 | 연천수레울아트홀 | 위탁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 복지정책과 | 1 | 연천군종합복지관 | 위탁 | 연천군자원봉사센터 |
| 사회복지과 | 3 | 연천어린이집 | 위탁 | 연천어린이집 원장 |
| |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 위탁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원장 |
| | | 연천군노인복지관(식당) | 위탁 | 사단복지법인연꽃마을 |
| 의료지원과 | 2 | 연천군보건의료원 구내식당 | 위탁 | (주)엘에스씨푸드 |
| | |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 위탁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행정담당관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1 |
| 원료·제조물 | 식품 | 연천군청 구내식당 (본관 지하1층) | 1 |

연천군청 구내식당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식품위생법(식품)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16 | 7개 법령 | |
| 연천군청 구내식당 | 227 -객석(147) *104석 -주방(80) | 지하1층 | | 16 | - 식품위생법 - 시설물안전법 - 전기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소방시설법 - 산업안전보건법 - 수도법 | |

※ 영양사(1), 취사보조원(1), 노인일자리업무보조(12명)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청 구내식당(본관 지하 1층):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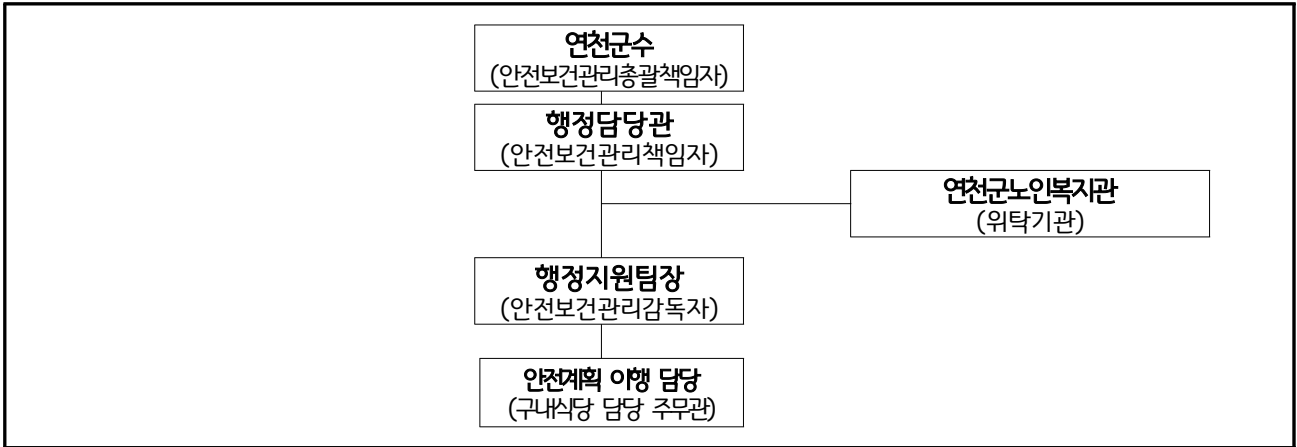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연천군청 구내식당: 연천군청(본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FMS에 등록하였으나, 원료·제조물(식품)을 관리하는 구내식당(본관 지하 1층)에 대하여 별도 안전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2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연천군 노인복지관) |
| 연천군청 구내식당 | 2명 | 심○○ |

※ 개별 원료·제조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안전장치

-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 식품위생법 제40조(종사자의 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 진단
 - 식품위생법 제88조(식중독 점검): 위생관리 철저, 조리식품의 보관, 금지 식재료의 사용여부 등
 - 식품위생법 제96조(급식시설 점검):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 법령 기준 준수 확인
- 안전장비 장치 목록

| 구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상업용 그리들 | 식재료 조리기구(열) | 1 | 출입구 기준 왼쪽 조리실 내 | 이○○ 손○○ |
| 상업용 레인지 | 식재료 조리기구(열) | 1 | 출입구 기준 왼쪽 조리실 내 | 이○○ 손○○ |
| 상업용 조리대 | 식재료 조리기구(열) | 2 | 출입구 기준 왼쪽 조리실 내 | 이○○ 손○○ |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조리원 위생관리 | 매일 | 종사자 개인위생 점검 | 필요없음 | 없음 |
| 식재료 관리 | 매일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및 유통기한 관리 등 | 필요없음 | 없음 |
| 주방 환경 관리 | 매일 | 조리기구 소독 점검표 위생관리 점검표 | 필요없음 | 없음 |
| 기타관리 | 매월 | 음용수 및 조리기구 식중독 균 검사 실시 | 필요없음 | 없음 |
| MSDS 관리 | 매월 | 현장점검, 결과보고, 피드백 절차 등 | 필요없음 | 없음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 안전장비 정기점검 및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화학물질유출사고훈련 등 실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 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인명(응급)구조 전문교육 자격 취득,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교육 및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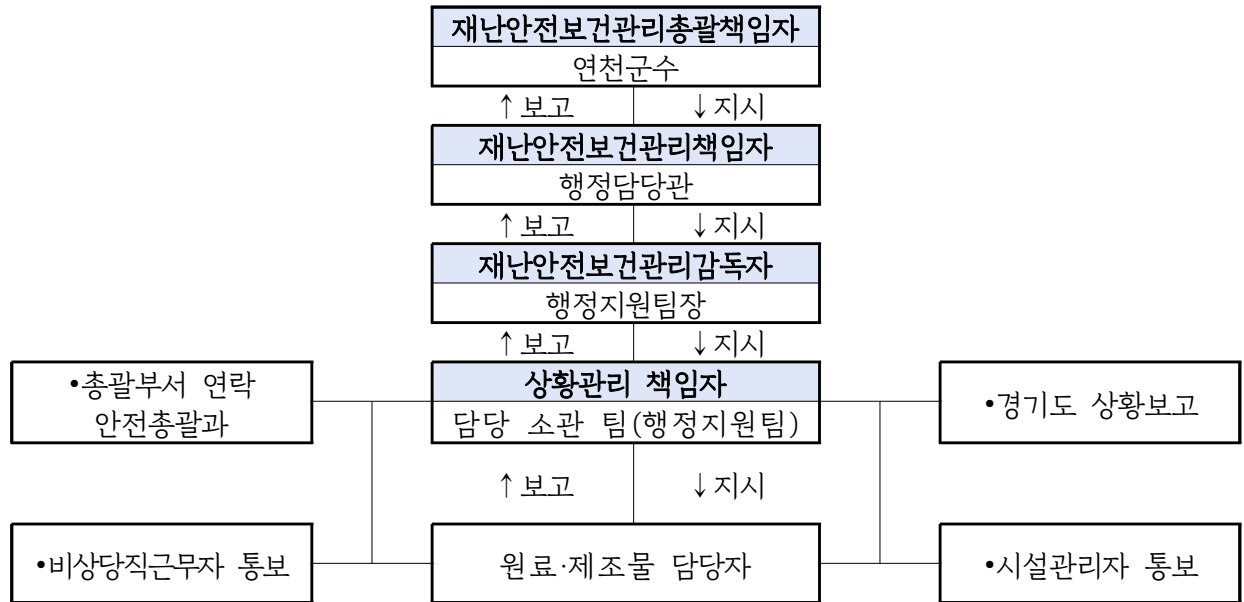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보고: 식중독유증상자 파악 및 의료원 즉시 신고 및 보고
- 조치
 - 유증상자 확인 후 증상에 따라 진료, 응급 후송환자 구분하여 조치 및 관리
 - 역학조사 및 급식 중단 및 재개 여부 결정
 -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보고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담당자 |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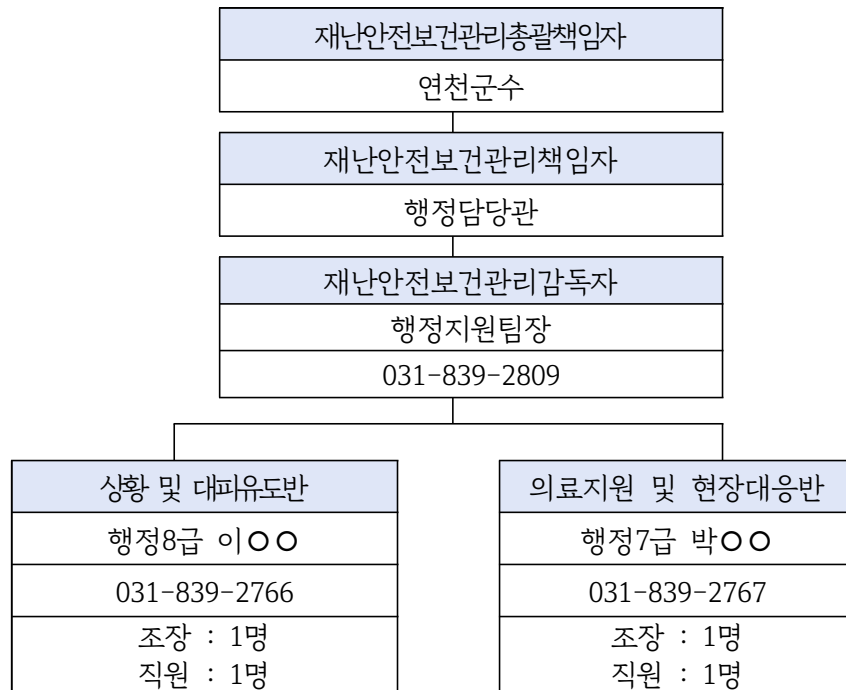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군노인복지관 | 031-834-6080 | 위탁기관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파출소 | 031-834-2112 | 경찰지원 |
| 삼천리 도시가스 | 1544-3002 / 031-318-5982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15일 / 담당자 : 이○○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행정지원팀장) 및 2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상황 및 대피유도반 반장 (행정7급 박소연)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대피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치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의료지원 및 현장대응반 반장 (행정8급 이대연) | 응급처치 구조 및 현장시설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 및 대피유도반(성명:이○○) | | |
|--|--|---------------------------------|
| ☎사회재난팀:031-839-2119 ☎행정지원팀:031-839-2766 ☎연천경찰서:031-839-5329 ☎연천소방서:031-839-0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
| | |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
| | |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
| | |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
| | |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
| | |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
| | |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
|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 | |
|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
| | |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
| | |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본관 1층 구역 비상대피로 확보 |
| | | 2.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
| 3. 조리원 휴게실 및 조리실 내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 |
| ☎ 상황 및 대피유도 반장 : 031-839-2766 | | |

| 의료지원 및 현장대응반(성명:박○○) | | |
|--|--|---------------------------------|
| ☎사회재난팀:031-839-2119 ☎행정지원팀:031-839-2766 ☎연천경찰서:031-839-5329 ☎연천소방서:031-839-0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
| | |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침수 가스누출 |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
| | |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
| | |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
|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 | |
|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 | |
|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
| | |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
| | |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 | |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
|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 ☎ 의료지원 및 현장대응반장 : 031-839-2766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사회재난팀:031-839-2119 | | ☎행정지원팀:031-839-2766 | |
| ☎연천경찰서:031-839-5329 | | ☎연천소방서:031-839-0119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윤○○ | 031-839-2110 |
| | 직원 | 김○○ | 031-839-2809 |
| 상황 및 대피유도반 | 팀장 | 이○○ | 031-839-2766 |
| | 팀원 | 권○○ | 031-839-2766 |
| 의료지원 및 현장 대응반 | 반장 | 박○○ | 031-839-2767 |
| | 반원 | 손○○ | 031-839-2767 |
| ☎ 상황 및 대피유도 반장 : 031-839-2766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는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보존식 확인 및 의료원 역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오염 식재료 폐기, 소독기기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구입
-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주방·위생 점검표 관리 철저 등

문화체육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2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옹벽 | 고대산 야구장 옹벽 | 1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문화 및 집회시설 | 연천수레울아트홀 | 1 |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영구앵커 옹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 (옹벽)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1 | 1개 법령 | |
|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영구앵커 옹벽 | 156m | 12.9m | 구조: 철근콘크리 트 | 1 | - 시설물안전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영구앵커 옹벽: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고대산 야구장 다단지압형 영구앵커 옹벽(2016. 8. 준공)
 - 2024. 2.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작성 및 FMS 등록 완료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6, 12월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고대산 야구장 옹벽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 6월: 장기점검 - 12월: 장기점검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확보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비 100백만원) | 예산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관계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시설관리부서장(1) 및 실무자(3) 재해예방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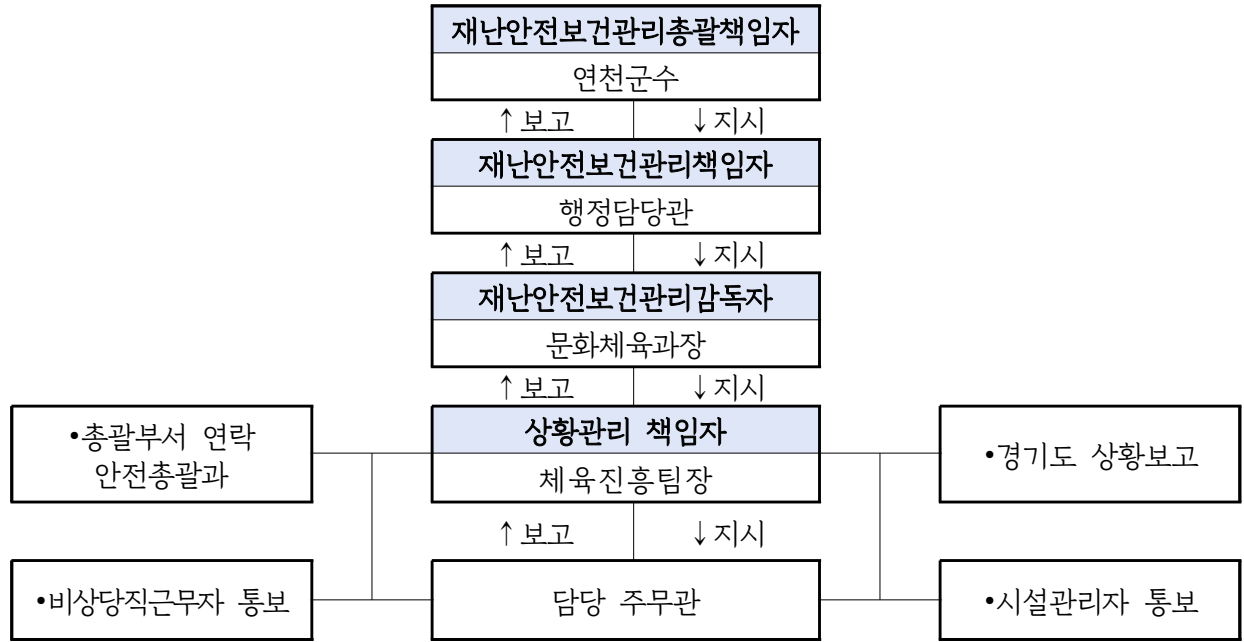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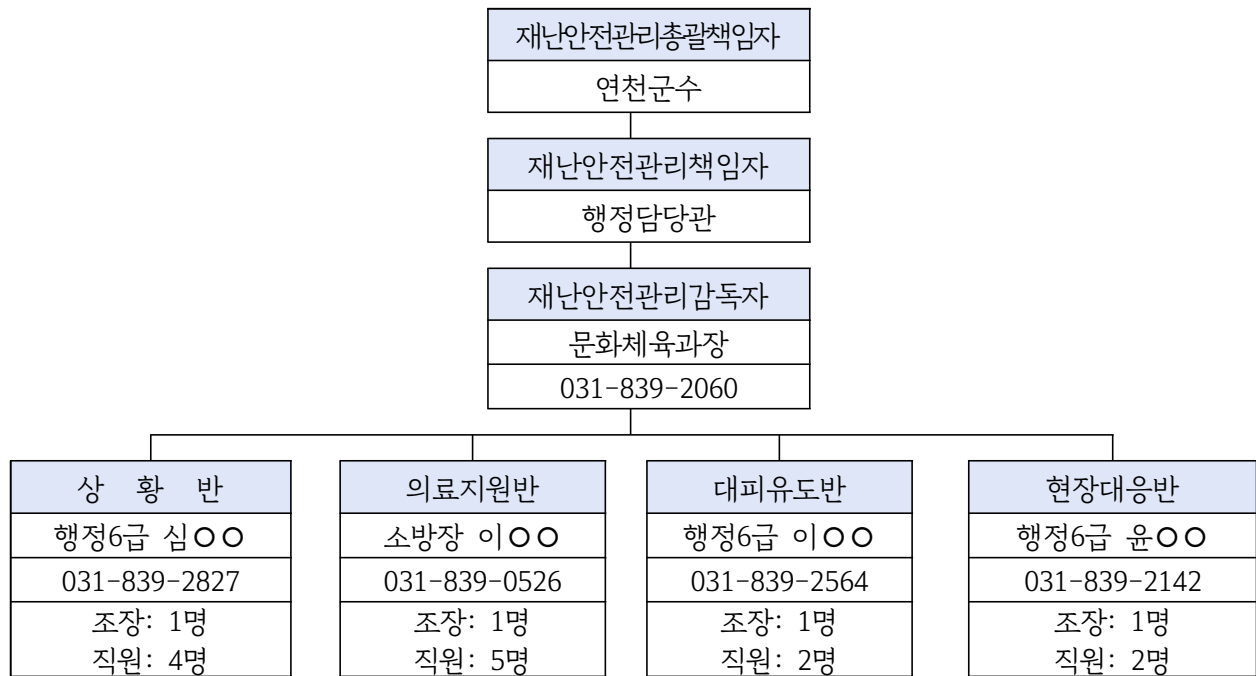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체육진흥과) | 031-8008-4736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신서파출소 | 031-834-8142 | 경찰지원 |
| 건설기계(설중기) | 031-834-8740 | 중장비 동원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1일 / 담당자: 문화체육과 김○○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4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행정6급 심○○)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 장 (소방장 이○○)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 장 (행정6급 김○○)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 장 (행정6급 방○○)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 상황반(심〇〇 외 4) | | |
|--|----------------------------|---|
| ☎방재팀: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토목)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827 | | |

| 대피유도반(이〇〇 외 2) | | |
|--|----------------------------|--|
| ☎방재팀: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 1. 고대산 1 ~ 3 야구장 대피 유도 (야구장 → 주차장)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2564 | | |

| 현장대응반(윤〇〇 외 2) | | |
|--|----------------|--|
| ☎방재팀: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142 | | |

| 의료지원반(이〇〇 외 4) | | |
|--|----------------------------|--|
| ☎방재팀: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0526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연천수레울아트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12 | 10개 법령 | |
| 연천수레울아트홀 | 5,225.47 | 4층 (지하1/지상3) 높이 31.65m |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문화 및 집회 시설 | 12명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 위탁운영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

- 연천수레울아트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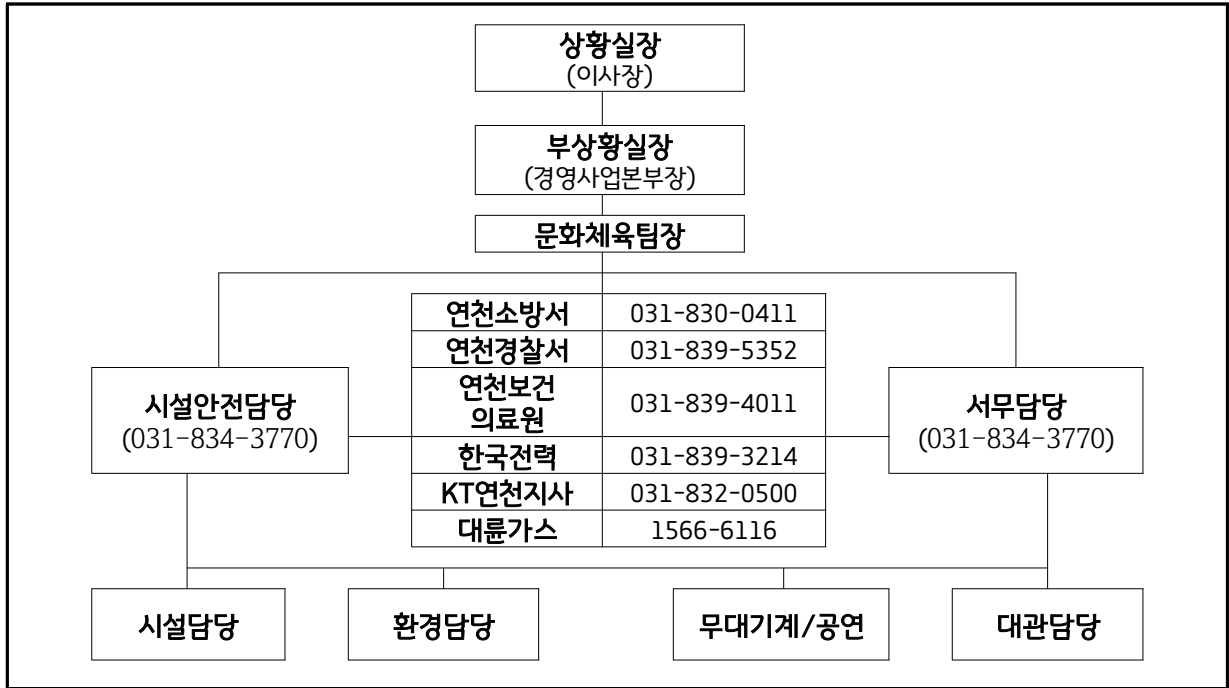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연천수레울아트홀(2010. 10. 신규 준공 시설)
 - 2024. 2.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작성 후 FMS등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5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가스, 전기, 소방, 기계) | 안전·보건관리자 |
| 연천수레울아트홀 | 가스:1명(자체직원 1명) /전기:1명(용역업체 1명) 소방:1명(용역업체 1명) /기계:1명(자체직원 1명) | 공단본부 1명(용역업체 1명) |

※ 문화 및 집회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훈련, 정전사고 훈련 예정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4,10월 |
| 전기안전관리법 | 11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2년 1회 | 6월 |
| 도시가스사업법 | 17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연 1회 | 7월 |
| 승강기안전관리법 | 32조 | 안전검사 | 정상 | 5 | 연 1회 | 6월 |
| | 31조 | 자체검사 | 정상 | 5 | 월 1회 | 연중 |
| 실내공기질관리법 | 12조 | 실내공기질 측정 | 정상 | 2 | 연 1회 | 12월 |
| 수도법 시행규칙 | 22조의3 | 수질검사 | 정상 | 1 | 연 1회 | 9월 |
| | 23조 | 급수관 상태검사 | 정상 | - | 2년 1회 | 하반기 |
| 소방시설법 | 25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 정상 | 1 | 연 각 1회 | 상반기 |
| 산업안전보건법 | 36조 | 위험성평가 | - | 1 | 연 1회 |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해당사항 없음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정전사고 대응계획 수립
 - 시설물 법정 하자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민방위대피훈련(중앙부처 훈련 발효 시)
 - 재난안전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직무교육 시 실시
 - 시설별 전문교육 이수: 승강기, 가스, 건축물, 전기 등 시설별 안전교육 수료
 - 산업안전보건법상(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안전관리자 교육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의료 전문가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사고조사 종료시까지) | 현장근무자 직원, 의료 전문가 |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정기 위험성평가 및 시설개선, 법정 하자점검·보수(지방계약법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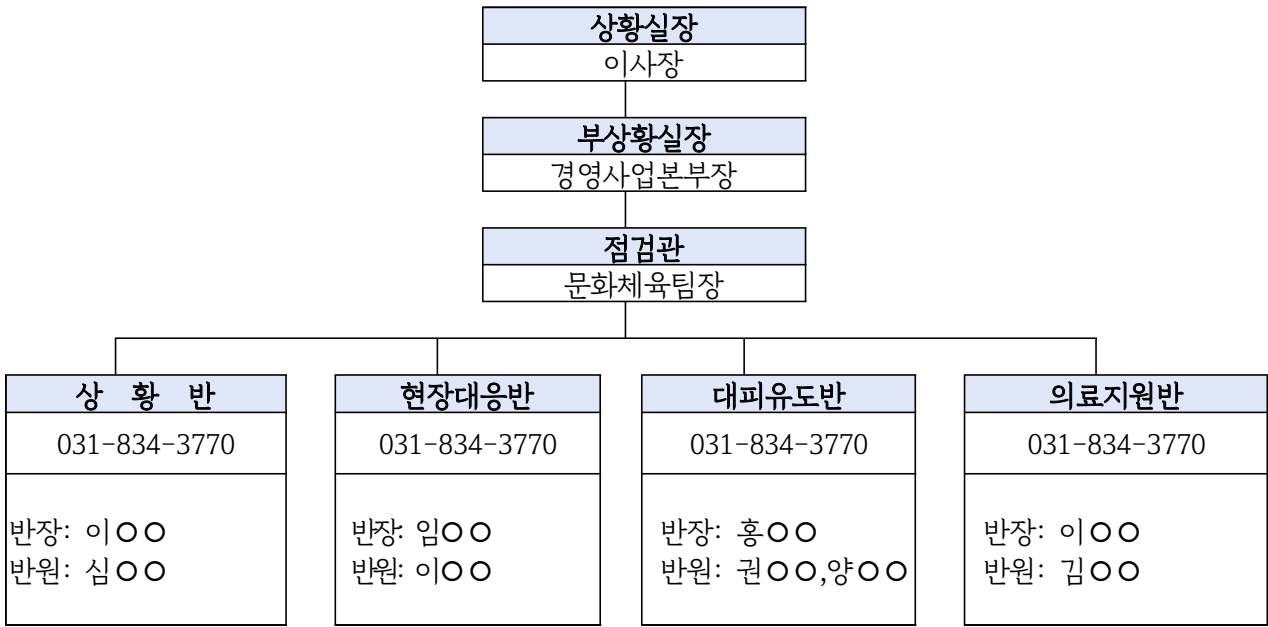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경영사업본부장→이사장)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경영사업본부장→이사장)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담당자(대응반)→팀장→경영사업본부장→이사장)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연천군청 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 안전총괄과 | 031-839-2166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1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52 | 경찰지원 |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 031-894-5528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 | 031-839-3214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031-8034-7000 | 전기시설관리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 032-425-0685 | 승강기 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1월 / 담당자 : 임○○

□ 수레울아트홀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이사장), 책임자(경영사업본부장), 감독자(팀장) 및 4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일반5급 이○○)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현장대응반 반 장 (일반5급 임○○동)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대피유도반 반 장 (일반7급 홍○○)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의료지원반 반 장 (일반6급 이○○)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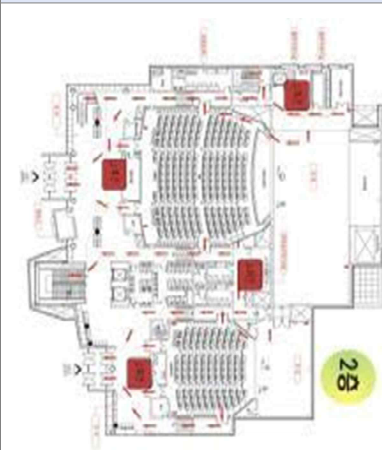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 황 반 | | | 현장대응반 | |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임무 | 위기 유형 | 임 무 | 임무 | 위기 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전파, 신고(소방서, 경찰서 등) • 현 위치 초동대응 등 •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유도 • 화재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 위험물 또는 테러 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상황별 매뉴얼 작성 • 준동도면 확보 (소방,건축) • 관련 유관기관 신고 • 시설물 사전예방 점검 •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 상황별 안내방송 • 대피인원 및 화재인원 집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펌프 가동 및 치수 설치 • 위험요인 차단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상황별 매뉴얼 작성 • 준동도면 확보 (소방,건축) • 관련 유관기관 신고 • 시설물 사전예방 점검 •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 상황별 안내방송 • 대피인원 및 화재인원 집계 | 지진 폭설 붕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유도반구조구조반 지원 • 시설자재 확보 및 시설작업 •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지원 | |
| ☎ 031) 834-3770 (사무실) | | | ☎ 031) 834-3770 (사무실) | | |

(뒷면)

|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망 (1) | | | |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망 (1) | | | | 피난계획도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상황실 | 반장 | 이OO | 031-834-3770 | 현장 대응반 | 반장 | 임OO | 031-834-3770 | |
| | 반원 | 심OO | 031-834-3770 | | 반원 | 이OO | 031-834-3770 | |
| | 반원 | | | | 반원 | | | |
| | 반원 | | | | 반원 | | | |
| | 반원 | | | | 반원 | | | |
| | 반원 | | | | 반원 | | | |
| | 반원 | | | | 반원 | | | |
| ☎ 031) 834-3770 (사무실) | | | | ☎ 031) 834-3770 (사무실) |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는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복지정책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1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노유자시설 | 연천종합복지관 | 1 |

연천군 종합복지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연면적 5천㎡이상의 노유자시설)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4 | 8개 법령 | |
| 연천군 종합복지관 | 6,739.8 | 6층 (지하1/지상 6) | 구조: 철근 콘크리트 용도: 사회복지시설, 일발업무시설, 노유자 시설 | 4 | -시설물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 위탁운영 (연천군자원 봉사센터)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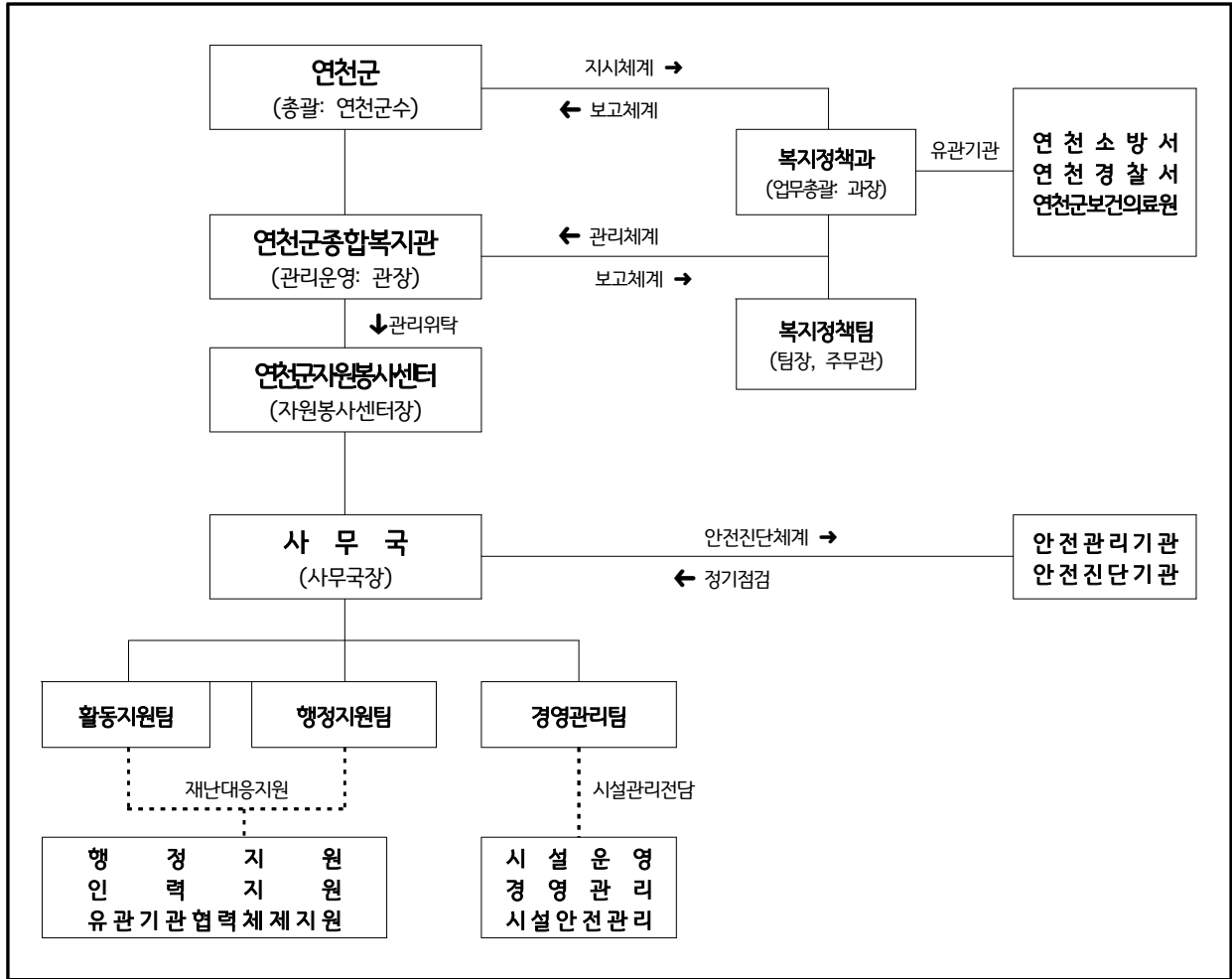
- 연천군종합복지관: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연천군종합복지관: 2024. 2. 13.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작성 후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4명

| 시설명 | 인력 | 시설관리 |
|----------|--------------------|--------------------|
| 연천군종합복지관 | 전문인력 2명 일반인력 2명 | 건축, 전기, 통신, 가스, 소방 |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주기 | 점검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양호 | 1 | 연 2회 | 상·하반기 |
| 전기안전관리법 | 11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3년 1회 | 2027년 |
| 도시가스사업법 | 17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연 1회 | 5월 |
| 승강기안전관리법 | 32조 | 안전검사 | 정상 | 1 | 연 1회 | 1월 |
| | 31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월 1회 | 매월 |
| 실내공기질관리법 | 12조 | 실내공기질 측정 | 정상 | 1 | 연 1회 | 하반기 |
| 수도법 시행규칙 | 22조의3 | 수질검사 | 정상 | 1 | 연 2회 | 상·하반기 |
| | 23조 | 급수관 상태검사 | 정상 | 1 | 2년 1회 | 2024년 |
| 소방시설법 | 25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 정상 | 1 | 연 각 1회 | 상·하반기 |
| 산업안전보건법 | 36조 | 위험성평가 | 정상 | 1 | 연 1회 | 상반기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균열, 이질재 접합부 이격, 미장 박리·박락, 누수·백화 등 환경적 손상여부 옥상층 바닥 마감재 탈락 및 대강당 누수현상 | 연중 수시 점검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검사 용역을 통한 점검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및 점검보고서 작성 | 확보 (연천군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중 일반운영비 활용 및 안전점검 용역비 편성) | 해당없음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 법정 하자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시공사)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지진대피훈련(중앙부처 훈련 발효 시)
 - 시설별 전문교육: 승강기, 가스, 건축물, 전기 등 시설별 전문교육
 -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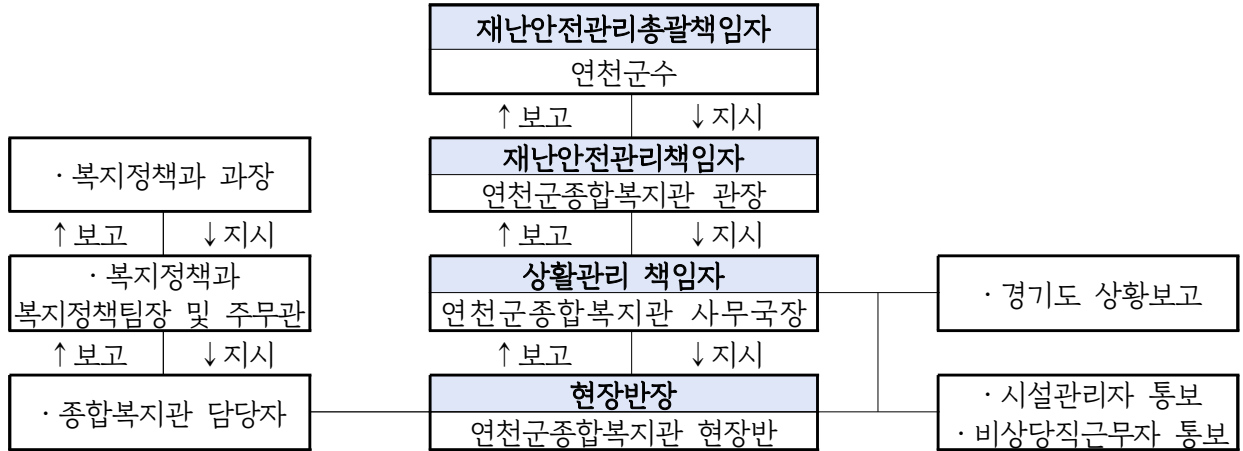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재난안전과)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복지정책과) | 031-839-2279 | 재난관리 및 사고수습 |
| 연천소방서 | 031-830-0119 | 사고수습 |
| 연천경찰서 | 031-839-5329 | 사고수습 |
| 한국가스안전공사 | 031-878-0027 | 가스시설관리 |
| 대륜이엔에스 | 031-873-8000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기안전공사 | 031-850-7000 | 전기시설관리 |
| 한창전기 | 031-971-9680 | 전기시설관리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031-984-6591 | 승강기관리 |
| 효은엘리베이터 | 031-855-6630 | 승강기관리 |
| 한국소방안전원 | 1899-4819 | 소방시설관리 |
| 대흥소방 | 834-5119 | 소방시설관리 |
| 태백관리 | 1899-4819 | 수질검사 및 급수관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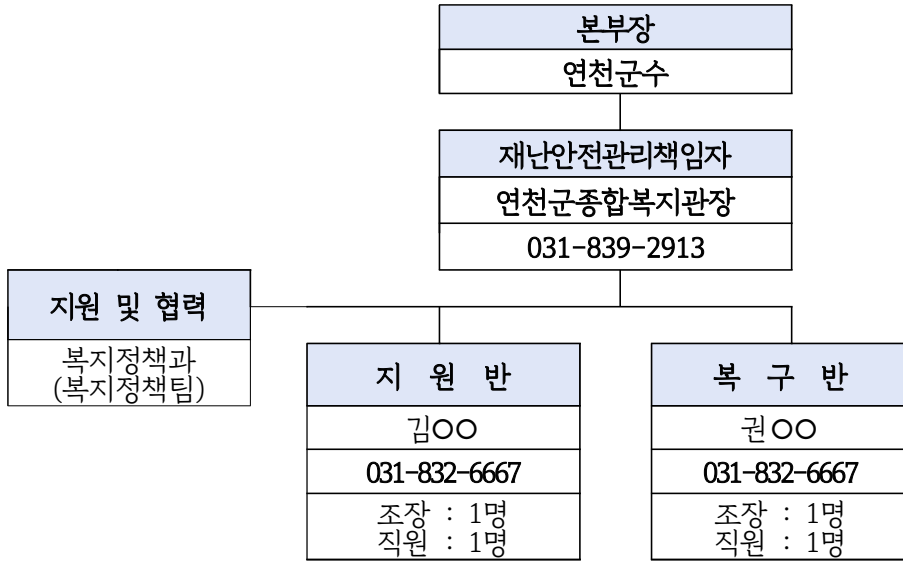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4년 2월 29일 / 담당자: 김○○

○ 종합복지관 입주기관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 1층 | 안내데스크 및 방송실 | 031-832-6667 | 안내방송 및 대피유도 |
| | 카페어울림 | 031-833-4888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여성취업센터 | 031-835-2622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일자리센터 | 031-839-2980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청소년문화의집 | 031-832-7942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2층 | 드림스타트 | 031-833-8992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희망장난감도서관 | 031-833-7111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 031-8088-7059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1-832-4452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3층 | 연천군자원봉사센터 | 031-834-1365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4층 | 연천군종합복지관 사무실 | 031-832-6667 | 운영 중지 및 대피유도 |
| 5층 | 노인여가시설 | 031-834-6082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여성문화공간 '공간 休' | 031-833-2624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 연천군 가족센터 | 031-835-0093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 6층 | CCTV통합관제센터 | 031-839-2330 | 운영 중지 및 긴급 대피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4년 2월 29일 / 담당자: 김○○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본부장(연천군수), 재난안전관리책임자(관장) 및 2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행정지원반 반장 (김OO) |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본부운영 총괄 ○유관기관 보고 및 언론보도자료 제공 ○단계별 비상근무 명령 ○상황전파 및 유지관리 ○사무실 및 차량관리 통신반 구성 및 유지관리 ○구조, 구급 업무 지원 ○응급조치의 지시 협조에 관한 사항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방역예방 관련 업무 ○긴급시 이용객의 대피유도에 관한 사항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 복구반 반장 (권OO) | 시설 보건 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구용 장비동원에 관한 사항 ○응급 조치 및 복구 업체 운영 ○복구시행 및 지도감독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소관부서(복지정책과) 개인별 임무카드

- 재난발생 방지와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대책 수립(평시)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사고 방지 활동(평시)
- 재난관련 유관기관 대응체계 확보(평시)
- 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구급 지원 및 피해상황 조사
- 재난상황 신고 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 사고수습·복구 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 절차 | 운영 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사회복지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3 |
| 공중이용시설 | 어린이집 | 연천어린이집 | 1 |
| 공중이용시설 | 어린이집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 1 |
| 원료·제조물 | 식품 | 연천군 노인복지관 | 1 |

연천어린이집, 백학꿈나무어린이집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2개소) | | | | 33 | 7개 법령 | |
| 연천 어린이집 | 597.97 | 1층 (지상1) 높이 : 4.64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용도 : 어린이집 | 21 |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 위탁운영 (어린이집원 장) |
| 백학꿈나무 어린이집 | 670.43 | 3층 (지하1/지상 2) 높이 : 9.8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용도 : 어린이집 | 12 |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 위탁운영 (어린이집원 장)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어린이집: 해당없음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연천어린이집: 2019.08. 신규 준공 시설
(다만, 시설물안전법 시설이 아니므로 FMS 미등록)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2019.04. 신규 준공 시설
(다만, 시설물안전법 시설이 아니므로 FMS 미등록)
- 전문인력 확보 현황: 0명
※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시설관리책임자 법정교육과정 이수(원장)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실내공기질관리법 | 12조 | 실내공기질 측정 | 정상 | 2 | 연 1회 | 7~8월 |
| 전기안전관리법 | 11조 | 정기검사 | - | 1 | 3년 1회 | 2023년 |
|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 17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연 1회 | 7월 |
| | 별표7 | 정압기 분해점검 | - | 1 | 3년 1회 / 4년 1회 | 하반기 |
| 승강기안전관리법 | 32조 | 안전검사 | - | 3 | 연 1회 | 1월 |
| | 31조 | 자체검사 | 정상 | 3 | 월 1회 | 연중 |
| 수도법 시행규칙 | 22조의3 | 수질검사 | 정상 | 1 | 연 2회 | 5,11월 |
| | 23조 | 급수관 상태검사 | - | - | 2년 1회 | 하반기 |
| 소방시설법 | 25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 정상 | 1 | 연 각 1회 | 상반기 |
| 산업안전보건법 | 36조 | 위험성평가 | - | 1 | 연 1회 | 상반기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연천어린이집 백학꿈나무어린이집 | 3/6/9/12월 초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확보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교육(재해예방 포함) 계획 수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기록·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함.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실내공기질) 시행
- 현행 안전관리계획 시정 및 세부 안전메뉴얼 수립(어린이집)
- 시설물 법정 하자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어린이집→군청)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영유아는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 시설관리책임자(원장): 법정교육과정(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 매년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원장 보육교직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원장 보육교직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원장 보육교직원 |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연중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정기 위험성평가 및 시설개선

- 위험성평가 점검(연 1회)
 - 어린이집 안전점검(이동규 주무관)
- 시설개선(상시)
 - 어린이집 시설개선(김재규 주무관)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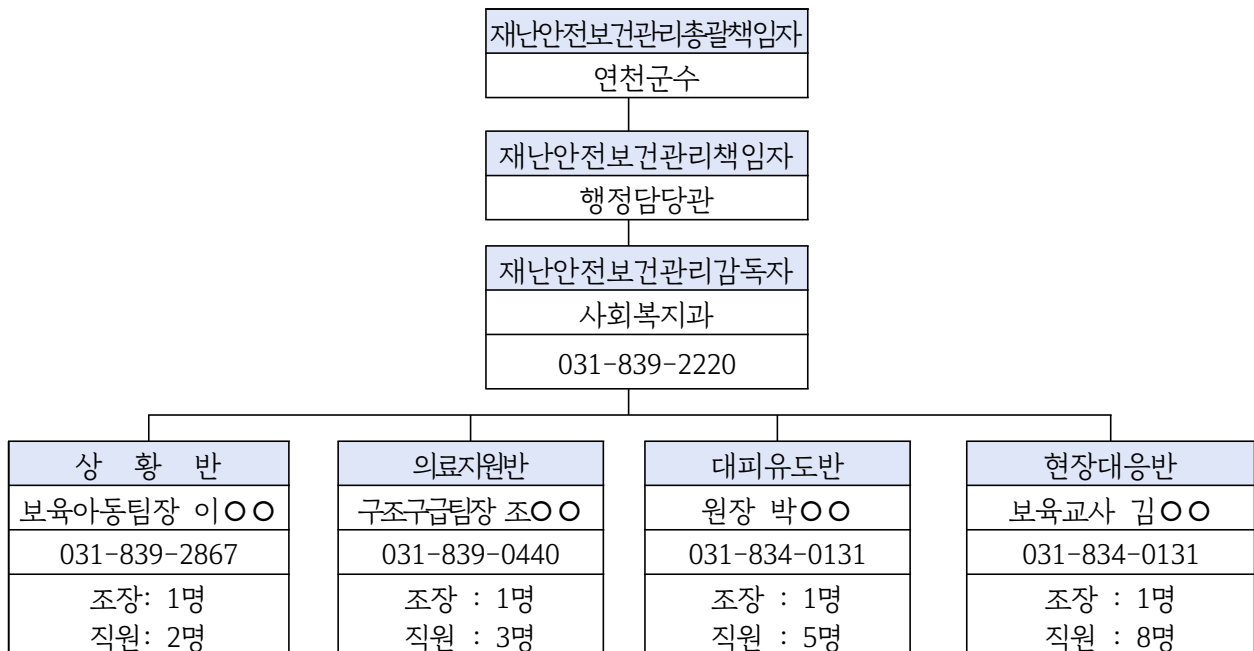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보육정책과 | 031-8008-4732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상황실)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 031-878-0019 | 가스시설관리 |
| 대륜이엔에스 | 031-873-8000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7일 / 담당자 : 이○○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연천어린이집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

- 재난발생 방지와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함 대책 수립(평시)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사고 방지 활동(평시)
- 재난 관련 유관기관 대응체계 확보(평시)
- 재난발생 시 구조·구급 지원 및 피해상황 조사
- 재난상황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 사고수습·복구 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 영 절 차 | 운 영 내 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 |
|--|
| |
|--|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연천군 노인복지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식품위생법(식품)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m²,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26 | 7개 법령 | |
| 연천군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 2,613.56 | 지상3층 | | 26 | - 식품위생법 - 시설물안전법 - 전기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소방시설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노인복지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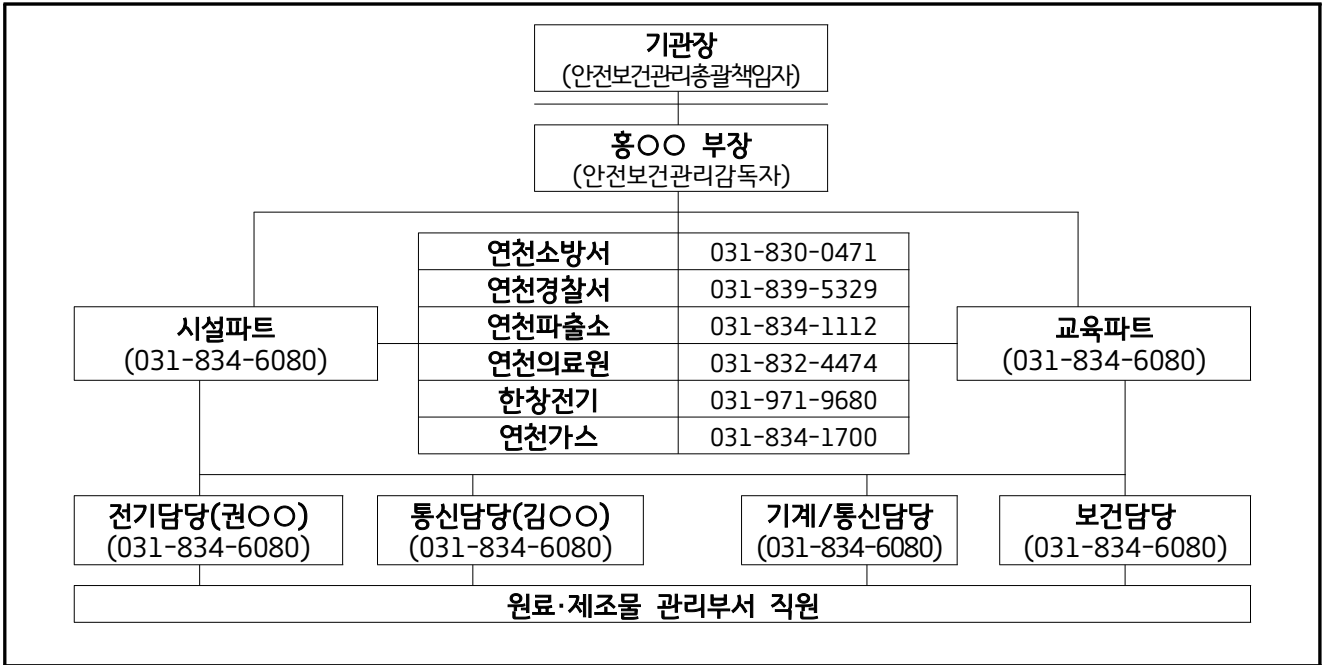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연천군 노인복지관: 2010.04. 준공 시설로 연천군 노인복지관(구내식당)에 대하여 별도 안전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4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 연천군노인복지관 | 1명 | 1명(간호사) | 2명 |

※ 개별 원료·제조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안전장치

-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첨가물 및 MSDS관리
 -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 첨가물 및 MSDS관리
-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 구 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고글 | MSDS 안구보호 | 5 | 조리종사자 휴게식 내 캐비닛 | 최○○ |
| 마스크 | 감염 예방 | 100 | 조리종사자 휴게식 내 캐비닛 | 최○○ |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MSDS 유해물 점검 | 점검주기, 수시점검 요건 및 준비사항 등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피드백 절차 등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 안전장비 정기점검 및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메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화학물질유출사고훈련 등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직원 반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인명(응급)구조 전문교육 자격 취득,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교육 및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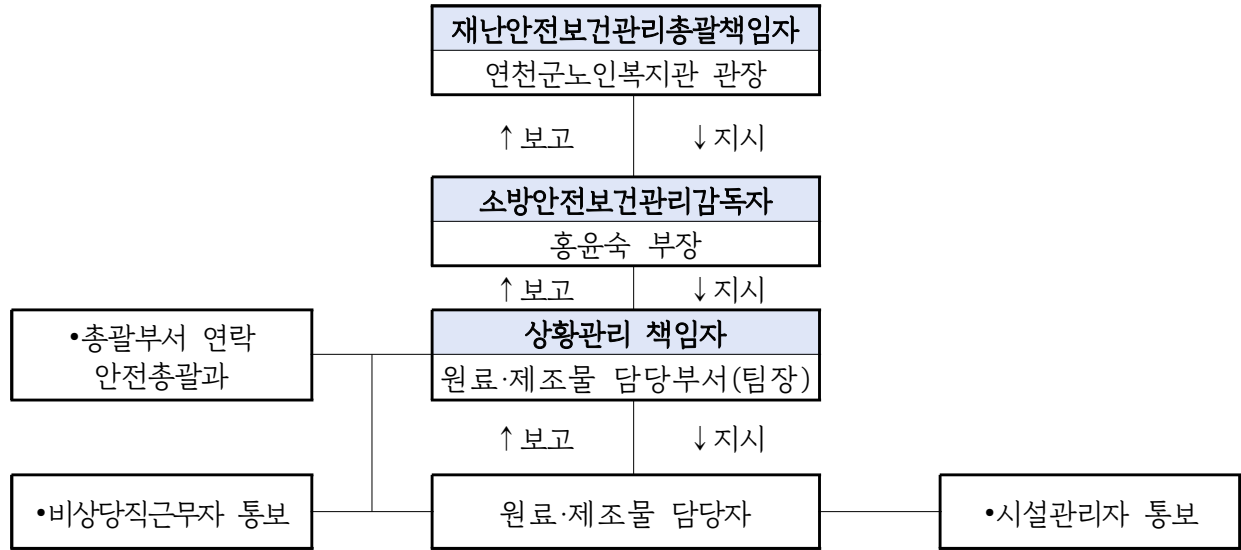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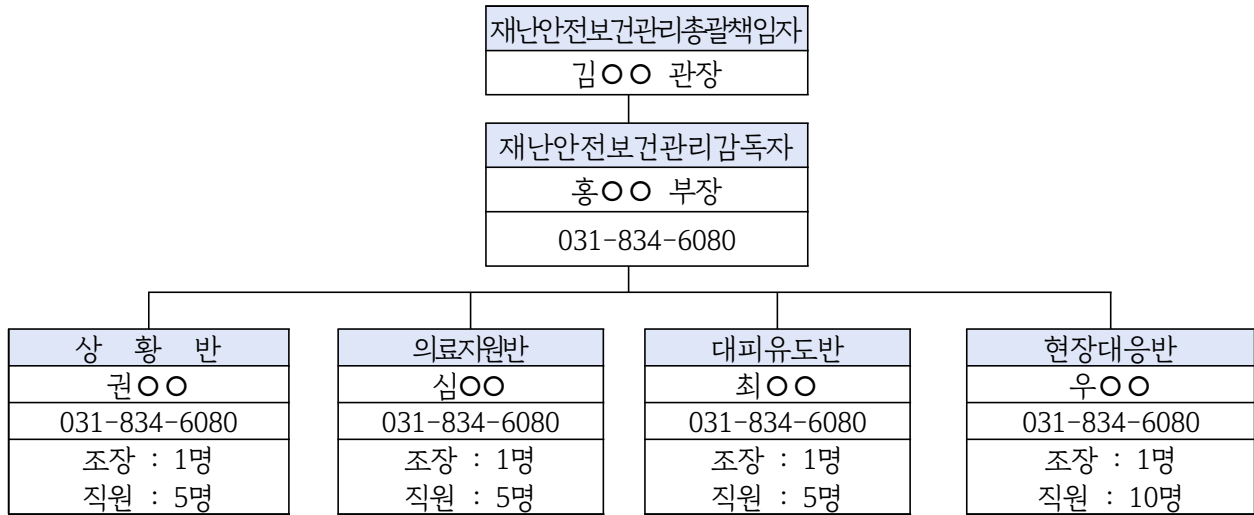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부장→기관장)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주임,대응반→기관장)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기관장)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파출소 | 031-834-1112 | 경찰지원 |
| 연천가스 | 031-834-1700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승강기(한국승강기) | 031-984-6591 | 승강기 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5일 / 담당자 : 홍○○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노인복지관 관장), 책임자(부장), 감독자(시설주임) 및 4개 반으로 구성 운영
- 연천군노인복지관은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특별 임시조직을 구성함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권혁규 주임)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 장 (심희원 간호사)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 장 (최효정 과장)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 장 (우종윤 과장)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권○○ 주임) | | |
|--|--|---|
| ☎연천119센터:031-830-0521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4-1112 ☎연천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4-6080 | | |

| 대피유도반(성명:최○○ 과장) | | |
|--|--|--|
| ☎연천119센터:031-830-0521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4-1112 ☎연천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1. 3층 구역 비상대피로 확보 2. 2층 구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1층 로비 및 광장 화장실 등 사각 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 ☎ 대피유도반장 : 031-834-6080 | | |

| 현장대응반(성명:우○○ 과장) | | |
|--|----------------|--|
| ☎연천119센터:031-830-0521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4-1112 ☎연천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4-6080 | | |

| 의료지원반(성명:심○○ 간호사) | | |
|--|--|--|
| ☎연천119센터:031-830-0521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4-1112 ☎연천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의료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의료지원반장 : 031-834-6080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연천119센터:031-830-0521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4-1112 ☎연천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 조직 | 직위 | 성 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권○○ | 031-834-6080 |
| | 반원 | 임○○ | 031-834-6080 |
| | 반원 | 김○○ | 031-834-6080 |
| | 반원 | 이○○ | 031-834-6080 |
| | 반원 | 이○○ | 031-834-6080 |
| | 반원 | 김○○ | 031-834-6080 |
| | 반원 | 임○○ | 031-834-6080 |
| | 반원 | 권○○ | 031-834-6080 |
| | 반원 | 유○○ | 031-834-6080 |
| ☎ 상황반장 : 031-834-6080 |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연천119센터:031-830-0521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4-1112 ☎연천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 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부장 | 홍○○ | 031-834-6080 |
| | 직원 | 우○○ | 031-834-6080 |
| 상황반 | 팀장 | 권○○ | 031-834-6080 |
| | 팀원 | 임○○ | 031-834-6080 |
| | 팀원 | 김○○ | 031-834-6080 |
| 현장 대응반 | 반장 | 우○○ | 031-834-6080 |
| | 반원 | 황○○ | 031-834-6080 |
| | 반원 | 한○○ | 031-834-6080 |
| 의료 지원반 | 반장 | 심○○ | 031-834-6080 |
| | 반원 | 하○○ | 031-834-6080 |
| | 반원 | 김○○ | 031-834-6080 |
| ☎ 대피유도반장 : 031-834-6080 |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보존식 확인 및 의료원 역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 영 절 차 | 운 영 내 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오염 식재료 폐기, 소독기기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구입
-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주방·위생 점검표 관리 철저 등

회 계 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2 |
| 공중이용시설 | 업무시설 | 연천군청(본관) | 1 |
| 공중이용시설 | 업무시설 | 연천군청(신관) | 1 |

연천군 청사(본관, 신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3종시설물 (별표2 16항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2개소) | | | | | 5 | 5개 법령 | |
| 연천 군청 | 본관 | 3,957.6 | 지하1, 지상3층 | 철근콘크리 트구조, 업무 시설 | 5 | -시설물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 |
| | 신관 | 5697.4 | 지하1, 지상4층 | 철근콘크리 트구조, 업무 시설 | |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청(본관, 신관):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본관: 1990.06.29. 준공, FMS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완료
- 신관: 1998.05.09. 준공, FMS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6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명 포함)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 기계, 전기 | 건축 | 보일러, 가스 |
| 연천군청 (본관, 신관) | 2명 | 2명 | 2명 |

※ 매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용역 책임기술자를 전문인력에 포함함 (건축)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2 | 연 2회 | 4,10월 |
| 전기안전관리법 | 11조 | 정기검사 | - | 1 | 3년 1회 | 2023년 |
|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 17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연 1회 | 4월 |
| | 별표7 | 정압기 분해점검 | - | 1 | 3년 1회 / 4년 1회 | 하반기 |
| 승강기안전관리법 | 32조 | 안전검사 | - | 3 | 연 1회 | 1월 |
| | 31조 | 자체검사 | 정상 | 3 | 월 1회 | 연중 |
| 소방시설법 | 25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 정상 | 1 | 연 각 1회 | 상반기 |

- **연천군청 정기안전점검 세부내역

- 시기별 시설안전관리 : 2회(풍수해, 동절기)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2023년 하반기) : 양호
- 전기시설 정기 안전점검 : 2022.03.21. 합격
- 소방시설 종합정밀안전점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 시행 중
- 보일러설비 안전점검 · 도시가스 안전점검 : 주 1회 실시중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연천군청 (본관, 신관)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지진대피훈련(중앙부처 훈련 발효 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시설별 전문교육 이수: 승강기, 가스, 건축물, 전기 등 시설별 전문교육 수료
 - 인명(응급)구조 전문교육 자격 취득,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교육 및 선임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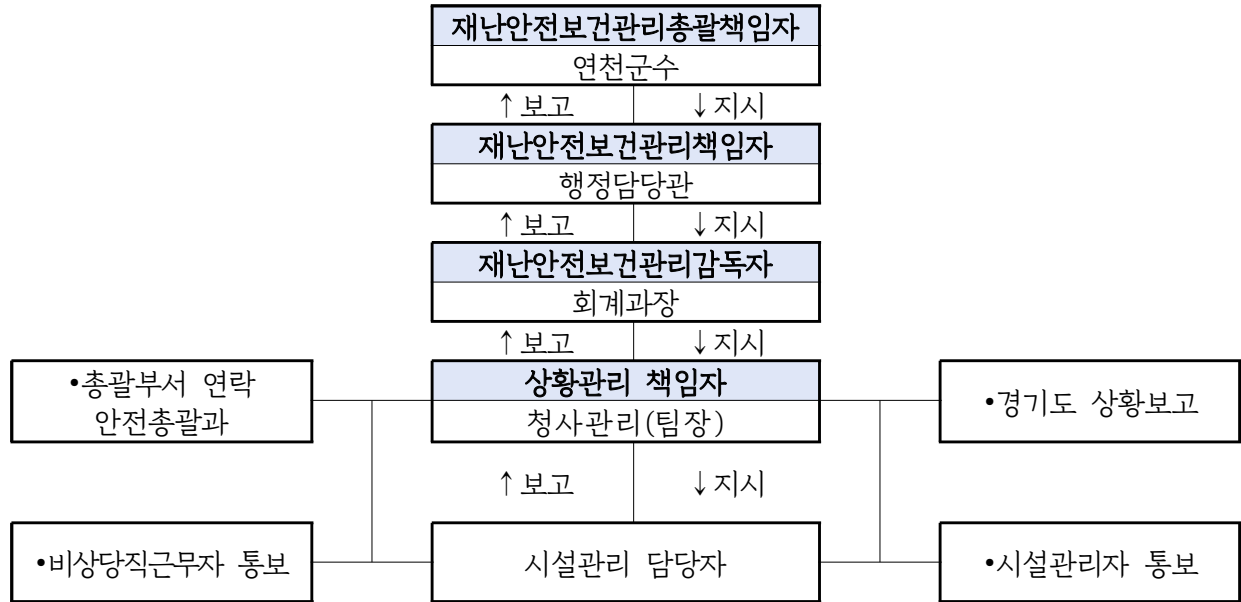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험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119 | 처치 및 치료 |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3002 / 031-318-5982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승강기(한국승강기) | 031-984-6591 | 승강기 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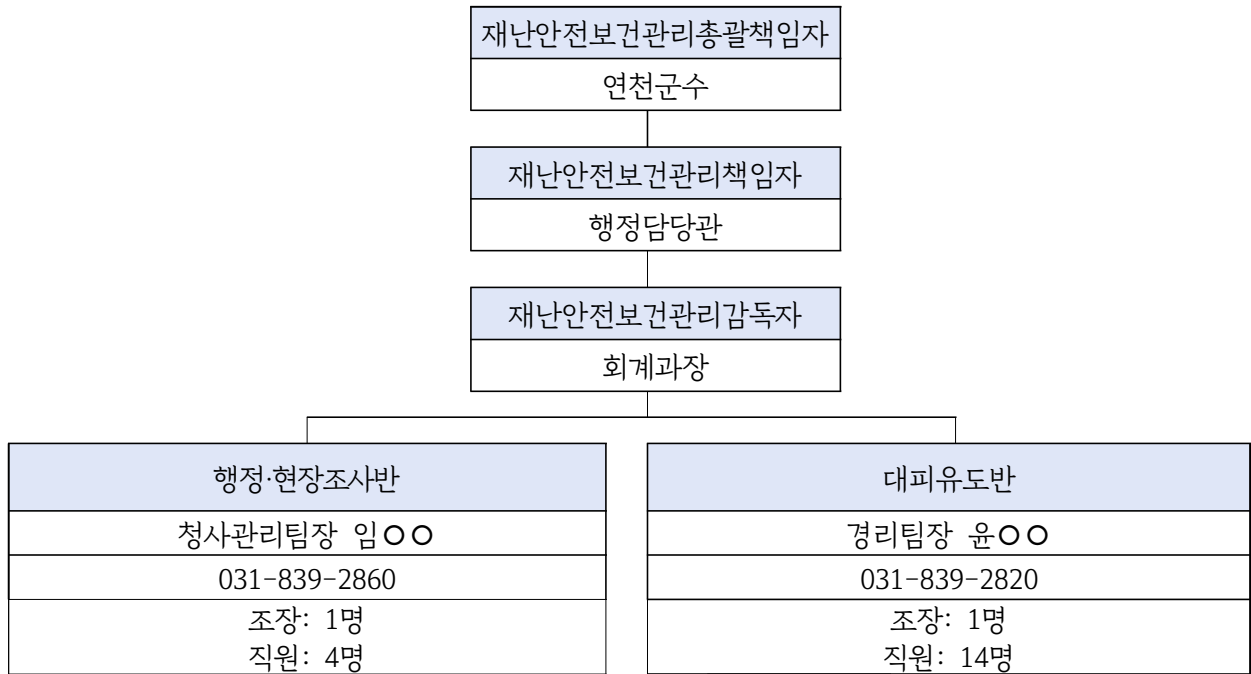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 담당자 : 박○○

○ 내부 비상연락망

| 구 분 | | 유 선 | 기 능 |
|--------------|-----------------|--------------|------------|
| 미디어콘텐츠과(방송실) | | 031-839-2069 | 대피방송 실시 |
| 본관(1층) | 종합민원과(허가민원실 포함) | 031-839-2805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본관(2층) | 군수실 | 031-839-2004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부군수실 | 031-839-2011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기획감사담당관 | 031-839-2800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행정담당관 | 031-839-2809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본관(3층) | 국장님실 | 031-839-2021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미디어콘텐츠과 | 031-839-2804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대회의실 | 031-839-2099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본관(지하) | 구내식당 | 031-839-2999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체력단련실(행정담당관) | 031-839-2766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신관(1층) | 인구정책실 | 031-839-2810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복지정책과 | 031-839-2866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사회복지과 | 031-839-2830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산림복지과 | 031-839-2800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신관(2층) | 의회사무과 | 031-839-2502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상설감사장 | 031-839-2802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신관(3층)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 031-839-2502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세무과 | 031-839-2815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 | 회계과 | 031-839-2820 | 부서 인원 대피유도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 담당자: 박○○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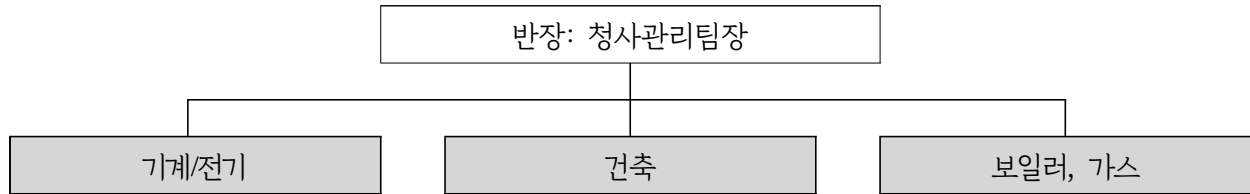
- 시기 :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총괄책임자가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 시설관리책임자(회계과장) 및 2개 반으로 구성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행정·현장조사 (청사관리팀장) | 행정 및 시설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보고 및 자료 제공 ○상황전파 및 유지관리 ○구조, 구급 업무 지원 ○응급조치의 지시 협조에 관한 사항 |
| 대피유도반 (경리팀장) | 직원 대피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유도를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 대피 유도 담당구역 배치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책반 구성 운영

◆ 재난대책본부 구성이하 대응단계에서는 방재센터를 현장상황실(전체모니터링)로 전환하여 현장대책반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대응



※ 반팀장 부재시 차석이 대직 수행한다. 또한 현장대책반은 재난대책본부 구성 대응 전이므로 외부환경에 따라 시설물 소관부서장이 판단하여 구성한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 파트 | 담당 | 임무 |
|------------|-------------------------------|--|
| 행정 · 현장조사반 | 기계, 전기담당 (청사관리팀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 조사 및 조치인력 동원 ○ 응급복구, 안전점검 ○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연락 |
| | 건축담당 (청사관리팀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 조사 및 현장 조치인력 동원 ○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안전점검 ○ 응급조치 및 복구시행 |
| | 가스담당 (청사관리팀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 조사 및 현장 조치인력 동원 ○ 피해자 응급 처치 및 상태 관찰 ○ 유관기관 연락 |
| 대피유도반 | 대피유도 (경리팀 4명, 계약팀 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대피 유도를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 본관 대피 유도 담당구역 배치(본관 1,2,3층, 지하) ○ 본관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본관 대피인원수 파악 |
| | 대피유도 (계약팀 2명, 재산관리팀 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관 대피 유도를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 신관 대피 유도 담당구역 배치(신관 1,2,3층, 지하) ○ 신관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신관 대피인원수 파악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 영 절 차 | 운 영 내 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건 설 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102 |
| 공중이용시설 | 제1종 교량(도로) | 남계대교 | 1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교량(도로) | (구)초성교 등 | 15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옹벽 | 조형석옹벽(전곡읍 남계로 408) | 1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제방 | 구미1제 등 | 24 |
| 공중이용시설 | 제3종 교량(도로) | 강내3교 등 | 32 |
| 공중이용시설 | 제3종 교량(하천) | 강내1교 등 | 29 |

건설과 도로분야 제1종시설물 교량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1종시설물(도로교량)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영인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1 | 1개 법령 | |
| 남계대교 | 544.9m | | 경간형식: PC빔 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5호선 (B등급)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건설과 도로분야 제1종시설물 도로교량: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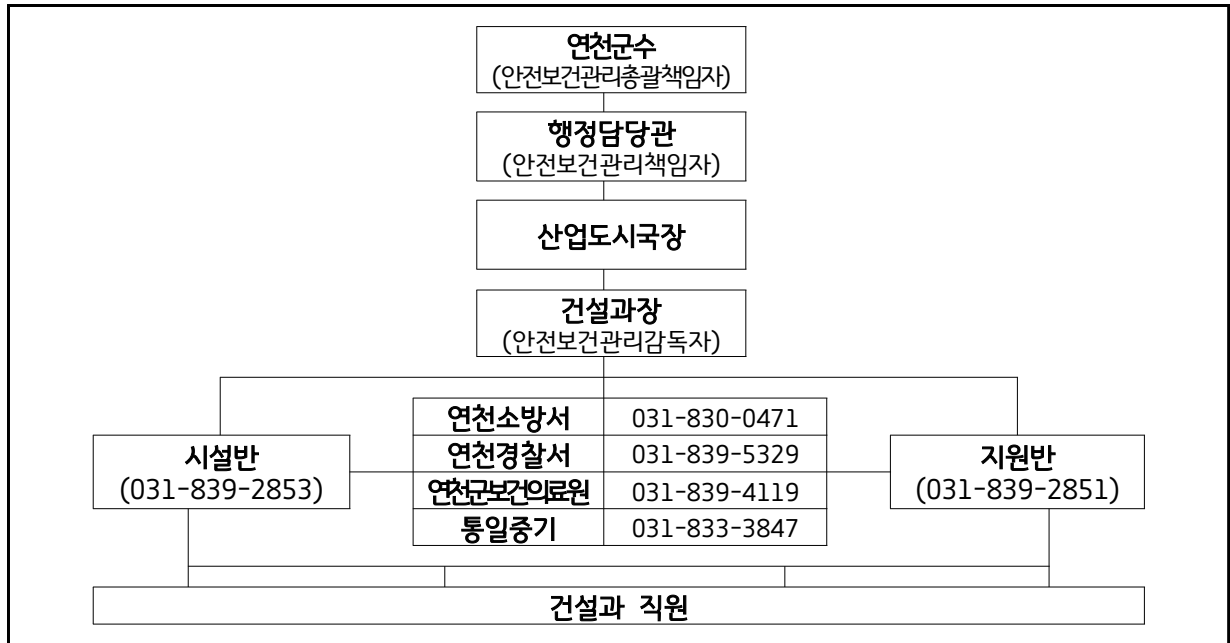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건설과 도로분야 제1종시설물 도로교량
 - 제1종시설물 도로교량(건설과 도로분야)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토목, 건축) | 보건관리자 |
| 남계대교 | 3명 | 해당없음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2, 8월 |
| | | 정밀안전점검 | B | 1 | 2년 1회 | 2024년 |
| | 12조 | 정밀안전진단 | B | 1 | 5년 1회 | 2026년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남계대교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제1종 시설물에 대한 대피(훈련) 실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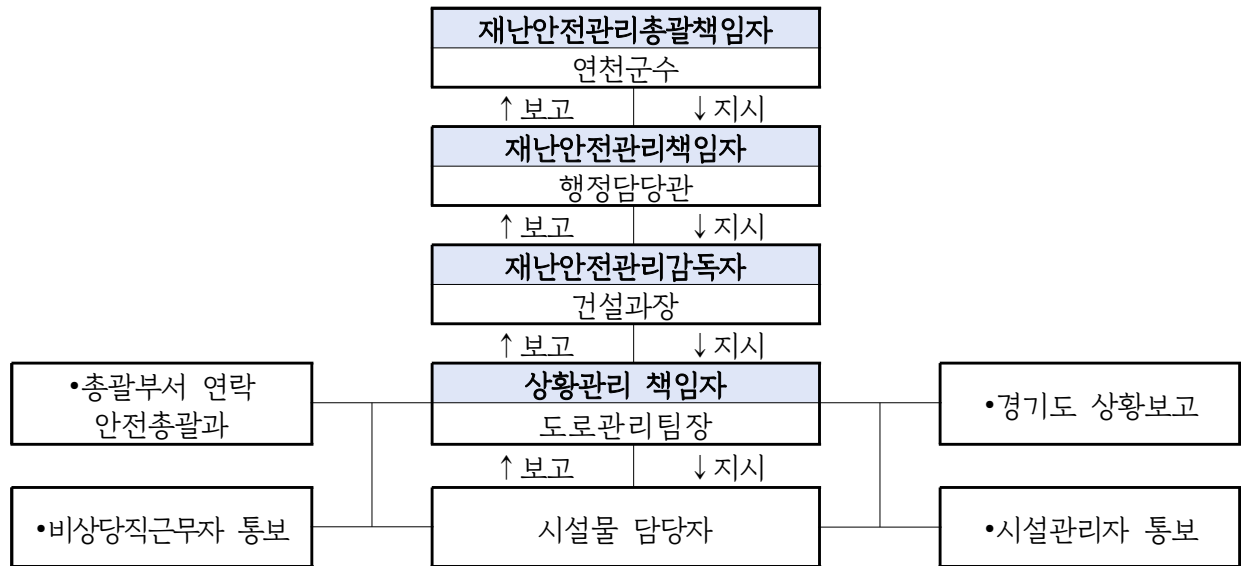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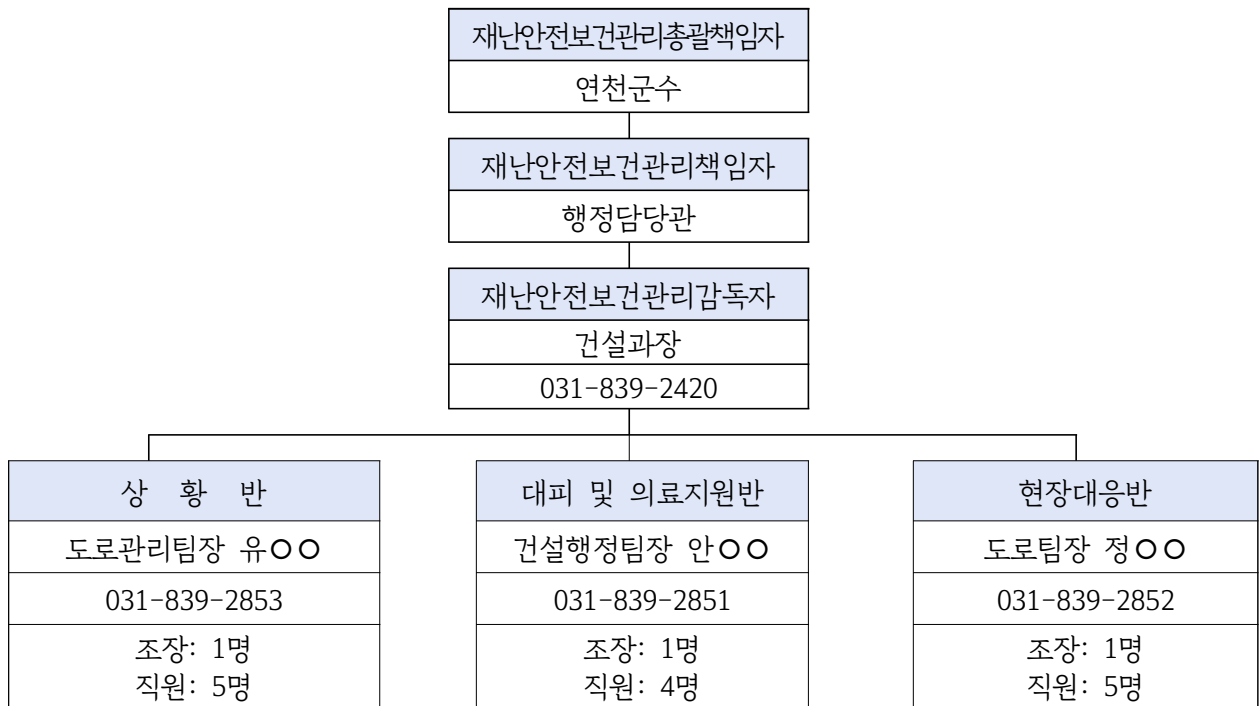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 (북부시설안전점검팀) | 031-8030-4403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군남파출소 | 031-833-8222 | 경찰지원 |
| 통일중기 | 031-833-3847 | 응급복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24일 / 담당자 : 유○○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3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도로관리팀장 유○○)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대피 및 의료지원반 반 장 (건설행정팀장 안○○) | 대피유도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현장대응반 반 장 (도로팀장 정○○)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유00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853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안00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비상대피로 확보 ※ 유도봉 소지 2. 통행 중지 및 차량 통제 지원 3.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4.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5.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장 : 031-839-2851 | | |

| 현장대응반(정00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치수판 설치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852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교량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도로교량)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 계(15개소) | | 1 | 1개 법령 | |
| (구)초성교 | 118m | 경간형식: PSC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구)한탄교 | 250.6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준용도로 (B등급) |
| 고탄교(구) | 240.8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C등급) |
| 고탄교(신) | 240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궁신교 | 270m | 경간형식: 강박스거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대광교 | 175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C등급) |
| 동막1교 | 120m | 경간형식: PS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백의교 | 150m | 경간형식: PSC빔거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보막교 | 11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사랑교 | 264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C등급) |
| 신천교 | 118m | 경간형식: PSC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농어촌도로 (B등급) |
| 옥산2교 | 12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옥산교 | 113.5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와초교 | 108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왕림교 | 160m | 경간형식: 강박스거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B등급)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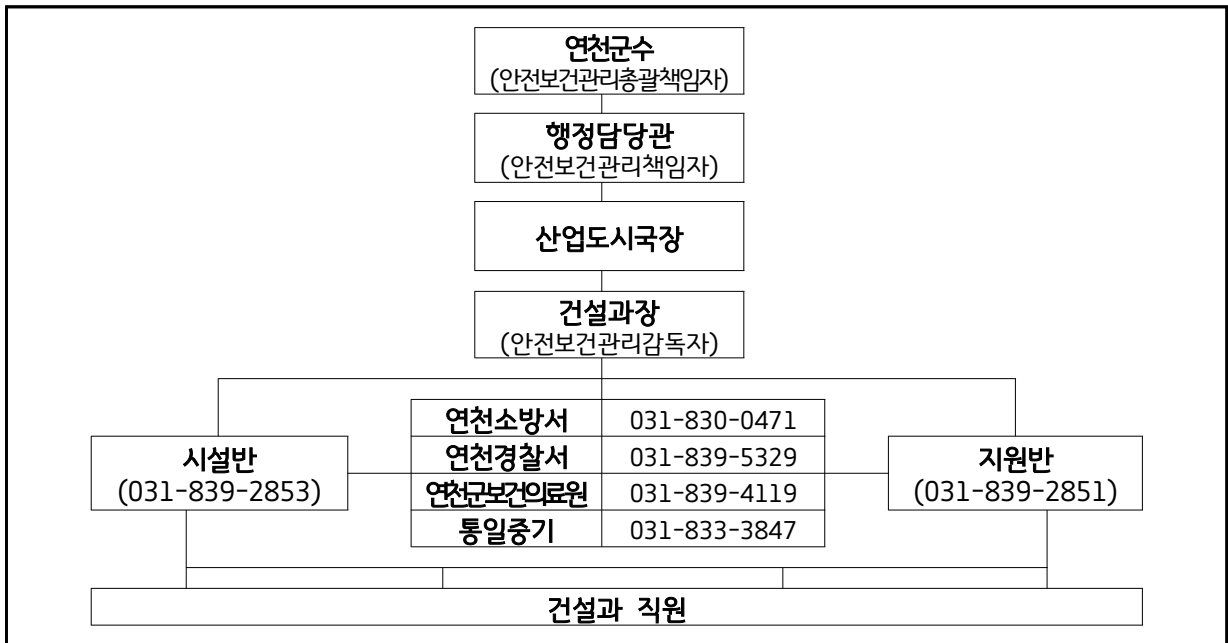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
 -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건설과 도로분야)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토목, 건축) | 보건관리자 |
| (구)초성교 등 15개소 | 3명 | 해당없음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C | 15 | 연 2회 | 2, 8월 |
| | | 정밀안전점검 | B/C | 15 | 2년 1회 | 시설별 상이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구)초성교 등 15개소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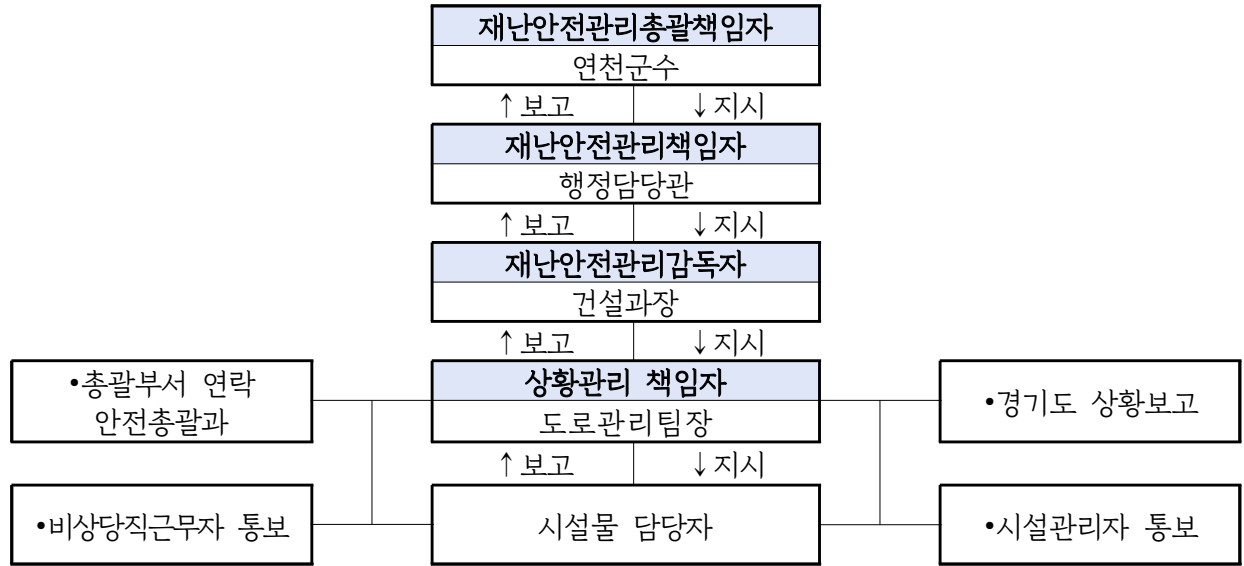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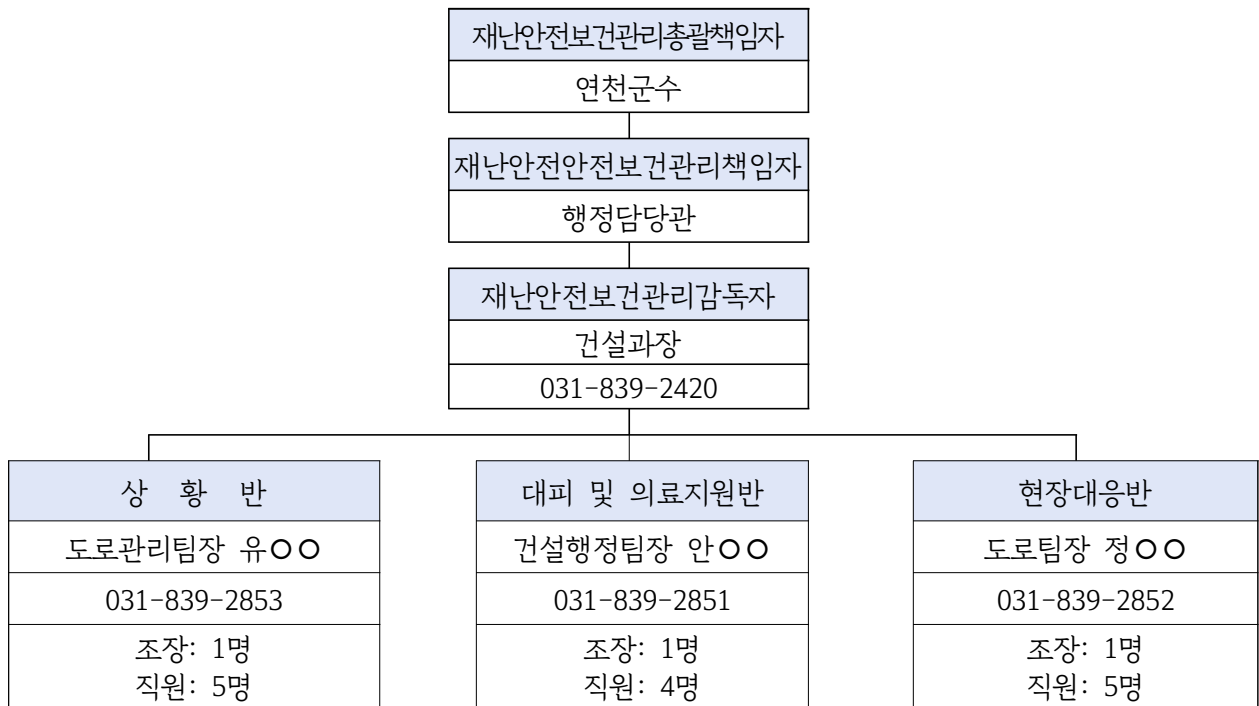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 (북부시설안전점검팀) | 031-8030-4403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전곡파출소 | 031-832-2112 | 경찰지원 |
| 통일중기 | 031-833-3847 | 응급복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24일 / 담당자 : 유○○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3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도로관리팀장 유○○)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대피 및 의료지원반 반 장 (건설행정팀장 안○○) | 대피유도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현장대응반 반 장 (도로팀장 정○○)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유00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8.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9.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10.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11. 관련 유관 기관 신고 12.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13.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14.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853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안00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비상대피로 확보 ※ 유도봉 소지 2. 통행 중지 및 차량 통제 지원 3.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4.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5.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장 : 031-839-2851 | | |

| 현장대응반(정00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2.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치수판 설치 |
| | 지진 폭설 붕괴 | 4.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5.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6.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852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옹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옹벽)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높이 | 기타 | | | |
| 계(15개소) | | | | 1 | 1개 법령 | |
| 조형석옹벽 | 145.5m | 6.1m | 1단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5호선 (A등급) |
| | 122.2m | 6.1m | 2단 | | | |
| | 70.2m | 6.1m | 3단 | |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옹벽: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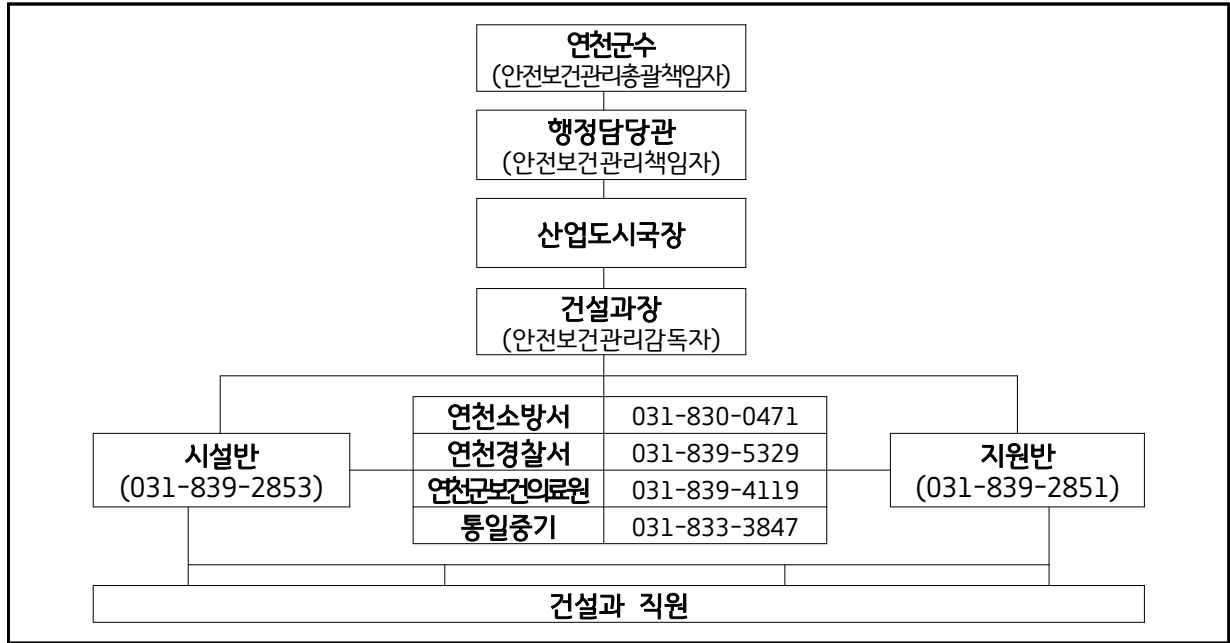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도로옹벽
 -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건설과 도로분야)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토목, 건축) | 보건관리자 |
| (구)초성교 등 15개소 | 3명 | 해당없음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A | 1 | 연 2회 | 2, 8월 |
| | | 정밀안전점검 | A | 1 | 3년 1회 | 2025년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조형석옹벽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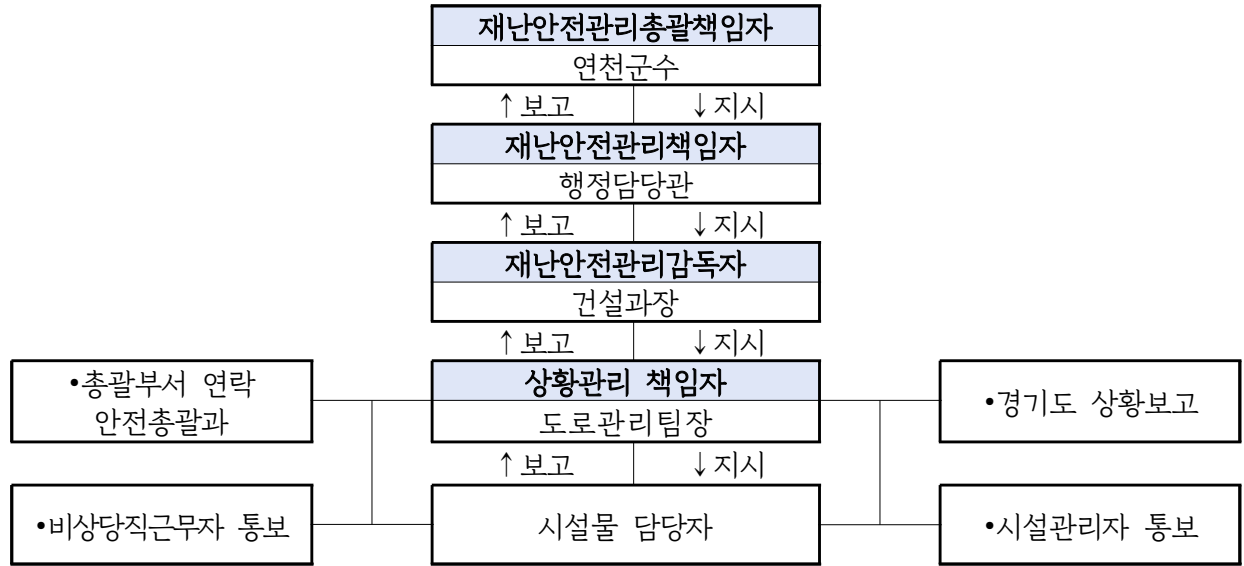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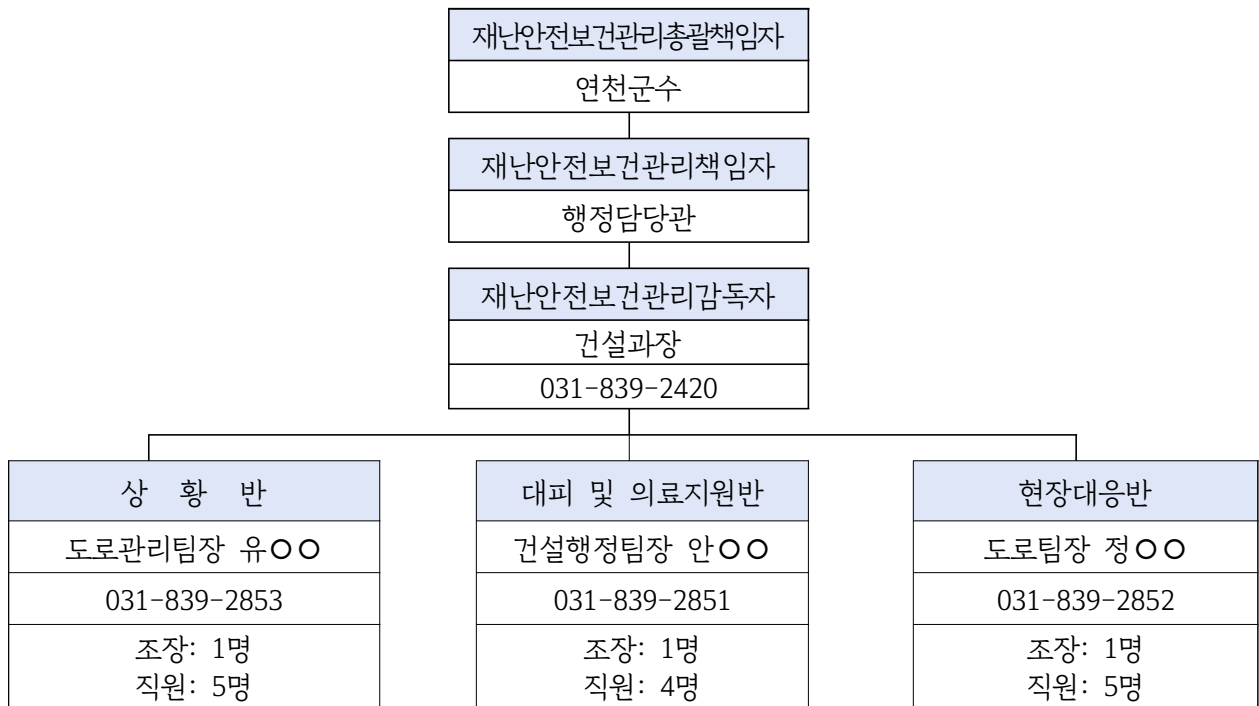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 (북부시설안전점검팀) | 031-8030-4403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전곡파출소 | 031-832-2112 | 경찰지원 |
| 통일중기 | 031-833-3847 | 응급복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24일 / 담당자 : 유○○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3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도로관리팀장 유○○)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대피 및 의료지원반 반 장 (건설행정팀장 안○○) | 대피유도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현장대응반 반 장 (도로팀장 정○○)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유OO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5.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16.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17.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18. 관련 유관 기관 신고 19.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20.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21.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853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안OO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비상대피로 확보 ※ 유도봉 소지 2. 통행 중지 및 차량 통제 지원 3.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4.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5.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장 : 031-839-2851 | | |

| 현장대응반(정OO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3.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치수판 설치 |
| | 지진 폭설 붕괴 | 7.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8.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9.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852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건설과 도로분야 제3종시설물 교량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3종시설물(도로교량)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계(32개소) | | | 1 | 1개 법령 | |
| 강내3교 | 29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지방도 371호선 (C등급) |
| 공삼교 | 34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2호선 (B등급) |
| 내산1교 | 45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3 (B등급) |
| 내산2교 | 34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지방도 376호선 (B등급) |
| 노동3교 | 3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2호선 (B등급) |
| 노동5교 | 30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2호선 (B등급) |
| 노동교 | 3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8 (B등급) |
| 논골교 | 29m | 경간형식: 파형강판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4호선 (B등급) |
| 대광2교 | 87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1호선 (C등급) |
| 대만교 | 33m | 경간형식: RCT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B등급) |
| 동막3교 | 51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3 (B등급) |
| 마전2교 | 4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1호선 (B등급) |
| 백석교 | 3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면도 101호선 (B등급) |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계(32개소) | | | 1 | 1개 법령 | |
| 백세교 | 54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2호선 (B등급) |
| 백학교 | 4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지방도 371호선 (B등급) |
| 부흥2교 | 25m | 경간형식: RCT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3 (B등급) |
| 부흥교 | 50m | 경간형식: RCT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3 (C등급) |
| 설운교 | 43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농도 301호선 (B등급) |
| 성창마을교 | 24m | 경간형식: 강관형교 | 1 | - 시설물안전법 | (C등급) |
| 수동1교 | 5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1호선 (B등급) |
| 수동교 | 36.5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면도 101호선 (B등급) |
| 신기교 | 96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B등급) |
| 아미교 | 39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4호선 (B등급) |
| 양원교 | 25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 (C등급) |
| 옥계교 | 22.1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면도 102호선 (B등급) |
| 옥골교 | 27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8호선 (C등급) |
| 와천교 | 20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국도 37호선 (C등급) |
| 은대교 | 90m | 경간형식: 프리플렉스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리도 201호선 (B등급) |
| 진천교 | 22m | 경간형식: 강I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B등급) |
| 집중교 | 24m | 경간형식: 강I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C등급) |
| 찬우물교 | 24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B등급) |
| 학곡교 | 90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군도4호선 (B등급)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건설과 도로분야 제3종시설물 도로교량: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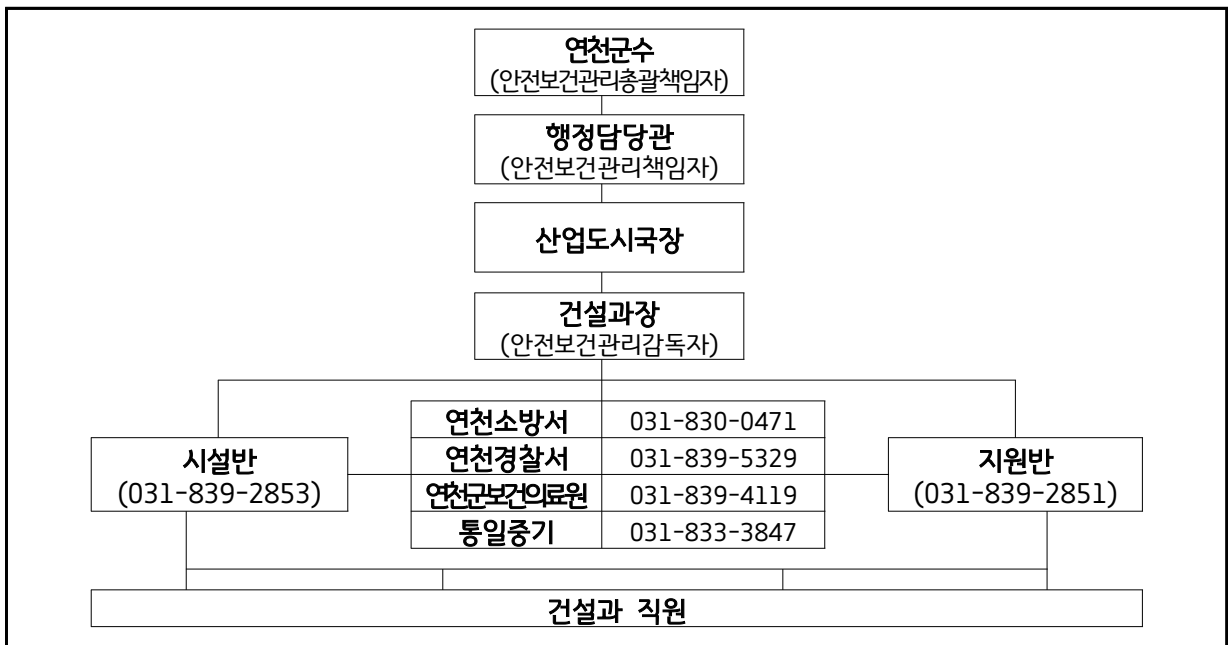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건설과 도로분야 제3종시설물 도로교량
 -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건설과 도로분야)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토목, 건축) | 보건관리자 |
| 강내3교 등 33개소 | 3명 | 해당없음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C | 33 | 연 2회 | 2, 8월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강내3교 등 33개소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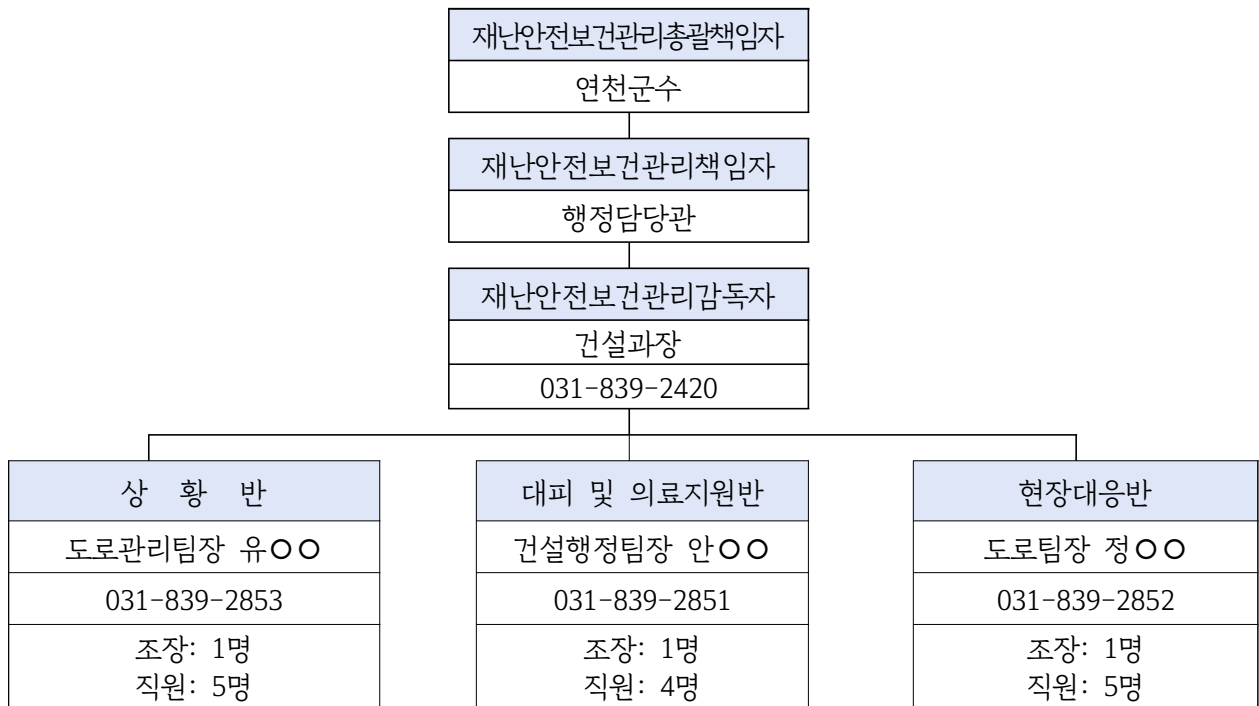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 (북부시설안전점검팀) | 031-8030-4403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전곡파출소 | 031-832-2112 | 경찰지원 |
| 통일중기 | 031-833-3847 | 응급복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24일 / 담당자 : 유○○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3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도로관리팀장 유○○)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대피 및 의료지원반 반 장 (건설행정팀장 안○○) | 대피유도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현장대응반 반 장 (도로팀장 정○○)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유00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22.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3.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24.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25. 관련 유관 기관 신고 26.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27.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28.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853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안00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비상대피로 확보 ※ 유도봉 소지 2. 통행 중지 및 차량 통제 지원 3.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4.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5.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장 : 031-839-2851 | | |

| 현장대응반(정00 외 5)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4.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
| | 지진 폭설 붕괴 | 10.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11.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12.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852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건설과 하천분야 제2종시설물 제방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제방)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계(24개소) | | | 1 | 1개 법령 | |
| 구미1제 | 792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구미2제 | 628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군남제 | 3,707m | 좌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노곡석장제 | 1,634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대전제 | 1,010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신천 (-) |
| 동이1제 | 571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동이2제 | 571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무등제 | 608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북삼1제 | 276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북삼2제 | 238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선곡제 | 975m | 좌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C등급) |
| 아미제 | 179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우정1제 | 3,819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계(24개소) | | | 1 | 1개 법령 | |
| 우정2제 | 325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원당1제 | 100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원당2제 | 724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원당3제 | 336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초성1제 | 708m | 좌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신천 (-) |
| 초성2제 | 1,273m | 좌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신천 (-) |
| 초성3제 | 1,701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신천 (-) |
| 초성제 | 957m | 좌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신천 (-) |
| 학곡1제 | 1,028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학곡2제 | 728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학곡제 | 475m | 우안 | 1 | - 시설물안전법 | 임진강 (B등급)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건설과 하천분야 제2종시설물 제방: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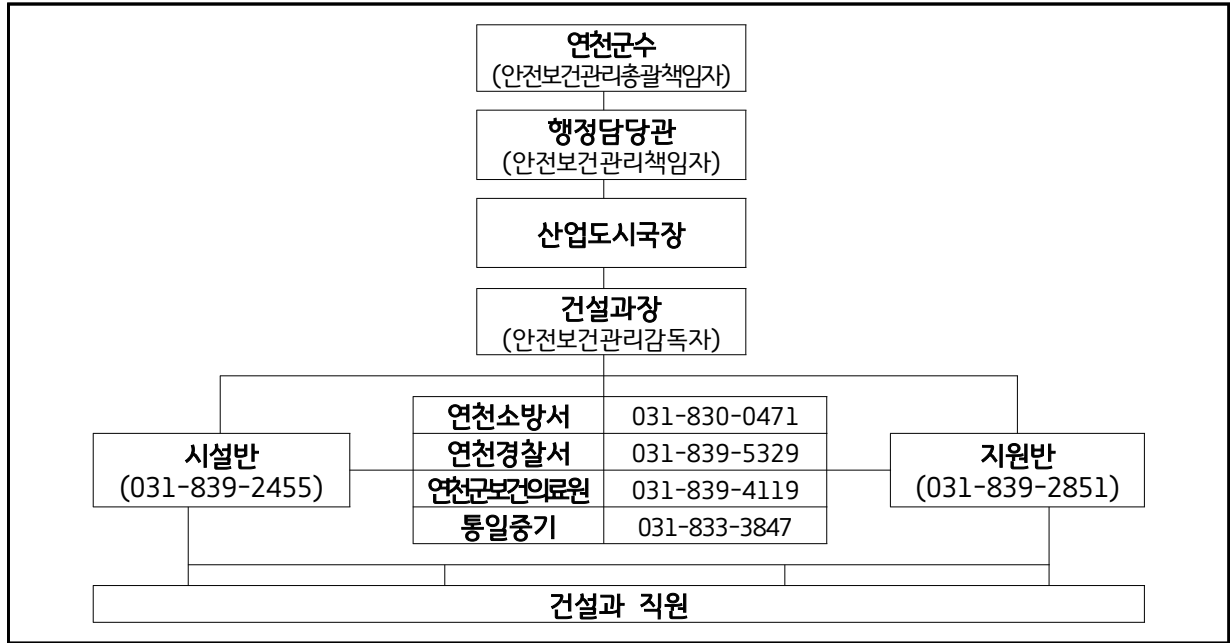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건설과 하천분야 제2종시설물 제방
 - 제2종시설물 제방(건설과 하천분야)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토목, 건축) | 보건관리자 |
| 구미1제 등 24개소 | 3명 | 해당없음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C | 24 | 연 2회 | 2, 8월 |
| | | 정밀안전점검 | B/C | 24 | 2년 1회 | 시설별 상이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구미1제 등 24개소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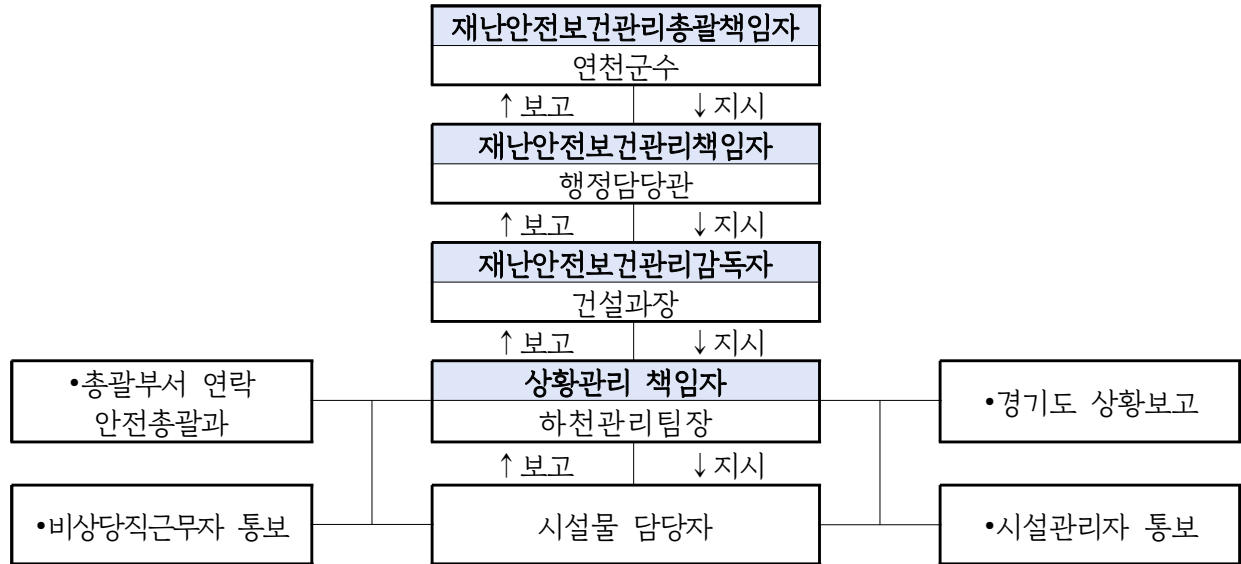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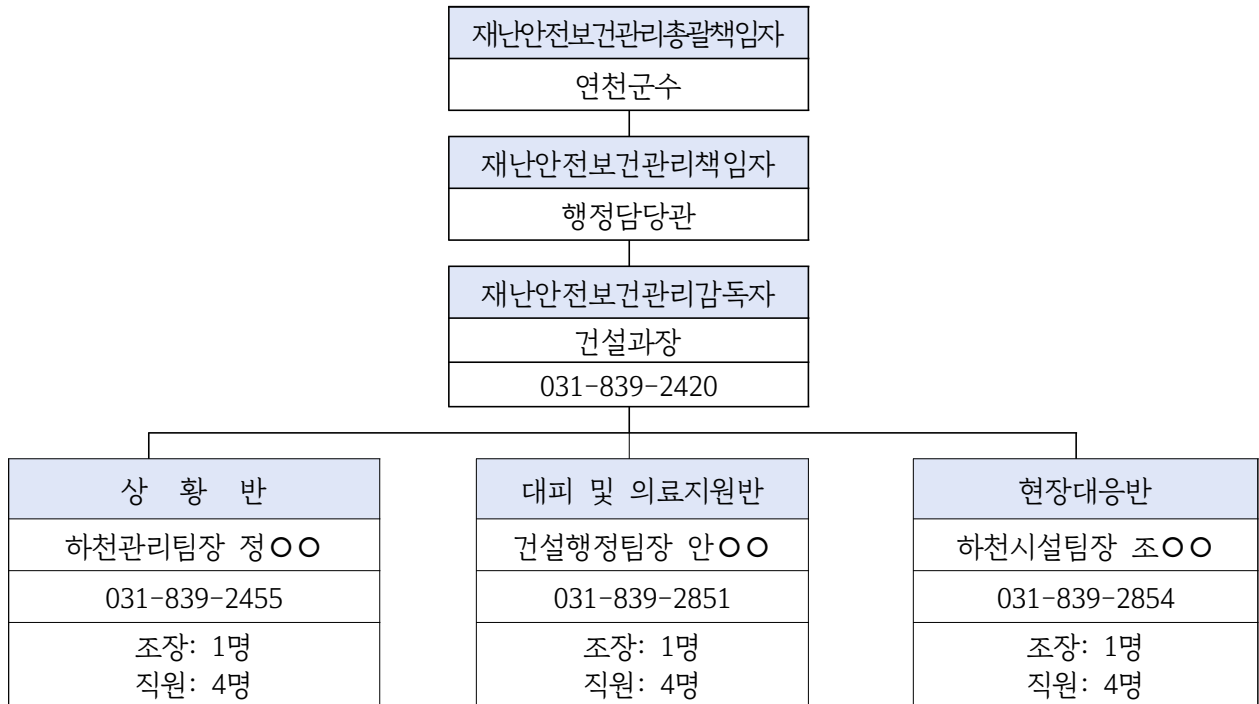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하천과 | 031-8030-3674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군남파출소 | 031-833-8222 | 경찰지원 |
| 통일중기 | 031-833-3847 | 응급복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3년 03월 27일 / 담당자 : 전○○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3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하천관리팀장 정○○)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대피 및 의료지원반 반 장 (건설행정팀장 안○○) | 대피유도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현장대응반 반 장 (하천시설팀장 조○○)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정○○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455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안○○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1. 비상대피로 확보 ※ 유도봉 소지 2. 통행 중지 및 차량 통제 지원 3.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4.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5.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장 : 031-839-2851 | | |

| 현장대응반(조○○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치수판 설치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854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건설과 하천분야 제3종시설물 교량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3종시설물(도로교량)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계(29개소) | | | 1 | 1개 법령 | |
| 강내1교 | 29.6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강내4교 | 3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강내5교 | 3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강내6교 | 28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내산5교 | 45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내산 새마을1교 | 30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노동2교 | 3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동막2교 | 75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두일교 | 4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삼거1교 | 22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삼거2교 | 21.2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석장1교 | 4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석장2교 | 4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석장교 | 4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A등급) |
| 양원2교 | 25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양원3교 | 25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양원4교 | 37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연장 | 기타 | | | |
| 계(29개소) | | | 1 | 1개 법령 | |
| 연못교 | 29.3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옥계2교 | 22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옥계3교 | 36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옥계4교 | 34.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유촌1교 | 31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유촌2교 | 50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유촌3교 | 4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유촌4교 | 42m | 경간형식: RC슬래브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절골천2교 | 24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골미교 | 28.2m | 경간형식: PC빔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차탄잠수교 | 97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C등급) |
| 마거교 | 30m | 경간형식: 라멘교 | 1 | - 시설물안전법 | 비법정 (B등급)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건설과 하천분야 제3종시설물 도로교량: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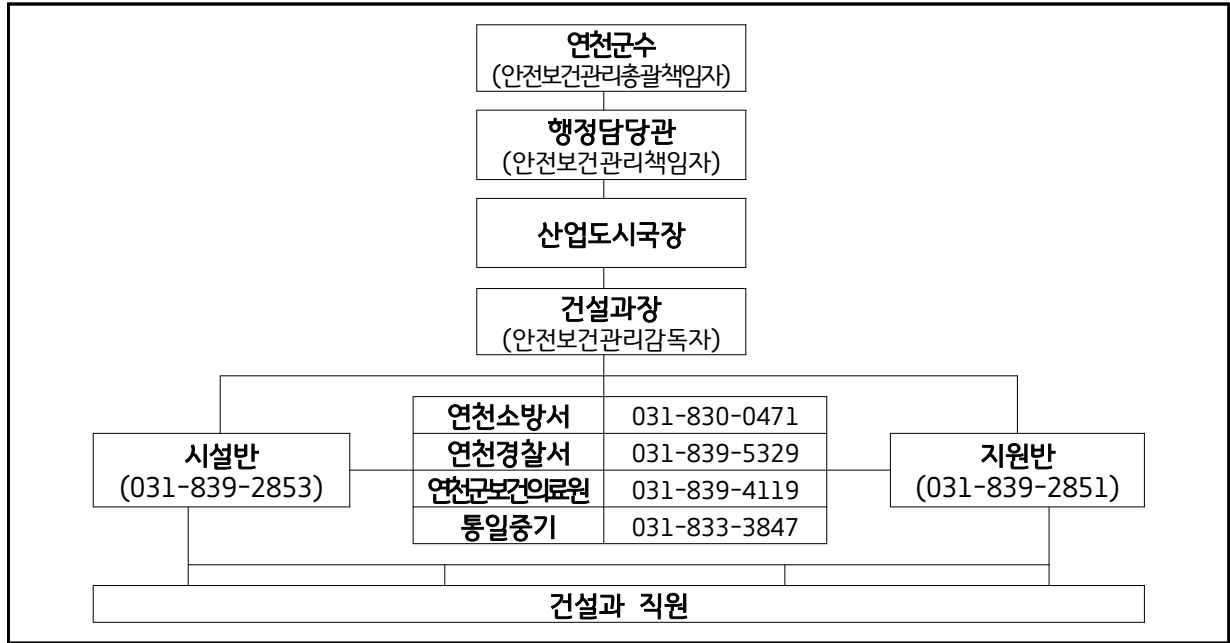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건설과 도로분야 제2종시설물 도로교량
 - 제3종시설물 도로교량(건설과 하천분야)의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토목, 건축) | 보건관리자 |
| 강내1교 등 29개소 | 3명 | 해당없음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A/B/C | 27 | 연 2회 | 2, 8월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강내1교 등 27개소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점검 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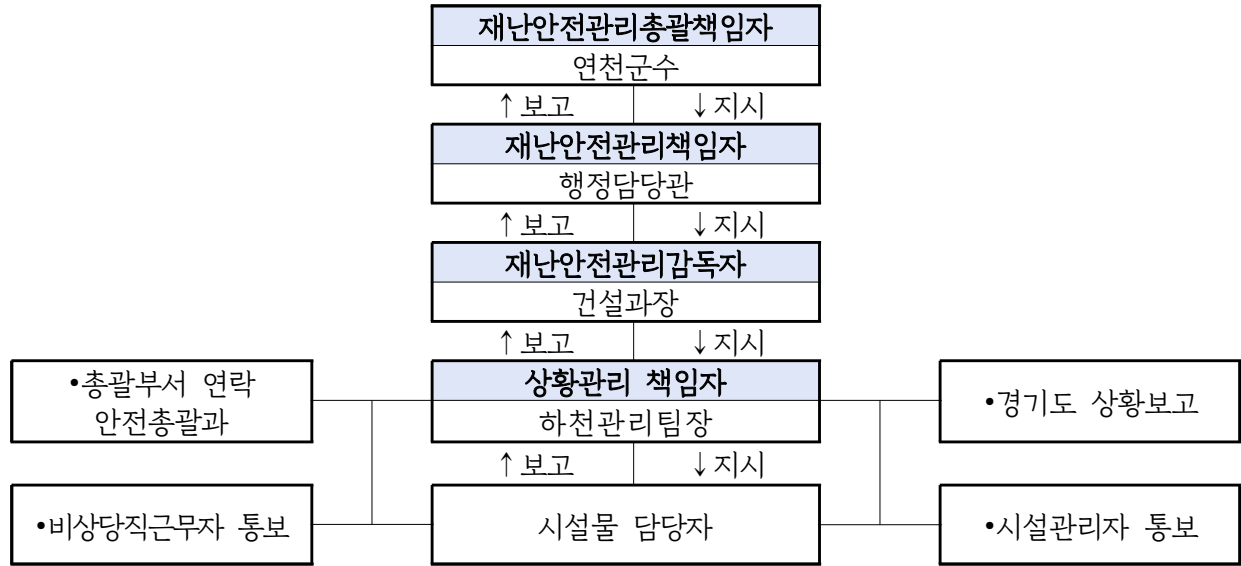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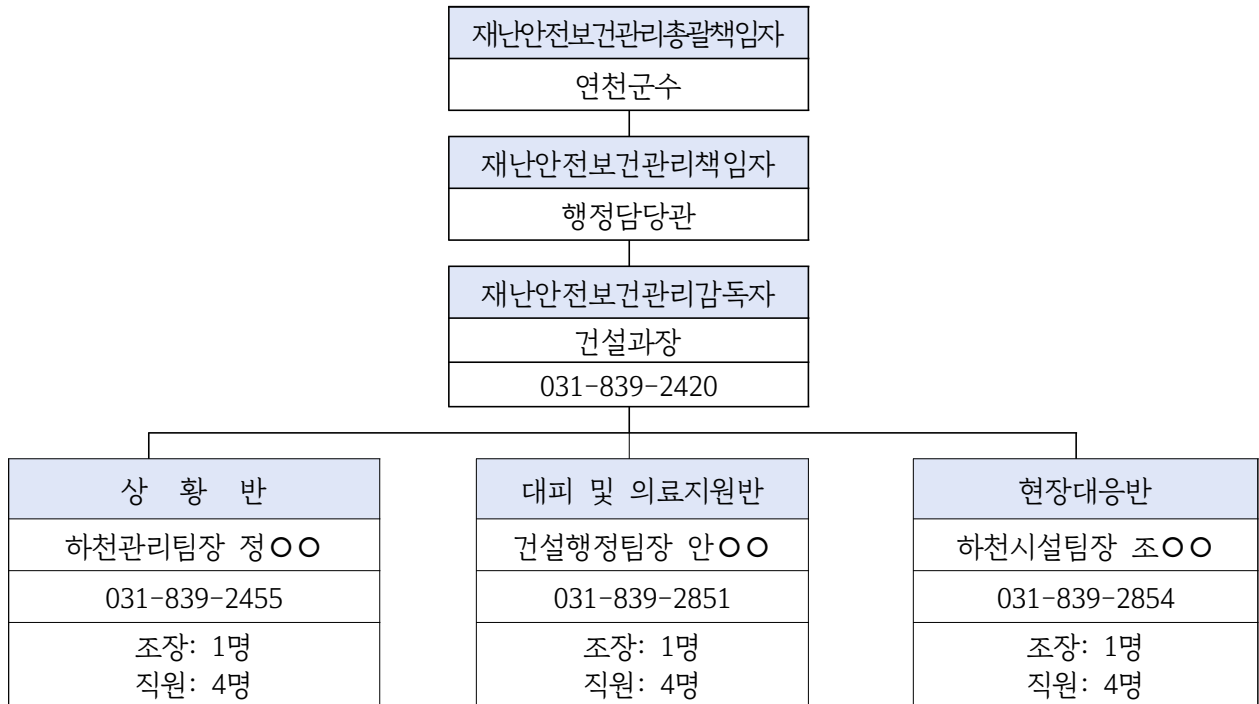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하천과 | 031-8030-3674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군남파출소 | 031-833-8222 | 경찰지원 |
| 통일중기 | 031-833-3847 | 응급복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03월 18일 / 담당자 : 선○○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3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하천관리팀장 정○○)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대피 및 의료지원반 반 장 (건설행정팀장 안○○) | 대피유도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현장대응반 반 장 (하천시설팀장 조○○)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정○○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8.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9.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10.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11. 관련 유관 기관 신고 12.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13.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14.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
| ☎ 상황반장 : 031-839-2455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안○○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비상대피로 확보 ※ 유도봉 소지 2. 통행 중지 및 차량 통제 지원 3.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4.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5.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
| ☎ 대피 및 의료지원반장 : 031-839-2851 | | |

| 현장대응반(조○○ 외 4) | | |
|--|----------------|--|
| ☎안전총괄과:031-839-2162 ☎연천소방서:031-830-0471 ☎연천경찰서:031-830-0471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2.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현장 대응 | 침수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
| | 지진 폭설 붕괴 | 4.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5.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6.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854 | |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의료지원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4 |
| 공중이용시설 | 제2종 의료시설 | 연천군보건의료원 | 1 |
| 원료·제조물 | 식품 | 연천군보건의료원(구내식당) | 1 |
| 원료·제조물 | 마약 | 연천군보건의료원(약국) | 1 |
| 원료·제조물 | 식품 | 연천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 1 |

연천군보건의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제2종시설물 (연면적 5천㎡이상의 의료시설)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6 | 9개 법령 | |
| 연천군 보건의료원 | 8,691.25 | 4층 (지상4) 높이 : 18.1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용도 : 의료시설 | 6 | -시설물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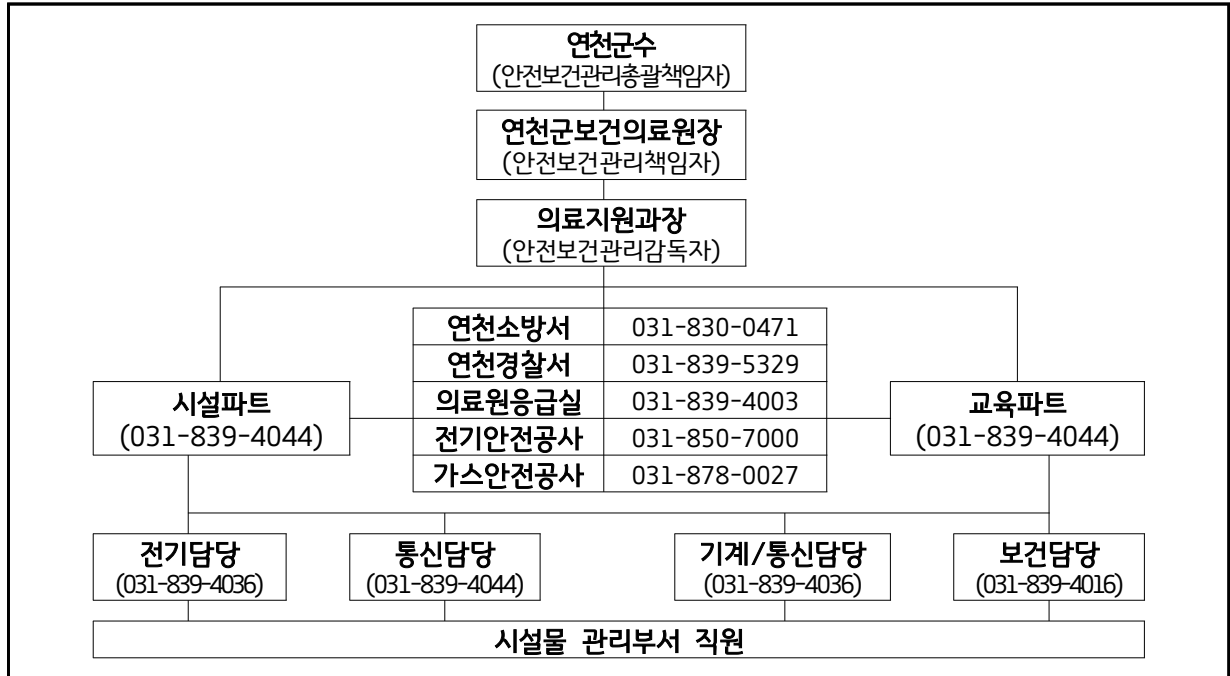
- 연천군보건의료원: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연천군보건의료원: 1999. 9. 준공 시설로 2024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작성 및 FMS 등록 완료(2024. 2.)
- 전문인력 확보 현황: 6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 | (응급, 수상)구조사 |
| 연천군보건의료원 | 5명 | 1명(의료지원팀장) | - |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3,9월 |
| 전기안전관리법 | 11조 | 정기검사 | - | 1 | 2년 1회 | 2025년 |
| 도시가스사업법 | 17조 | 정기검사 | - | 1 | 연 1회 | 7월 |
| 승강기안전관리법 | 32조 | 안전검사 | - | 2 | 연 1회 | 5월 |
| | 31조 | 자체검사 | 정상 | 2 | 월 1회 | 연중 |
| 실내공기질관리법 | 12조 | 실내공기질 측정 | - | 1 | 연 1회 | 8월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6조의2 | 특정고압가스 정기검사 | - | 1 | 연 1회 | 5월 |
| 수도법 시행규칙 | 22조의3 | 수질검사 | - | 1 | 연 2회 | 5,11월 |
| 소방시설법 | 25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 - | 1 | 연 각 1회 | 상하반기 |
| 산업안전보건법 | 125조 | 작업환경측정 | - | 1 | 연 2회 | 상하반기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연천군보건의료원 | 3/6/9/12월 초 - 3월/9월: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피드백 절차 등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 부족분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시설별 전문교육 이수: 승강기, 가스, 건축물, 전기 등 시설별 전문교육 수료
 -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교육 및 선임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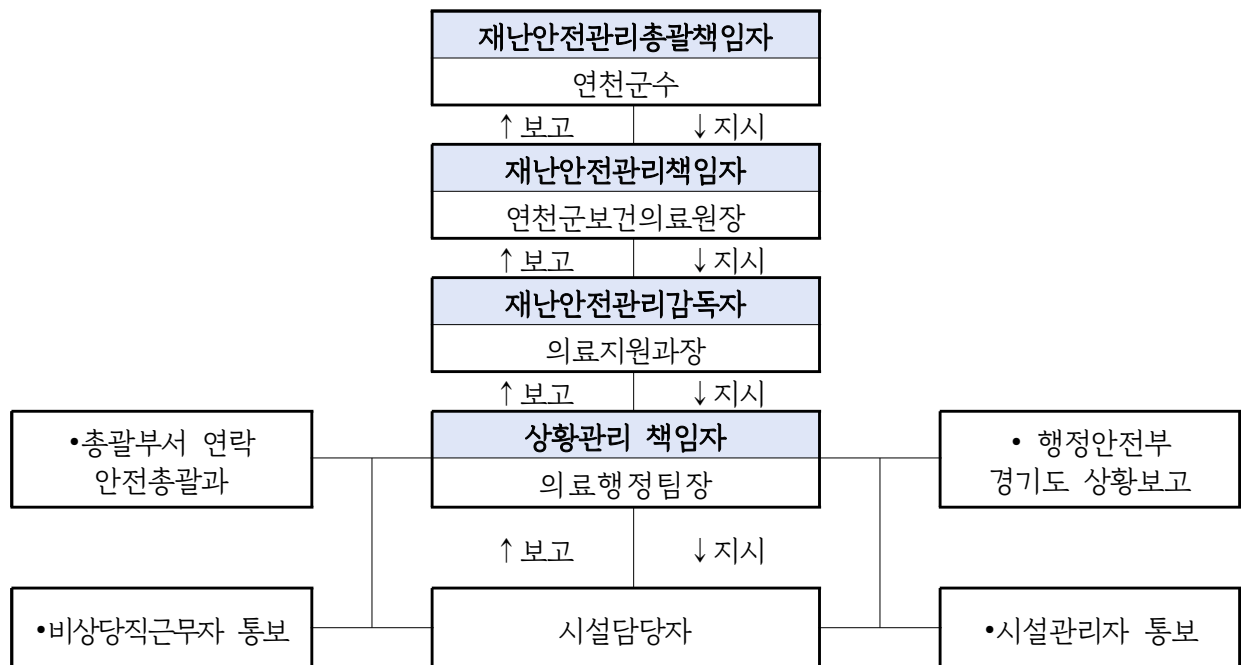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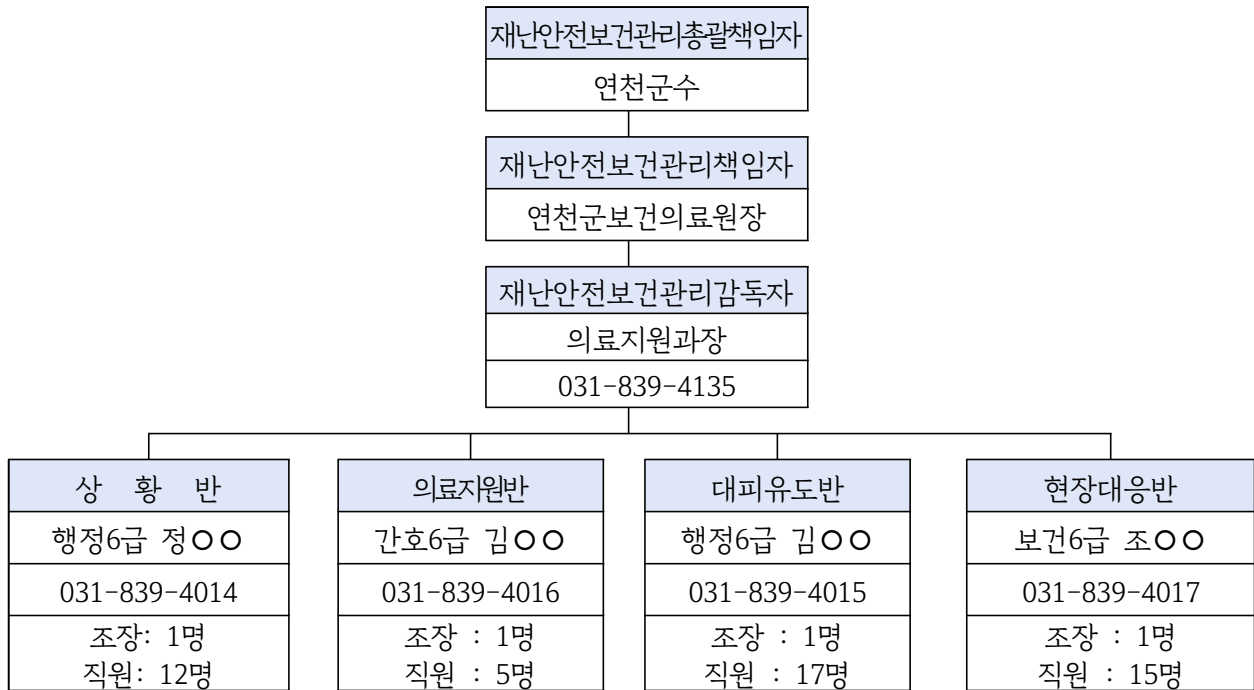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재난안전과)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가스안전공사 | 031-878-0027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승강기(한국승강기) | 031-984-6591 | 승강기 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 담당자 : 심○○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보건의료원장), 감독자(과장) 및 4개반으로 구성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상황반 반장 (행정6급 정○○)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장 (간호6급 김○○)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장 (보건6급 이○○)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장 (보건6급 조○○)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자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 |
|-----------------|---|
| <p>사고 시간 기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p>사고경위 기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연천군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식품위생법 (식품, 식첨가물, 기구 및 용기)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4 | 3개 법령 | |
| 연천군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 282 | 1층 | 철근콘크리 트 | 4 |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안전법 - 식품위생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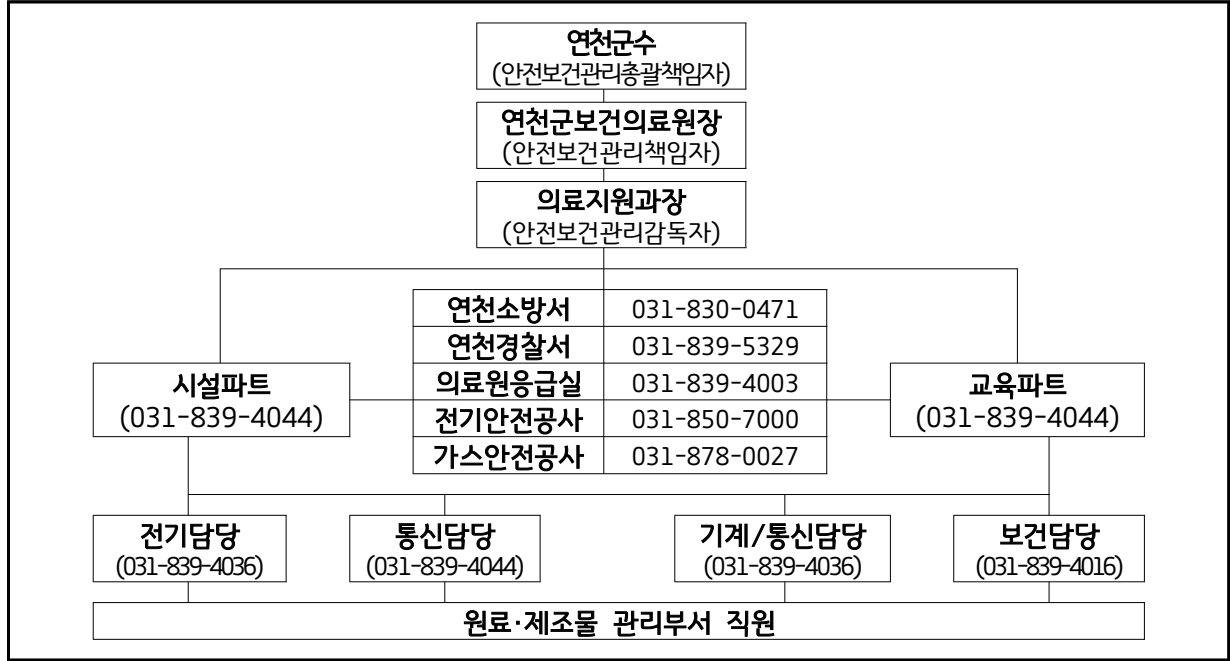
- 연천군보건의료원 구내식당: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연천군보건의료원: 1999. 9. 준공 시설로 원료제조물(의료원 구내식당)에 대한 별도 안전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6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 |
| 연천군보건의료원 | 5명 | 1명(의료지원팀장) |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3,9월 |
| 산업안전보건법 | 125조 | 작업환경측정 | - | 1 | 연 2회 | 상하반기 |

○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안전장치 등

- 유해·위험요인: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조리원 개인 위생 미흡, 원료 및 조리가공 식품 취급시 식재료 오염, 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 오염, 기타 위생 관리 (수돗물 수질, 식재료 유통기한 관리 등)
- 안전장치 목록

| 구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개인보호구 | 안면보호구, 마스크 등 | 4개 | 구내식당 조리실 | 민○○ |
| 식판 살균기 등 | 식판 자외선 소독 | 1대 | 구내식당 조리실 | 민○○ |

- 점검계획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개인 위생관리 | 매일 | 종사자 개인위생 점검 / 건강검진 | 필요없음 | 없음 |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 매일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및 유통기한 관리 등 | 필요없음 | 없음 |
| 시설 위생 관리 | 매일 | 조리기구 소독 점검표 위생관리 점검표 | 필요없음 | 없음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보고: 식중독유증상자 파악 및 의료원 즉시 신고 및 보고

○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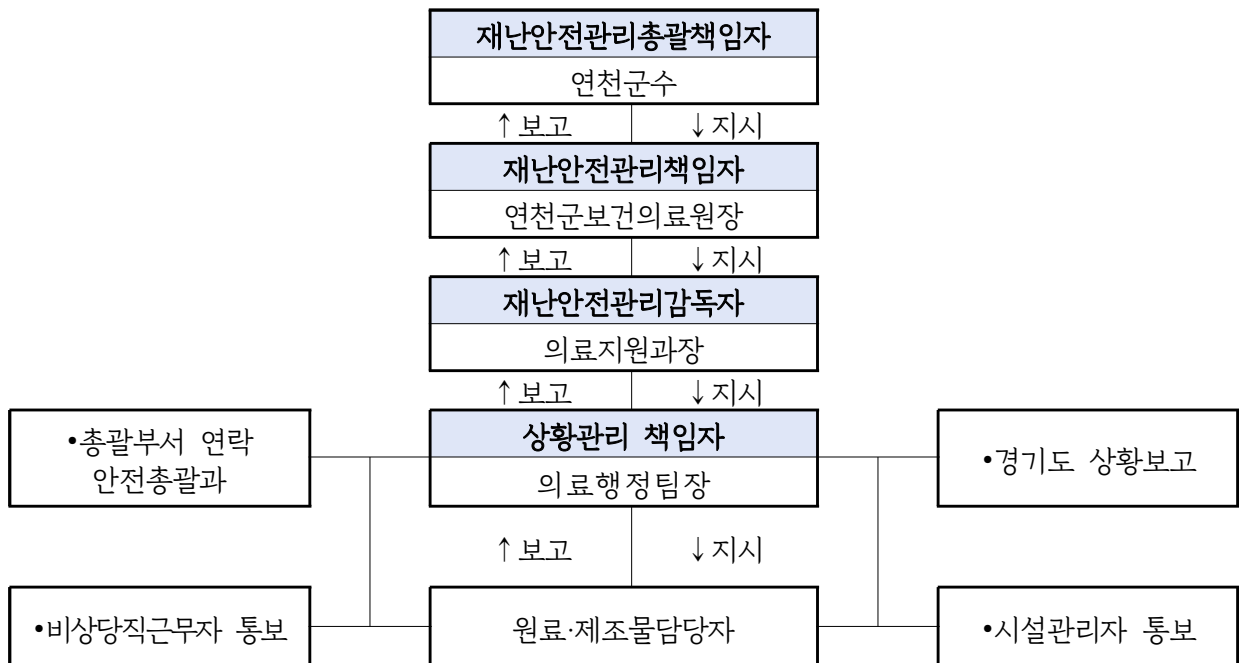
- 유증상자 확인 후 증상에 따라 진료, 응급 후송환자 구분하여 조치 및 관리
- 역학조사 및 급식 중단 및 재개 여부 결정
-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보고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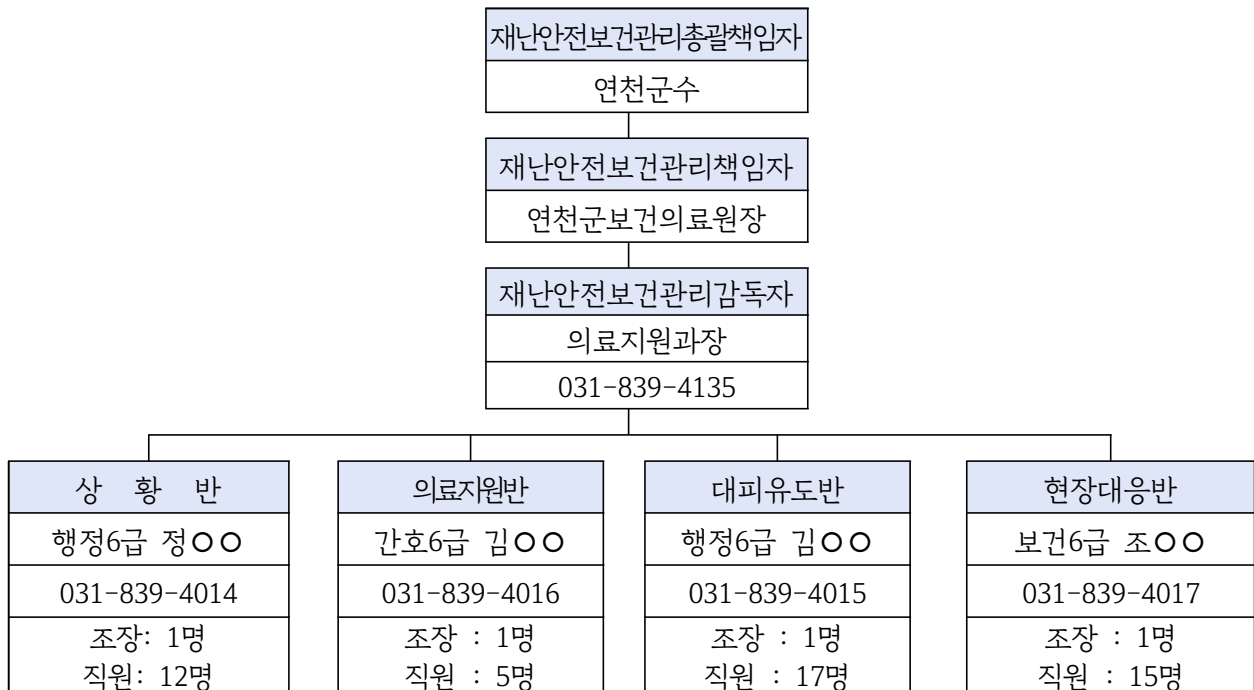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재난안전과)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가스안전공사 | 031-878-0027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승강기(한국승강기) | 031-984-6591 | 승강기 관리 |
| 의료지원과 | 031-839-4004 | 민○○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 담당자 : 민○○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보건의료원장), 감독자(과장) 및 4개반으로 구성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상황반 반장 (행정6급 정○○)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장 (간호6급 김○○)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장 (보건6급 이○○)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장 (보건6급 조○○)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정○○)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602 | | |

| 대피유도반(성명:김○○)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1. 지상1층 중앙현관 비상대피로 확보 2.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시설 전층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015 | | |

| 현장대응반(성명:조○○)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현장대응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4017 | | |

| 의료지원반(성명:김○○)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의료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4016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정○○ | 031-839-4014 |
| | 반원 | 박○○ | 031-839-4011 |
| | 반원 | 신○○ | 031-839-4031 |
| | 반원 | 최○○ | 031-839-4039 |
| | 반원 | 류○○ | 031-839-4039 |
| | 반원 | 심○○ | 031-839-4044 |
| | 반원 | 유○○ | 031-839-4036 |
| | 반원 | 윤○○ | 031-839-4036 |
| | 반원 | 박○○ | 031-839-4036 |
| ☎ 상황반장 : 031-839-4017 |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이○○ | 031-839-4135 |
| | 직원 | 민○○ | 031-839-4004 |
| 상황반 | 팀장 | 김○○ | 031-839-4015 |
| | 팀원 | 유○○ | 031-839-4038 |
| | 팀원 | 이○○ | 031-839-4138 |
| 현장대응반 | 반장 | 조○○ | 031-839-4017 |
| | 반원 | 이○○ | 031-839-4040 |
| | 반원 | 이○○ | 031-839-4046 |
| 의료지원반 | 반장 | 김○○ | 031-839-4016 |
| | 반원 | 김○○ | 031-839-4139 |
| | 반원 | |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015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를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보존식 확인 및 의료원 역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 영 절 차 | 운 영 내 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오염 식재료 폐기, 소독기기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구입
-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주방·위생 점검표 관리 철저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약국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m²,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2 | 4개 법령 | |
| 연천군 보건의료원 약국 | 31.36 | 1층 | 철근콘크리트 | 2 |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안전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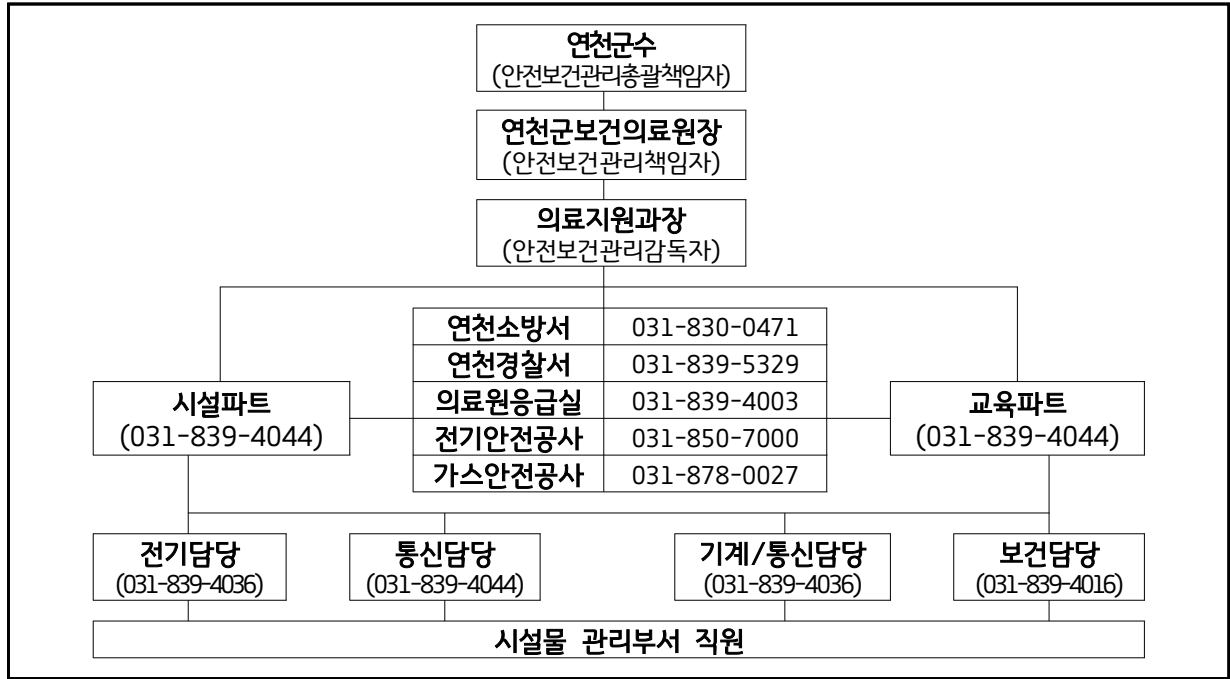
- 연천군보건의료원 약국: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연천군보건의료원 약국: 원료·제조물(마약)을 관리하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약국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6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 |
| 연천군보건의료원 | 5명 | 1명(의료지원팀장) |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3,9월 |
| 산업안전보건법 | 125조 | 작업환경측정 | - | 1 | 연 2회 | 상하반기 |

○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안전장치 등

- 유해·위험요인 목록

| 순번 | 유해물질명(의약품명) | 물질분류 | 보유량 | 비고 |
|----|-------------------|------|------|----|
| 1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12µg/h | 마약 | 40매 | |
| 2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25µg/h | 마약 | 54매 | |
| 3 |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 마약 | 10앰플 | |
| 4 | 명문모르핀염산염수화물주사 | 마약 | 25앰플 | |
| 5 | 명문염산페치딘주사 | 마약 | 39앰플 | |
| 6 | 비씨인산코데인정 | 마약 | 333정 | |
| 7 | 옥시코틴서방정10밀리그램 | 마약 | 148정 | |

- 안전장치·장비 목록

| 구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의약품 금고 | 마약류 보관 금고 | 2대 | 약국 내 | 차○○ |

- 점검계획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 매주 | 마약류 투약 및 조제 보고 | - | 해당없음 |
| 마약류 재고 및 유효기간 점검 | 매주 | 마약류 재고 및 유효기간 확인 | - | 해당없음 |

□ 중대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계획

○ 응급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가동중지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처방(투여) 즉시 중지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의약품회수 및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관리 책임자는 해당 의약품 회수 및 반납 - 회수 공문 접수 - 회수 의약품 원내 공지 - 보유량 확인 - 의약품 보고서 작성(수거한 회수의약품 총량기재 등)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김○○)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김○○)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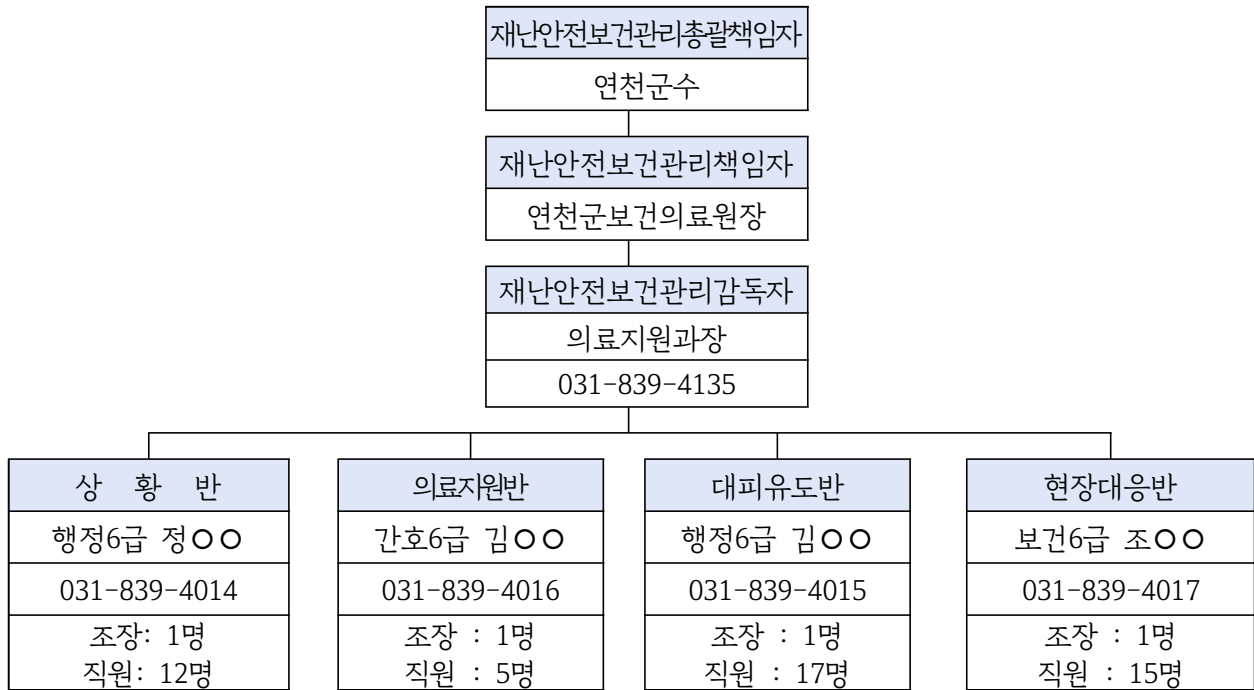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재난안전과)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군보건의료원장 | 031-839-4010 | 최○○ |
| 원료·제조물 관리부서 | 031-839-4004 | 민○○/의료지원과 |
| 연천군보건의료원 약국 | 031-839-4005 | 차○○/의료지원과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 담당자 : 민○○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보건의료원장), 감독자(과장) 및 4개반으로 구성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행정6급 정○○)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 장 (간호6급 김○○)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 장 (보건6급 이○○)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 장 (보건6급 조○○)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정○○)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4014 | | |

| 대피유도반(성명:김○○)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1. 비상대피로 확보 2.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015 | | |

| 현장대응반(성명:조○○)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4017 | | |

| 의료지원반(성명:김○○)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4016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정○○ | 031-839-4014 |
| | 반원 | 박○○ | 031-839-4011 |
| | 반원 | 신○○ | 031-839-4031 |
| | 반원 | 최○○ | 031-839-4039 |
| | 반원 | 류○○ | 031-839-4039 |
| | 반원 | 심○○ | 031-839-4044 |
| | 반원 | 유○○ | 031-839-4036 |
| | 반원 | 윤○○ | 031-839-4036 |
| | 반원 | 박○○ | 031-839-4036 |
| ☎ 상황반장 : 031-839-4017 |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이○○ | 031-839-4135 |
| | 직원 | 민○○ | 031-839-4004 |
| 상황반 | 팀장 | 김○○ | 031-839-4015 |
| | 팀원 | 유○○ | 031-839-4038 |
| | 팀원 | 이○○ | 031-839-4138 |
| 현장 대응반 | 반장 | 조○○ | 031-839-4017 |
| | 반원 | 이○○ | 031-839-4040 |
| | 반원 | 이○○ | 031-839-4046 |
| 의료 지원반 | 반장 | 김○○ | 031-839-4016 |
| | 반원 | 김○○ | 031-839-4139 |
| | 반원 | |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015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를 본인이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 |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p>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p>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식품위생법(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m²,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 | |
| 계(1개소) | | | 10 | 6개 법령 | |
|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 1,337 | 2 | 10 |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식품위생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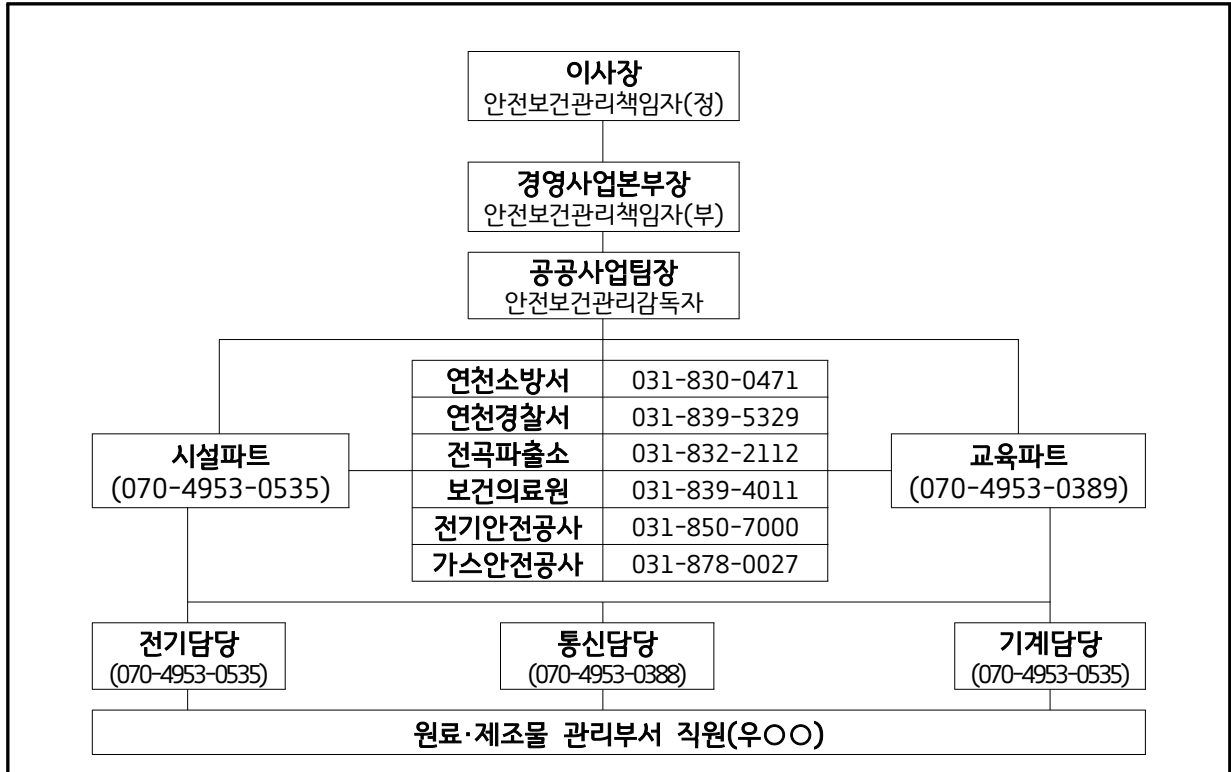
-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장례식장: 2003. 6. 준공 시설로 원료·제조물(식품)을 관리하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 | (응급)구조사 |
| 장례식장 | 1명(본사지원 2명)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안전장치

-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 구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보안경 | 작업중 안구보호 | 5 | 1층 로비 | 우○○ |
| 마스크 | 작업중 감염 예방 | 50 | 1층 로비 | 우○○ |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위험성평가 |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 현장점검 후 위험성결정, 위험성감소조치 등 | 수선유지비 확보 | 추가경정예산 또는 시설개선사업 건의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 시설물 정기점검 및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장례식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자체 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 재난안전담당자(1) 및 실무자(1)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반기 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위탁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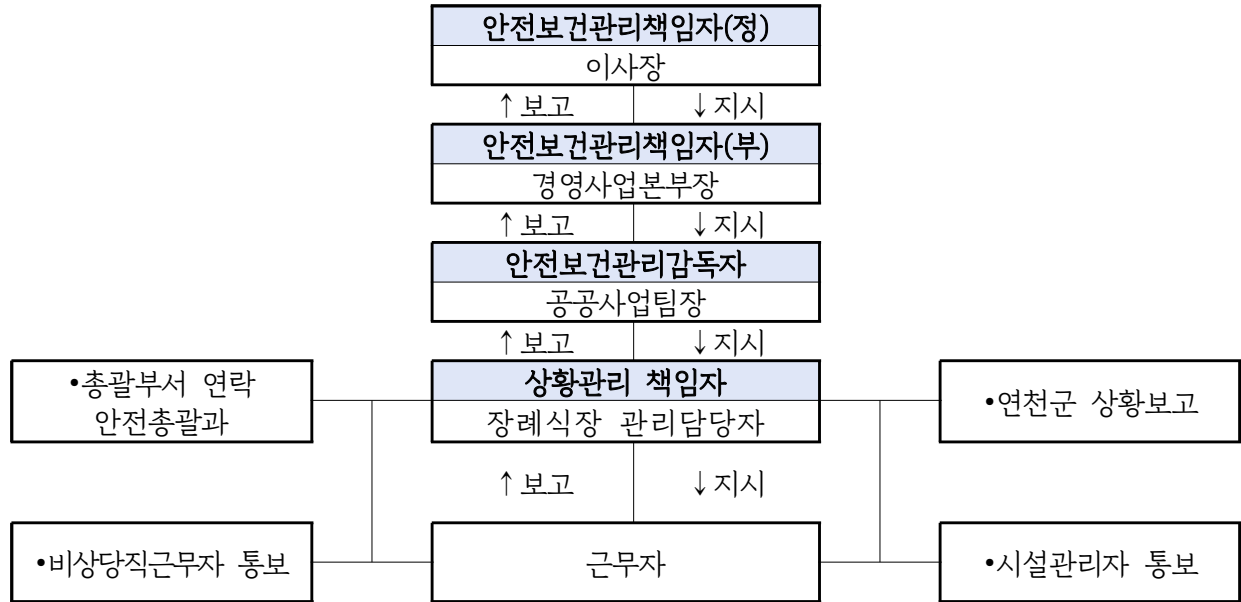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관리감독자 보고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재난안전담당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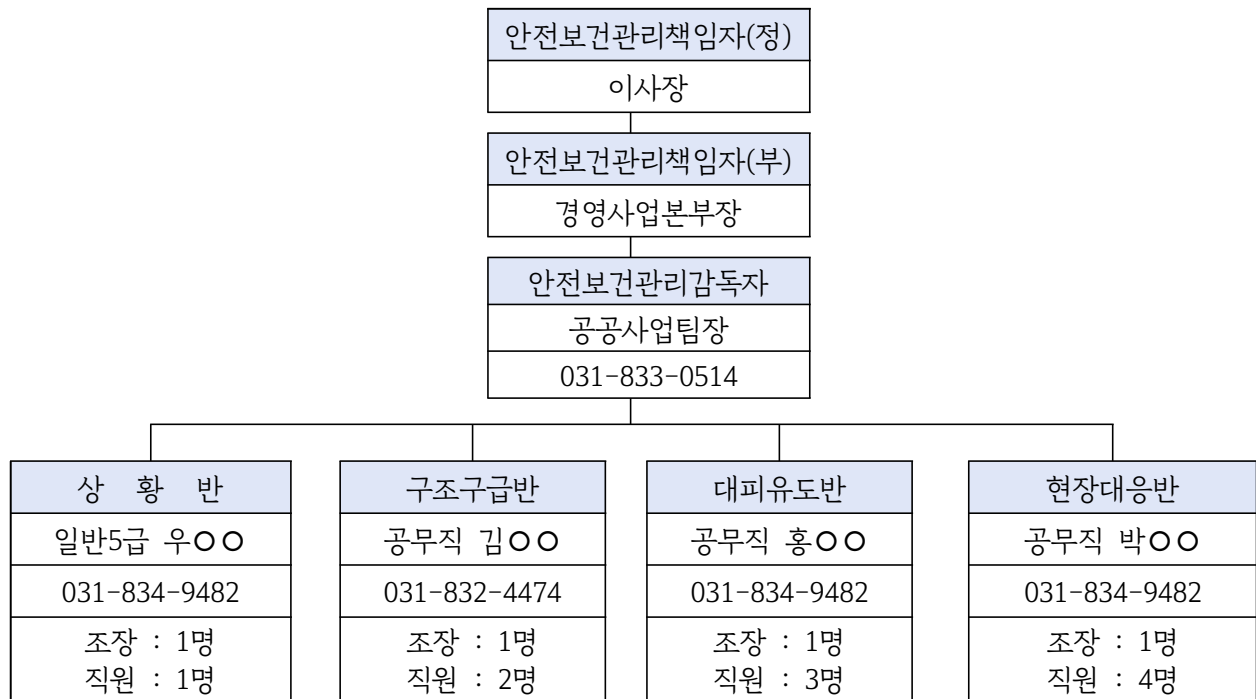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안전감사팀장,본부장,이사장)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안전감사팀장,본부장,이사장)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안전감사팀→이사장→연천군)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재난안전과)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안전총괄과)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전곡파출소 | 031-832-2112 | 경찰지원 |
| 가스안전공사 | 031-878-0027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승강기(엘지엘리베이터) | 031-853-8416 | 승강기 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4월 / 담당자: 우○○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이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정책임자(이사장), 부책임자(경영사업본부장), 감독자(공공사업팀장) 및 4개반으로 구성운영
- 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일반5급 우○○)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구조구급반 반 장 (공무직 김○○)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 장 (공무직 홍○○)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 장 (공무직 박○○)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 상 황 반 | | | 구급·구조 반 | |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임무 | 위기 유형 | 임 무 | 임무 | 위기 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전파, 신고(소방서, 경찰서 등) • 현 위치 초동대응 등 •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유도 • 화재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구급 구조 반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 대피 유도 지원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별 매뉴얼 작성 • 준동도면 확보 (소방,건축) • 관련 유관기관 신고 • 시설물 사전예방 점검 •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 상황별 안내방송 • 대피인원 및 환자인원 집계 | ☎ 031) 834-9482 (사무실) | | |
| ☎ 031) 834-9482 (사무실) | | | ☎ 031) 834-9482 (사무실) | | |
| 대피·유도반 | | | 현장대응반 |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화재,응급신고: 119 ☎ 경찰서: 112 ☎ 연천소방서: 031) 830-0450~5 ☎ 한국전력: 031) 839-3271 | | |
| 임무 | 위기 유형 | 임 무 | 임무 | 위기 유형 | 임 무 |
| 대피 유도 반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 사각지대 잔류인원 유무 확인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화재진압(확산차연 등) •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031) 834-9482 (사무실) | | | ☎ 031) 834-9482 (사무실) | | |
| ☎ 031) 834-9482 (사무실) | | | ☎ 031) 834-9482 (사무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펌프 가동 및 침수 설치 • 위험요인 차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유도반구조구조조반 지원 • 제설차재 확보 및 제설작업 •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지원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는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사고 기록표 리스트화를 통한 취약시설 중점관리

농업개발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4 |
| 원료·제조물 | 제한물질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나동 | 1 |
| 원료·제조물 | 제한물질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다동 | 1 |
| 원료·제조물 | 식품 |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 |
| 공중이용시설 | 복합건축물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가동 | 1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나동 1층, 다동(친환경농업관리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중점관리물질)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2개소) | | | | 3 | 6개 법령 | |
|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나동 1층 | 187.88 | 1층 | 철근 콘크리트 | 3 |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수도법 - 전기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
|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다동 | 111 | | | |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나동 1층 및 다동: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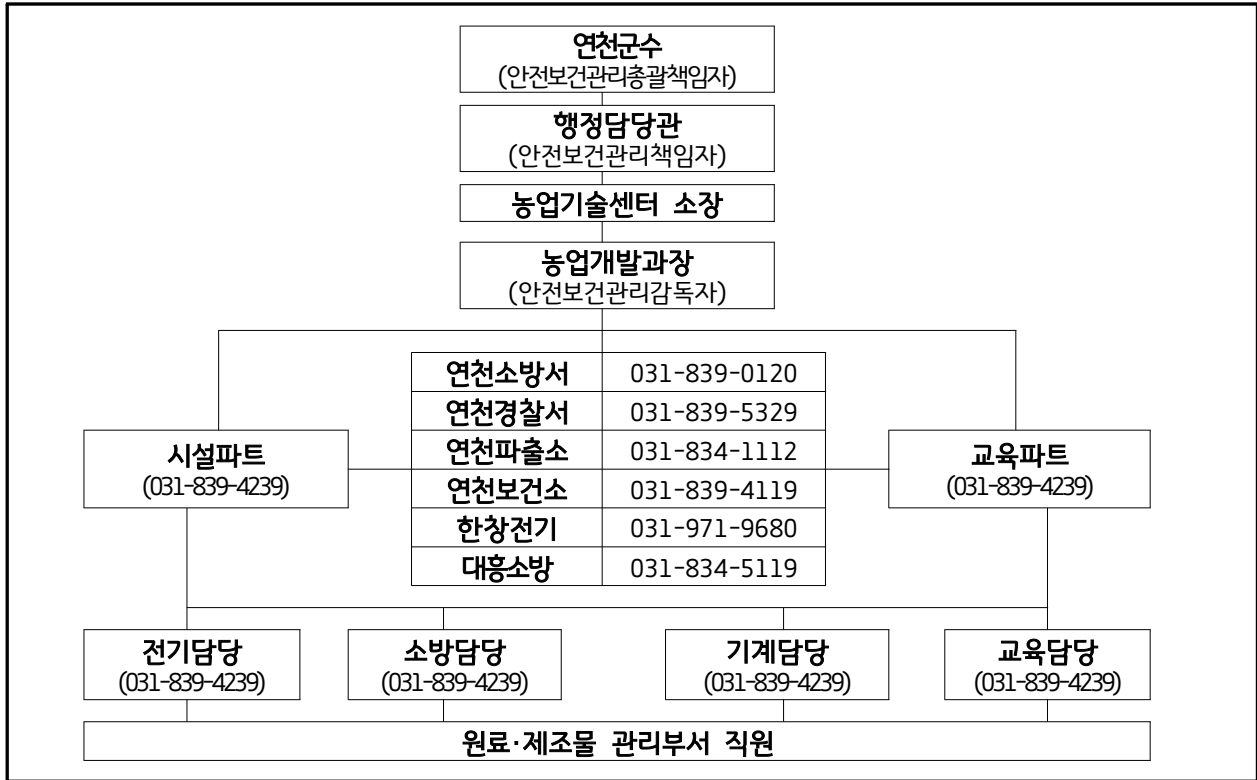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2000. 1. 준공 시설로 유해화학물질 별도 안전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1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기계, 전기, 소방) | 보건관리자 |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나동 & 다동 | 1명 | 위탁(행정담당관) |

- ※ 실험장비 및 기계에 대한 전문경력관 1명, 공무원 1명, 기간제 2명 확보
- ※ 전기, 소방시설의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시행중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조항 | 점검명 | 점검 주기 | 점검예정일 |
|---------|------|-------------|-------|-------|
| 산업안전보건법 | 125조 | 작업환경측정 | 연 2회 | 상·하반기 |
| | 130조 | 특수건강진단 | 연 1회 | 하반기 |
| | 36조 | 위험성평가 | 연 1회 | 하반기 |
| 폐기물관리법 | 13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연 1회 | 하반기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안전장치

- 유해·위험요인 목록

| 순번 | 유해화학물질명 | 물질분류 | 보유량 | 월간사용량 |
|----|----------------------|----------------------|-------|--------|
| 1 | Sulfuric acid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중점관리물질 | 6kg | 미사용 |
| 2 | Nitric acid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3L | 1L |
| 3 | Hydrochloric acid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6L | 0.1L |
| 4 | Formic acid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50mL | 1mL |
| 5 | Boric acid | 사고대비물질, 중점관리물질 | 3kg | 0.1kg |
| 6 | Acetic acid | 유독물질 | 6L | 0.1L |
| 7 | Methyl alcohol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8L | 1L |
| 8 | Acetonitrile | 유독물질 | 12L | 1L |
| 9 | Acetone | - | 4L | 0.1L |
| 10 | Sodium Hydroxide | 유독물질 | 1kg | 0.01kg |
| 11 | Ammonia solution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3L | 미사용 |
| 12 | Potassium dichromate | 유독물질, 제한물질, 중점관리물질 | 1.5kg | 미사용 |
| 13 | 2-Propanol | - | 7L | 0.01L |

-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구역

| 장비목록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흡후드 | 산, 가스, 악취 발생 실험시 | 3 | 농업기술센터 나동 | 박○○ |
| 암후드 | 산, 가스, 악취 발생 실험시 | 16 | 농업기술센터 나동, 다동 | 박○○ |
| 개인보호구 | 안면보호구, 안전장갑, 마스크 등 | 4 | 농업기술센터 다동 | 박○○ |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분기별 1회)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 분기1회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 | - |
|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화재안전컨설팅 | 정기점검: 연1회 | 2024년 2월 실시 완료 | - | -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 안전장비 정기점검 및 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교육 이수

| 교육명 | 교육수료 (예정)일 | 수료(예정)자 | 비고 |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2024. 10. 30. | 박○○ 전○○ | 년 1회 2시간 |

-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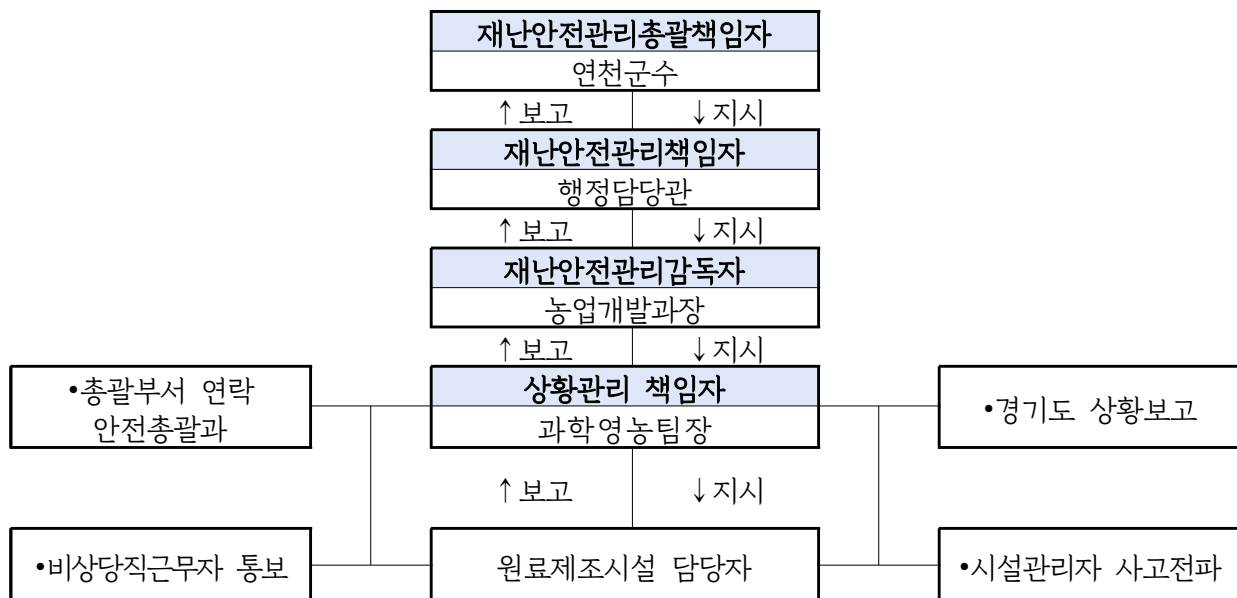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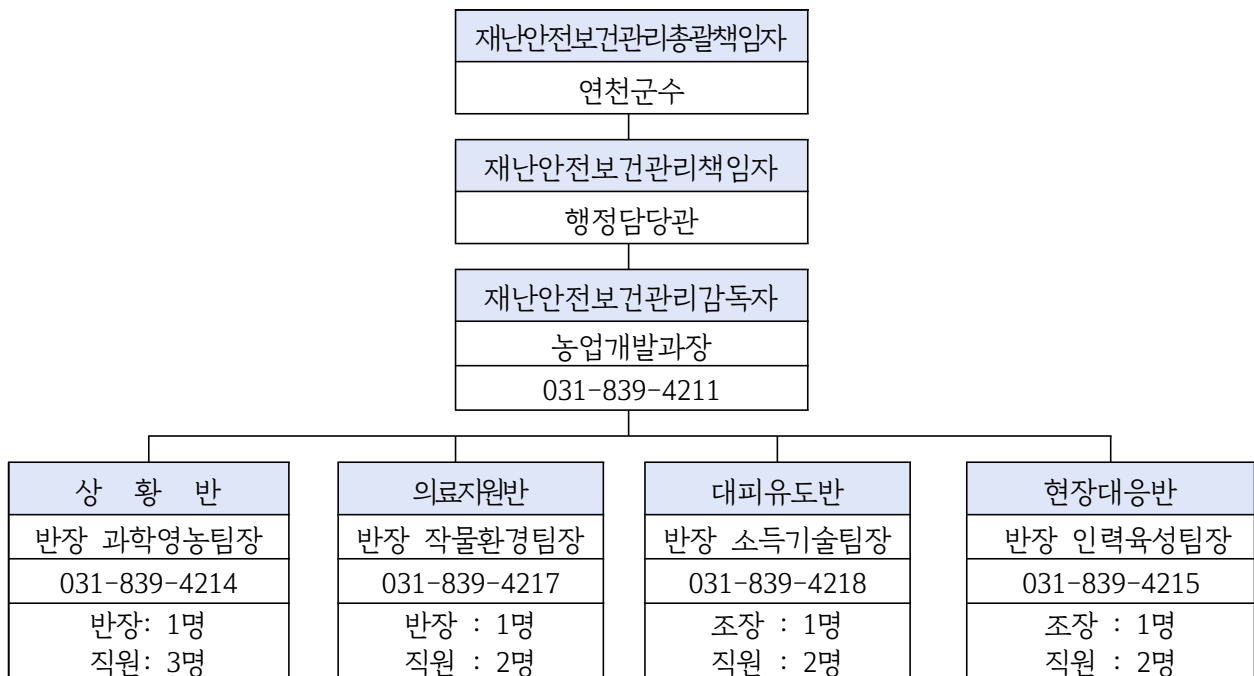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119 | 긴급출동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파출소 | 031-834-1112 | 경찰지원 |
| 대륜이엔에스(가스) | 031-873-8000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대흥소방 | 031-834-5119 | 소방시설관리 |
| 한창전기 | 031-971-9680 | 전기시설관리 |
| 연천군 보건의료원 | 031-839-4119 | 처지 및 치료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7일 / 담당자: 박○○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시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농업개발과장) 및 4개 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황반 반장 (과학영농팀장 배○○)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장 (작물환경팀장 한○○)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장 (소득기술팀장 이○○)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장 (인력육성팀장 이○○)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배○○)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4214 | | |

| 대피유도반(성명:한○○)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1. 지상 2층과 지상 3층 피난계단 비상대피로 확보 2. 각종 중앙계단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를 통한 피난계단으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지상 3층 교육장 및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후 대피유도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 | |

| 현장대응반(성명:홍○○)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4218 | | |

| 의료지원반(성명:임○○)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4215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배○○ | 031-839-4214 |
| | 반원 | 박○○ | 031-839-4239 |
| | 반원 | 조○○ | 031-839-4238 |
| | 반원 | 노○○ | 031-839-4259 |
| | 반원 | | |
| | 반원 | | |
| | 반원 | | |
| | 반원 | | |
| | 반원 | | |
| ☎ 상황반장 : 031-839-4214 |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이○○ | 031-839-4211 |
| | 직원 | 박○○ | 031-839-4257 |
| 상황반 | 팀장 | 배○○ | 031-839-4214 |
| | 팀원 | 박○○ | 031-839-4239 |
| | 팀원 | 조○○ | 031-839-4238 |
| 현장 대응반 | 팀원 | 노○○ | 031-839-4259 |
| | 반장 | 홍○○ | 031-839-4218 |
| | 반원 | 황○○ | 031-839-4233 |
| 의료 지원반 | 반원 | 홍○○ | 031-839-4253 |
| | 반장 | 임○○ | 031-839-4215 |
| | 반원 | 박○○ | 031-839-4243 |
| | 반원 | 홍○○ | 031-839-4242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를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 절차 | 운영 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식품위생법(식품)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4 | 6개 법령 | |
| 연천군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 493.03 | 지상1층 | 구조: 샌드위치판넬 용도: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4 | -시설물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23. 7. 6. 2도 화상 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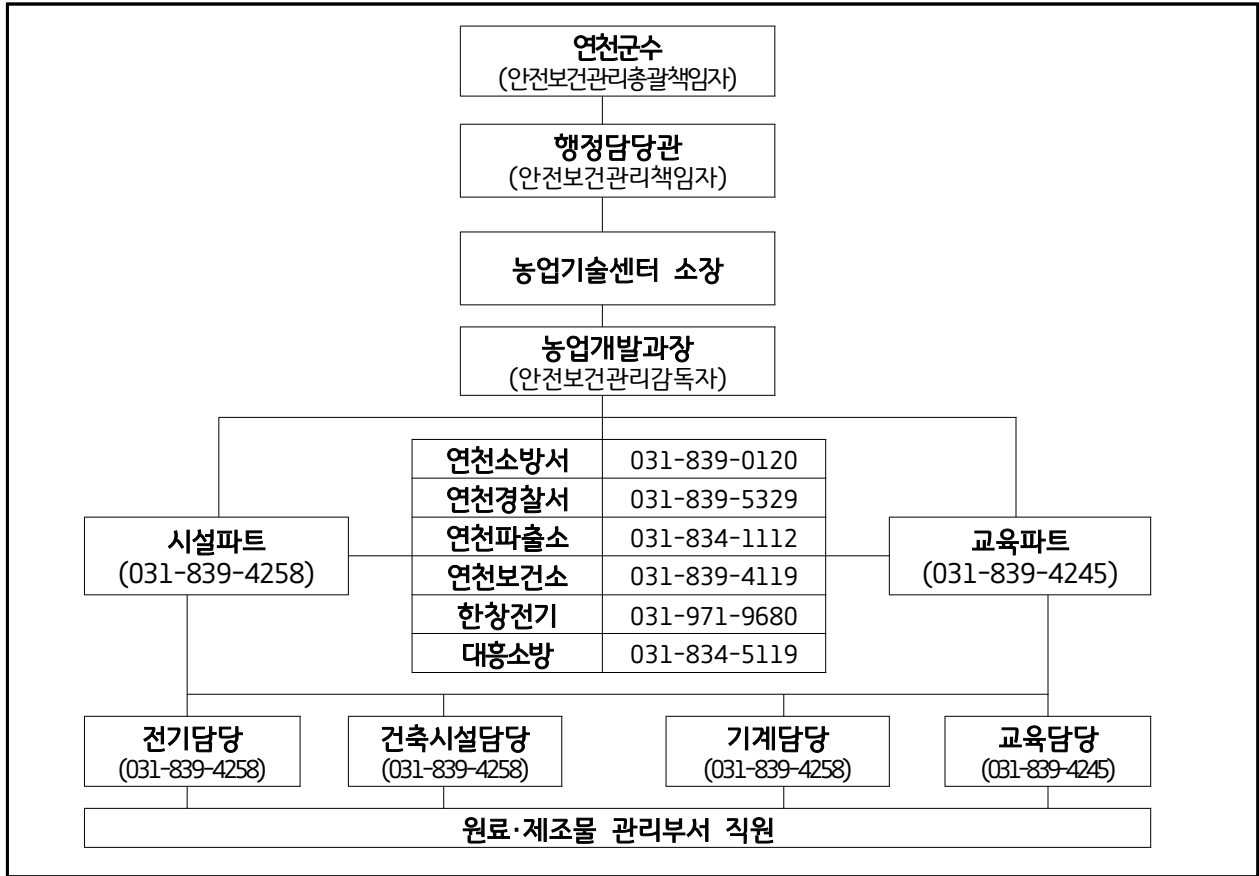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19. 10. 신규 준공 시설로 FMS 등록대상 아님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기계, 전기, 가스) | 보건관리자 |
| 연천군농산물 종합가공센터 | 1명 | 2명 |

- ※ 시설(전기,가스 기능사) 1명, 보건관리자(식품기사,위생사) 2명 확보
- ※ 전기, 수도, 오수무인경비에 대한 전문업체 용역 시행 중

○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안전장치

-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 해당없음
-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 구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보안경 | 분쇄 작업 시 안구보호 | 10 | 소모품 창고 | 이○○ |
| 방진 마스크 | 분쇄 작업 시 호흡기보호 | 100 | 소모품 창고 | 이○○ |
| 귀마개 | 분쇄 작업 시 청력보호 | 100 | 소모품 창고 | 이○○ |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지붕누수로 인한 작업환경 위험 | 보수공사 진행예정(4월) | 보수공사 진행 | 확보 | - |
| 노후화로 인한 바닥 미끄럼 위험 | 보수공사 진행예정(4월) | 보수공사 진행 | 확보 | - |
| 압력용기 | 점검표작성 (매월) | 점검표 작성 및 수시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확보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 안전장비 정기점검 및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화학물질유출사고훈련 등 실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인명(응급)구조 전문교육 자격 취득,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교육 및 선임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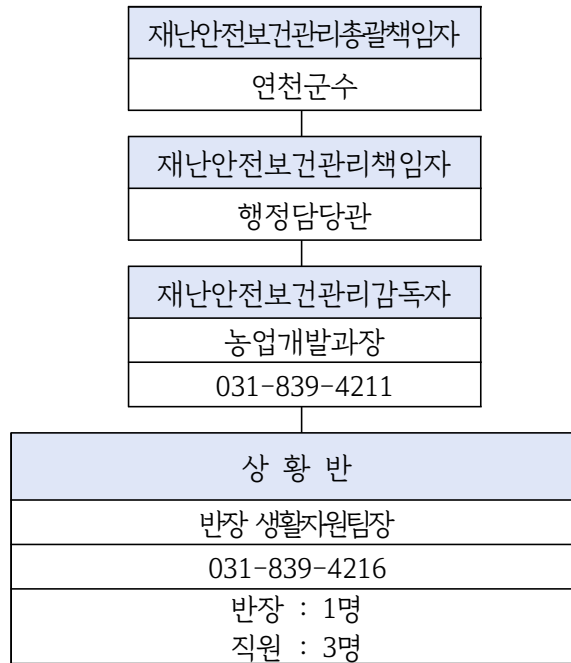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파출소 | 031-834-1112 | 경찰지원 |
| 대륜이엔에스(가스) | 031-873-8000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한창전기 | 031-971-9680 | 전기시설관리 |
| 대흥소방 | 031-834-5119 | 소방시설관리 |
| 연천군 보건의료원 | 031-839-4119 | 처치 및 치료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03월 11일 / 담당자 : 이○○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1개반으로 구성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생활지원팀장 김○○)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응급처치 구조 대피유도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뒷면)

| 상황반(성명:김○○)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8. 대피로확보, 잔류인원 대피유도 9. 부상자 응급처치 및 후송, 가족연락 10. 초기화재진압, 위험요인 차단등 |
| ☎ 상황반장 : 031-839-4216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이○○ | 031-839-4211 |
| | 직원 | 박○○ | 031-839-4257 |
| 상황반 | 팀장 | 김○○ | 031-839-4216 |
| | 팀원 | 박○○ | 031-839-4245 |
| | 팀원 | 이○○ | 031-839-4258 |
| | 팀원 | 문○○ | 031-839-4264 |
| ☎ 상황반장 : 031-839-4216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는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가동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제3종시설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1 | 7개 법령 | |
|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가동 | 2,466 | 3층 (지하1/지상3) 높이 : 12.9m | 구조: 철근 콘크리트 용도: 업무 및 제2종 근생 | 3층 (지하1/지상3) 높이 : 12.9m | -시설물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수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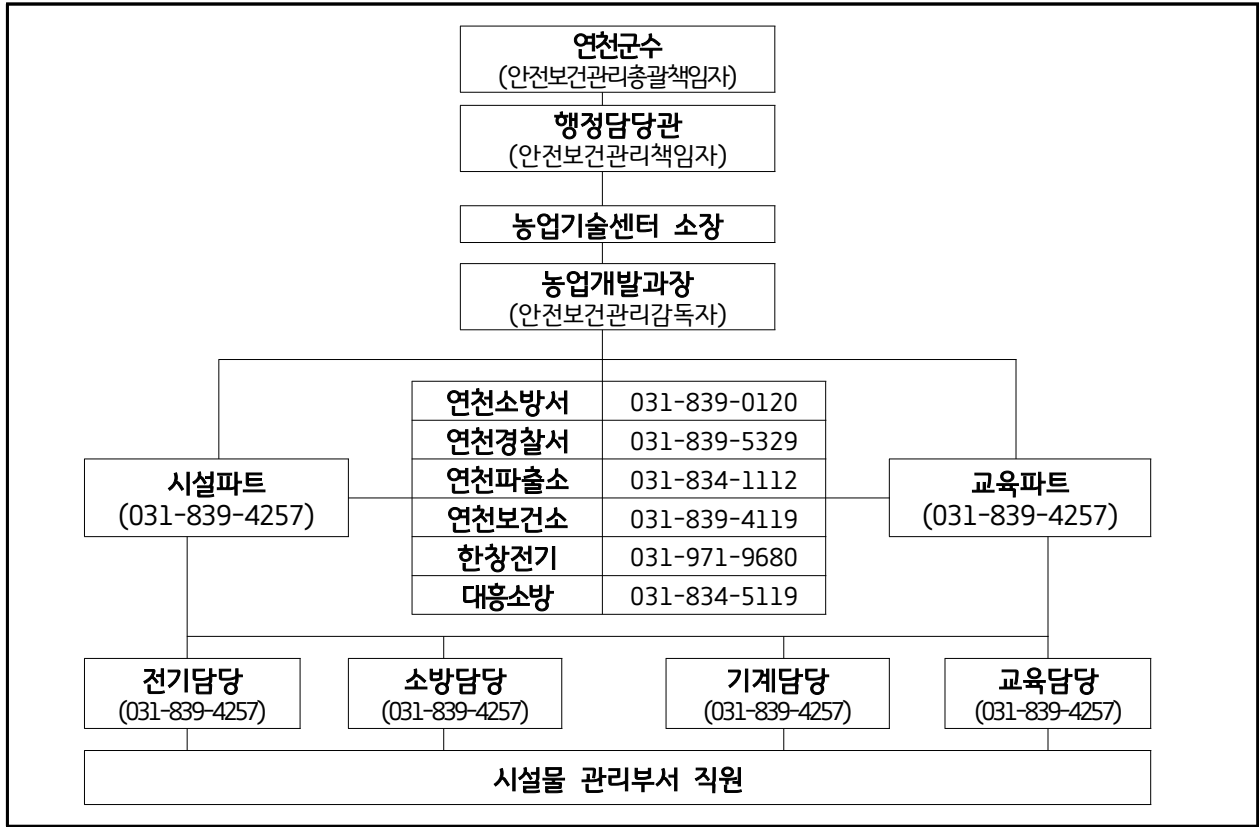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1993.04. 준공 시설로 2024. 2.까지 시설물 유지
 - 2024. 2.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 작성 후 FMS 등록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1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건축, 전기, 소방, 수도) | |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 1명(전문인력 1명) | |

- ※ 개별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인력(공업직 공무원 1명) 확보
- ※ 건축, 전기, 소방시설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용역 시행 중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2,9월 |
| 전기안전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 11조 | 정기검사 | - | 1 | 3년 1회 | 2024년 |
| | 31조 | 안전점검대행 | 정상 | 1 | 월 2회 | 연중 |
| 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 17조 | 정기검사 | 정상 | 1 | 연 1회 | 3월 |
| | 별표7 | 정압기 분해점검 | - | 1 | 3년 1회 / 4년 1회 | 하반기 |
| 수도법 (동법 시행규칙) | 33조 | 저수조 청소 | 정상 | 1 | 연 2회 | 상반기 |
| | 22조의3 | 수질검사 | 정상 | - | 연 1회 | 12월 |
| 소방시설법 | 25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 정상 | 1 | 연 각 1회 | 상반기 |
| 산업안전보건법 | 36조 | 위험성평가 | - | 1 | 연 1회 | 하반기 |

* 시설물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추가/삭제 가능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 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콘크리트옹벽 파손 및 전도 우려 | 수시점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1회 | 1분기 수시점검 및 상반기 정기점검 2월 완료 | 청사유지관리비 예산확보 | - |
|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화재안전컨설팅 | 정기점검: 연1회 | 2월 | 미확보 (옥상난간 설치 시 예산 필요) | 안전표지 부착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시설별 전문교육 이수: 건축물, 전기, 소방, 가스 등 시설별 전문교육 수료
-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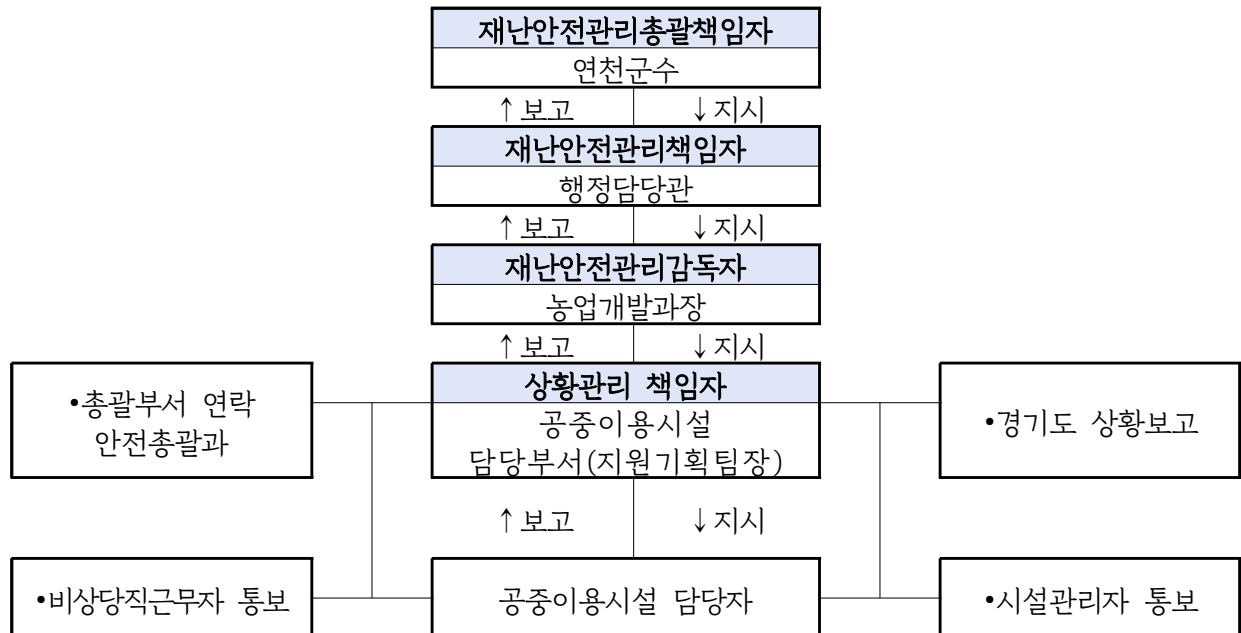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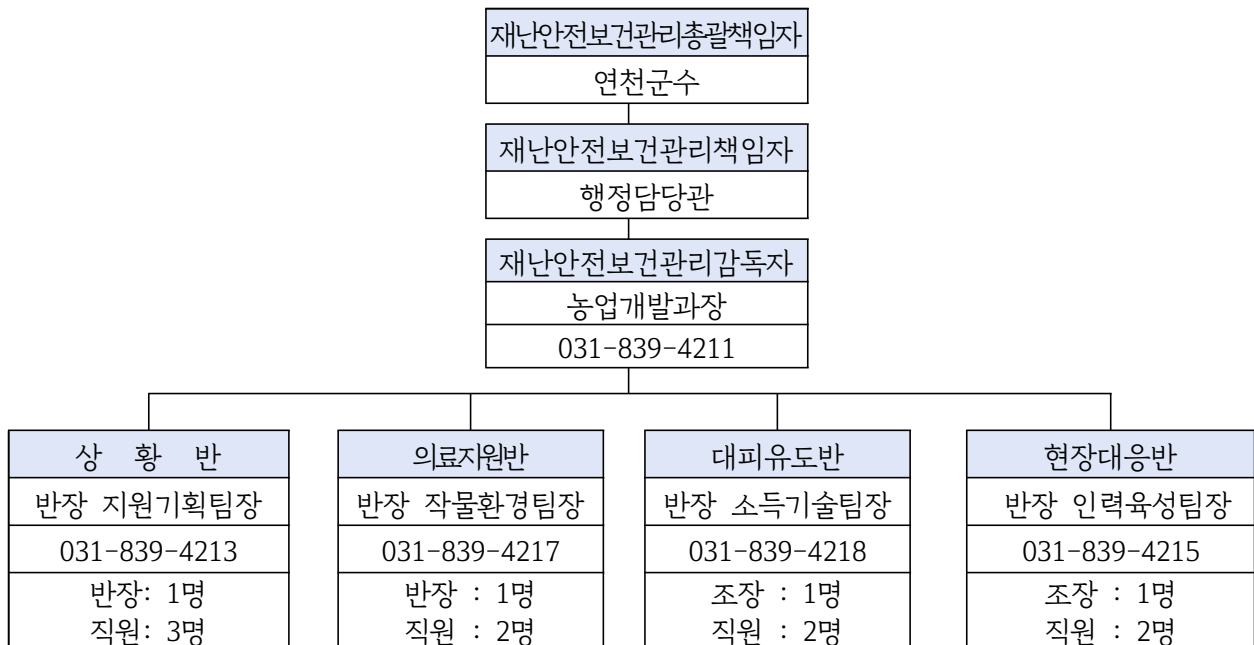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119 | 긴급출동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파출소 | 031-834-1112 | 경찰지원 |
| 대륜이엔에스(가스) | 1566-6116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839-3234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대흥소방 | 031-834-5119 | 소방시설관리 |
| 한창전기 | 031-826-2198 | 전기시설관리 |
| 연천군 보건의료원 | 031-839-4119 | 처지 및 치료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7일 / 담당자 : 박○○

*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추가/삭제 가능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4개반으로 구성 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상황반 반장 (지원기획팀장 김○○)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장 (작물환경팀장 한○○)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장 (소득기술팀장 이○○)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장 (인력육성팀장 이○○)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김○○)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4213 | | |

| 대피유도반(성명:한○○)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 2층과 지상 3층 피난계단 비상대피로 확보 2. 각층 중앙계단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를 통한 피난계단으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지상 3층 교육장 및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후 대피유도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 | |

| 현장대응반(성명:홍○○)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현장 대응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4218 | | |

| 의료지원반(성명:임○○)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재산안전 상황실,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 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4215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김○○ | 031-839-4213 |
| | 반원 | 박○○ | 031-839-4232 |
| | 반원 | 이○○ | 031-839-4231 |
| | 반원 | 박○○ | 031-839-4257 |
| | | | |
| | | | |
| ☎ 상황반장 : 031-839-4213 |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이○○ | 031-839-4211 |
| | 직원 | 박○○ | 031-839-4257 |
| 상황반 | 반장 | 김○○ | 031-839-4213 |
| | 반원 | 박○○ | 031-839-4232 |
| | 반원 | 이○○ | 031-839-4231 |
| 현장 대응반 | 반장 | 홍○○ | 031-839-4218 |
| | 반원 | 황○○ | 031-839-4233 |
| | 반원 | 홍○○ | 031-839-4253 |
| 의료 지원반 | 반장 | 임○○ | 031-839-4215 |
| | 반원 | 박○○ | 031-839-4243 |
| | 반원 | 홍○○ | 031-839-4242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 | | |

지하1층 피난계획도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지상1층 피난계획도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지상2층 피난계획도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지상3층 피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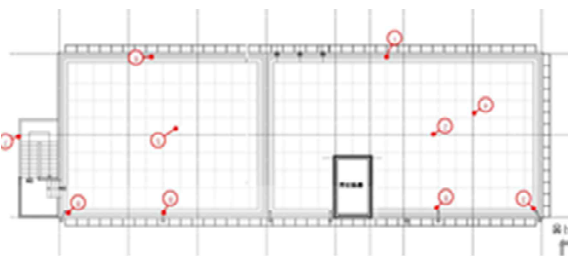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옥상층 피난계획도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7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는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 영 절 차 | 운 영 내 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기술보급과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2 |
| 원료·제조물 | 부산물비료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마동 | 1 |
| 원료·제조물 | 부산물비료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바동 | 1 |

농업기술센터 마, 바동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비료관리법(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2개소) | | | | | 9개 법령 | |
| 농업기술센터 마동 (유용미생물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 395 | 1층 | 철근 콘크리트 일반 철근 구조 | 6 | -농촌진흥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
| 농업기술센터 바동 (고체미생물발효실) | 220 | 1층 | 일반 철근 구조 | | -농촌진흥법 -비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농업기술센터 마동: 해당없음
- 농업기술센터 바동: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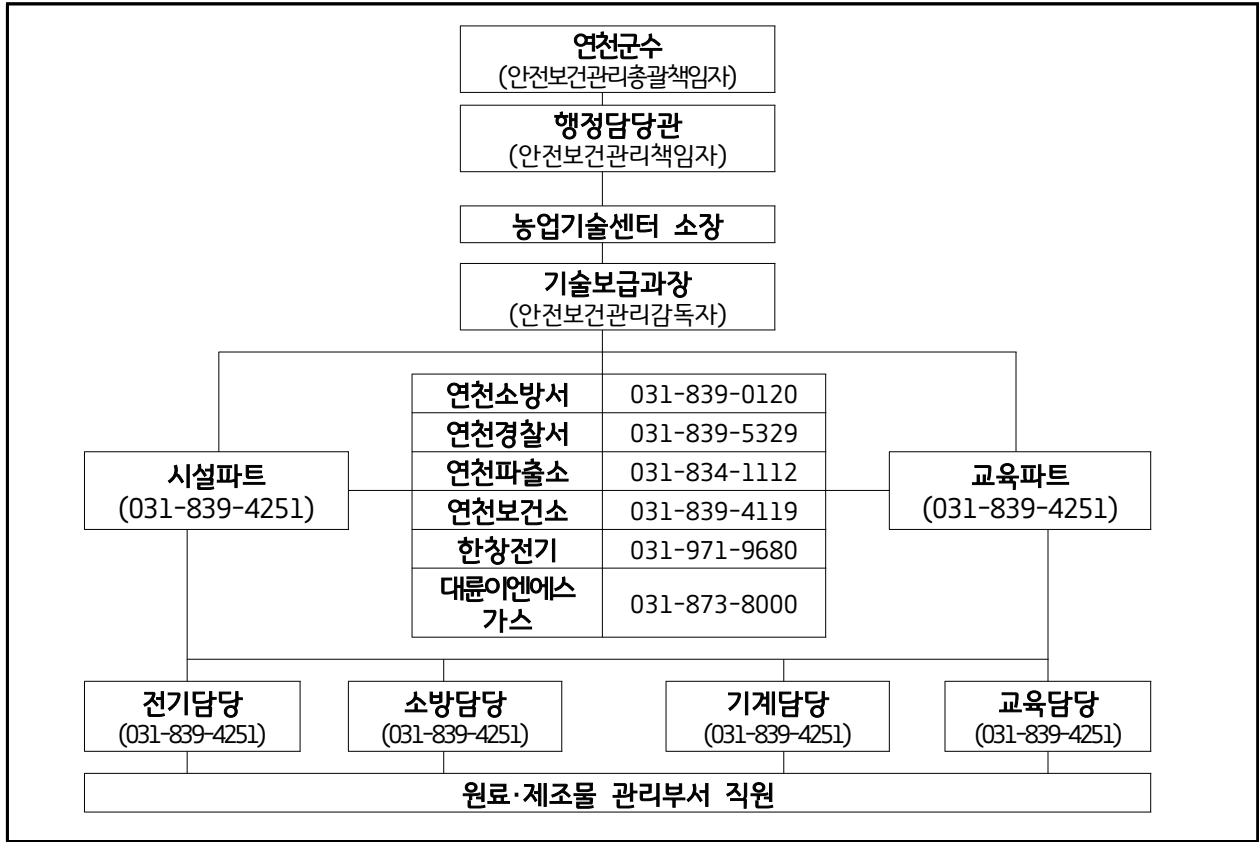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8조)

- 농업기술센터 마동, 바동
 - 실험실 시약분야 사고 시 대응 매뉴얼 수립
 - 실험실 화재 시 대응 매뉴얼 수립
- 전문인력 확보 현황: 1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시설(건축, 전기, 통신, 가스) | 보건관리자 |
| 농업기술센터 마동 | 1명 | 해당없음 |
| 농업기술센터 바동 | | |

※ 개별 원료·제조물의 특성을 반영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 | 압력용기 안전점검 | 적합 | 2년에 1회 | 2024년 4월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안전장치

-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 구분 | 세부내용 | 수량 | 배치구역 | 담당자 |
|-----|--------------------------------------|-----|----------|-----|
| 마스크 | 고체미생물 제작시 분진보호 사료분석 실험시 유해기체보호 | 100 | 실험테이블 선반 | 이○○ |
| 방역복 | 고체미생물 제작시 분진보호 | 100 | 창고 선반 | 이○○ |

○ 유해·위험 요인 점검계획

- 확인목록: 「실험실 일일 안전점검표」, 「시약관리대장」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매일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실험실 안전점검 | 매일 1회 점검 | 담당팀장이 일일 안전점검 결과 보고 확인 | 여 | - |
| 시약 사용현황, 재고관리 | 매일 1회 점검 | 사용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 여 | -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 재난안전관리자(1) 및 실무자(3) 교육 이수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시설별 전문교육 이수: 건축물, 전기, 소방, 가스 등 시설별 전문교육 수료
 -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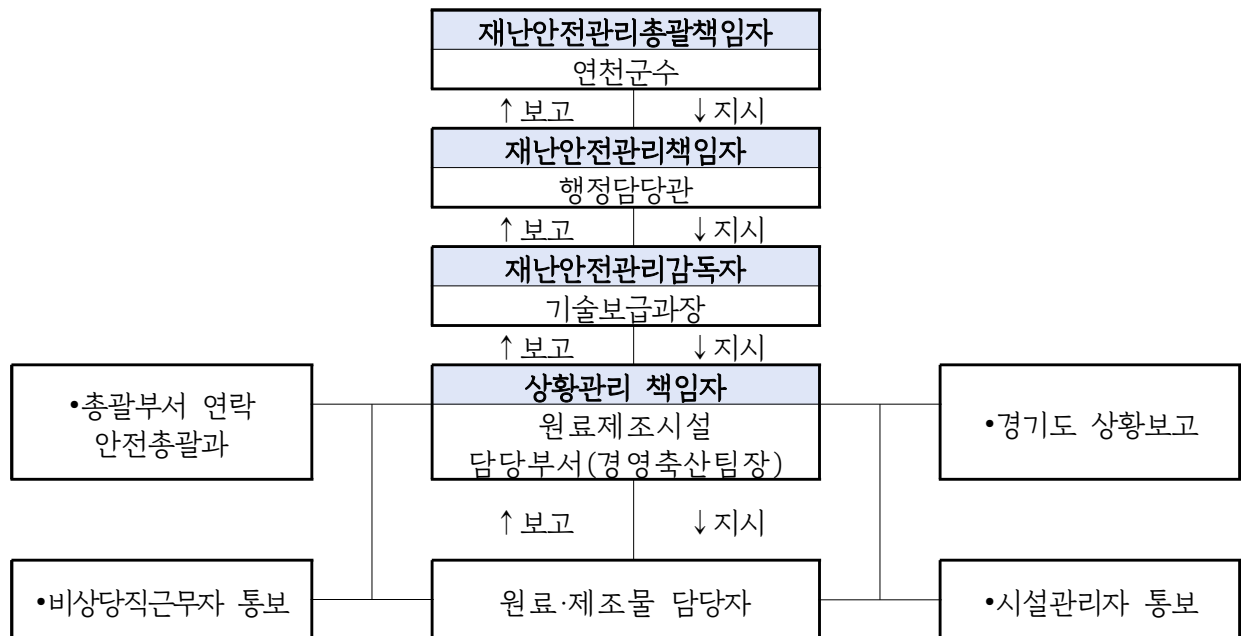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 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보고체계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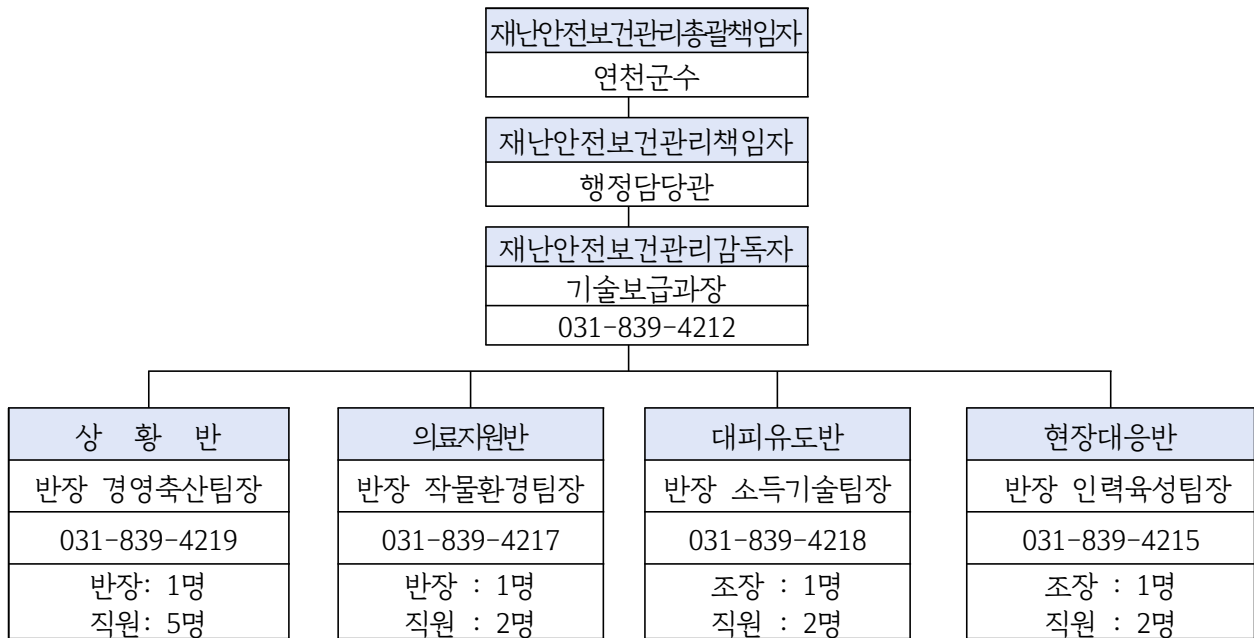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119 | 긴급출동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연천파출소 | 031-834-1112 | 경찰지원 |
| 대륜이엔에스(가스) | 031-873-8000 | 가스시설관리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 대흥소방 | 031-834-5119 | 소방시설관리 |
| 한창전기 | 031-971-9680 | 전기시설관리 |
| 연천군 보건의료원 | 031-839-4119 | 처치 및 치료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03월 08일 / 담당자 : 이○○

* 원료·제조물에 따라 추가/삭제 가능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사장이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과장) 및 4개반으로 구성 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당 | 임무 |
|-----------------------------|----------------------|---|
| 상황반 반장 (경영축산팀장 황의섭)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장 (작물환경팀장 한○○)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장 (소득기술팀장 이○○)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장 (인력육성팀장 이○○)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예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 최○○)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4219 | | |

| 대피유도반(성명: 홍○○)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1층 비상대피로 확보 2. 비상구를 통한 파란계단으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미생물 제조시설 및 사무실 등 실내 사각지대에 잔류 인원 있는지 확인 후 대피 유도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8 | | |

| 현장대응반(성명: 임○○)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현장대응 | 화재 테러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4215 | | |

| 의료지원반(성명: 한○○)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의료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4217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연천소방서:031-830-0120 ☎연천경찰서:031-839-5329☎응급의료지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최○○ | 031-839-4219 |
| | 반원 | 김○○ | 031-839-4254 |
| | 반원 | 이○○ | 031-839-4251 |
| | 반원 | 최○○ | 031-839-4255 |
| | 반원 | 이○○ | 031-839-4252 |
| | 반원 | | |
| | 반원 | | |
| | 반원 | | |
| | 반원 | | |
| ☎ 상황반장 : 031-839-4219 | | |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재난안전상황실:031-839-2119 ☎연천소방서:031-830-0119 ☎연천경찰서:031-839-5329 ☎보건의료원:031-839-411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위기상황 지휘본부 | 본부장 | 이○○ | 4212 |
| | 직원 | 정○○ | 4249 |
| 상황반 | 팀장 | 최○○ | 4219 |
| | 팀원 | 김○○ | 4254 |
| | 팀원 | 이○○ | 4251 |
| | 팀원 | 최○○ | 4255 |
| | 팀원 | 이○○ | 4252 |
| 현장대응반 | 반장 | 임○○ | 4215 |
| | 반원 | 박○○ | 4243 |
| | 반원 | 홍○○ | 4242 |
| 의료지원반 | 반장 | 한○○ | 4217 |
| | 반원 | 정○○ | 4249 |
| | 반원 | 강○○ | 4250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4218 | | | |

--> 접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활용

- ❖ 개인별 임무카드는 본인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코팅하거나 소책자 형태로 제작
- ❖ 개인별로 위기발생 시 활동장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전 곡 읍

| 구분 | 세부내역 | 시설물명 | 개소 |
|--------|-------|-------------------------|----|
| 합 계 | | | 1 |
| 공중이용시설 | 복합건축물 | 연천군문화체육센터 (전곡행정복지센터) | 1 |

전곡읍 문화체육센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계획

□ 시설유형

| | | |
|--------|--------------------------|--|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제3종시설물 (연면적 2천㎡ 이상의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층, 명)

| 시설명 | 적용요건 | | | 운 영 인 력 | 적용법(령) | 비 고 |
|----------------------|----------|---------------------------------------|---|------------------|---|---|
| | 면적 | 층수 | 기타 | | | |
| 계(1개소) | | | | 6 | 6개 법령 | |
| 연천군 전곡읍 문화체육센터 | 4,496.05 | 4층 (지하1/지상3) 높이 : 15.75m | 구조 : 철근콘크리 트조 용도 : 문화 및 집회 시설 | 6 |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 | ※ 승강기(휠체 어 리프트)는 온골지하보도 폐 쇄로 중지중 |

□ 최근 재해 발생 대응현황(소관시설)

-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동법 시행령 제10조)

- 연천군 문화체육센터(전곡읍 행정복지센터)(2001.7.29. 준공)
 - 전곡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일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분류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FMS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완료
- 전문인력 확보 현황: 3명

| 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
|---------------|----------|---------|-------------------------|------------------------|
| | 승강기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 1명 | 1명 | 1명 (승강기안전관리자와 겸임) | 1명 ※ 복지팀 간호직 공무원 |

○ 전담조직 설치



○ 시설물 점검계획

| 관계법령 | 점검근거 | | 등급 | 개소 | 점검 주기 | 점검 예정일 |
|---------|------|----------------------|----|----|----------------|------------|
| | 조항 | 점검명 | | | | |
| 전기안전관리법 | 11조 | 정기검사 | - | 1 | 월 3회 | 매월 |
| 소방시설법 | 22조 | 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 정상 | 1 | 연 각 1회 월 1회 | 상하반기 매월 |
| 산업안전보건법 | 36조 | 위험성평가 | - | 1 | 연 1회 | 연중 |
| 시설물안전법 | 11조 | 정기안전점검 | B | 1 | 연 2회 | 상하반기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목록 및 점검계획

- 확인목록: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계획: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 시 조치계획 |
|------------|---|----------------------|-------------------------|------------|
|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 - 연중: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추진 - 6월/12월: 법정 안전 점검 준공 검사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대응 예산 확보 여부 | 추가경정예산 편성 |

○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 등 재해발생 예방 조치사항

- 긴급점검 수행계획

-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립/이행,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
- 긴급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조직체계 수립 및 운영

- 재해예방 및 대비 계획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외부 법정정기검사 시행,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 현행 안전관리계획 개정 및 세부 안전매뉴얼 수립
-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실태 점검 및 비축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해예방 교육계획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지진대피훈련(중앙부처 훈련 발효 시)
- 전직원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매분기 3시간 이상
- 전직원 응급구조(심폐소생) 교육 수료
- 시설별 전문교육 이수: 승강기, 소방, 위험물 등 시설별 전문교육 수료

| 구분 | 교육명 | 교육수료(예정)일 | 수료(예정)자 | 비고 |
|-----|--------------|---|-------------------|-------------|
| 승강기 | 승강기관리교육 | 2023.03.23. | 유○○ | |
| 소방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2023.06.23. 2020.08.21. | 유○○ 민○○ | 선임자: 민○○ |
|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자 | 2023.06.01. 2023.06.01. 2023.06.09. | 유○○ 박○○ 민○○ | 선임자: 유○○ |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 긴급안전조치 수행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단 계 | 업 무 | 수 행 자 |
|--------------|--|--|
| 사고발생 구조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중지 / 주변 접근통제 / 대피 • 응급구조 체계(119)에 따라 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보건관리자(간호사) 호출 • 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알림(유관기관, 관리책임자) | 현장 근무자 |
| 응급처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자 상태 파악 • 의료 지식에 근거한 응급 처치 • 필요시 병원 후송 | 보건관리자(간호사)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자격 가능 현장 근무자 |
| 사고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인 • 사고경위서 작성 및 보고 (현장보존 - 사고원인조사) |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
| 사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사후관리 전화 실시 • 동종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회의 실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또는 구축) • 중대재해 기록 및 보존 조치(5년간 원본 보존) | 현장근무자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 위해요소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이행
- 법정 하자점검 및 보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점검 및 하자보수 이행(시공사)
 - 점검대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축 및 부대공사 전체 공정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계획

- 긴급 보수보강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상황에 맞는 위험표지판 제작
- 담당 시설물 및 주변 업무시설 작업 중지 및 이용자 출입통제 조치
- 해당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관련 안내문 게시
-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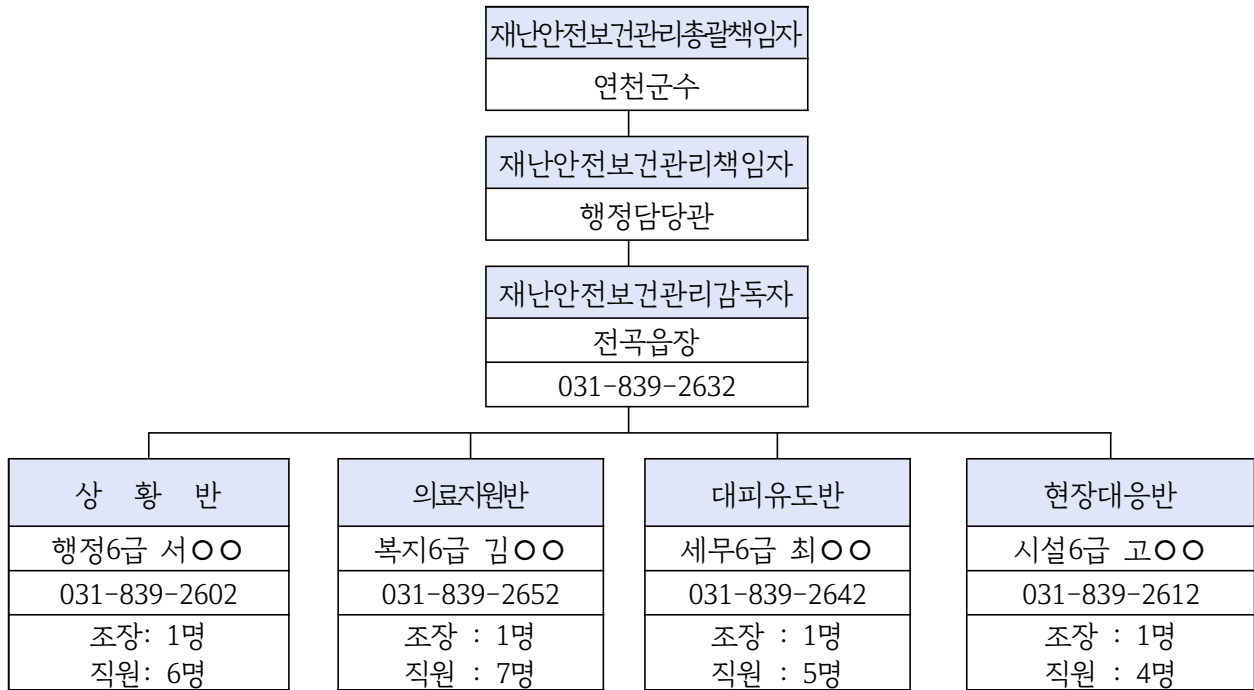
- 최초보고(1차): 상황인지 즉시(담당자→팀장,과장,상황실→행정담당관/연천군수)
- 현장보고(2차): 현장도착 즉시(담당자→팀장,과장,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중간·최종보고(3차): 수습조치 단계별(대응반→행정담당관/연천군수)

○ 비상연락망

| 구 분 | 유 선 | 기 능 |
|-----------------|----------------------------|-----------|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 044-205-1544(044-205-8890) | 재난상황보고 |
|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 031-230-6653(031-230-58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 | 031-839-2119 | 재난상황보고 |
| 연천소방서(상황실) | 119 / 031-830-0471 | 화재진압/구조구급 |
| 연천경찰서 | 112 / 031-839-5329 | 경찰지원 |
| 전곡파출소 | 031-832-2112 | 경찰지원 |
| 한국전력공사 | 123 / 031-369-1285 | 전력수전설비 |
| 전기안전공사 | 031-8034-7300 | 전기시설관리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3월 2일 / 담당자 : 유○○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도(시설/사업장 비상체제로 전환)



○ 조직구성

- 시기: 재난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비상발령 통보 또는 총괄책임자가 구성을 지시할 때
- 구성: 총괄책임자(연천군수), 책임자(행정담당관), 감독자(전곡읍장) 및 4개반으로 구성 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별 구성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응 임시조직 반별 임무

| 반별(반장) | 담 당 | 임 무 |
|-------------------------------|----------------------|---|
| 상 황 반 반 장 (행정6급 서○○) | 상황전파 출입통제 인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 ◦ 대내외 연락 및 보고(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내·외부 유관부서 협조 요청 및 현황보고) ◦ 사고원인파악, 준공도면 확보 ◦ 현장통제 및 응급차량 유도 ◦ 피해통계 작성보고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원반 반 장 (복지6급 김○○) | 응급처치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 환자 발생 통계 관리 ◦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
| 대피유도반 반 장 (세무6급 최○○) | 대피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이용자 대피 유도 ◦ 대피인원수 파악 |
| 현장대응반 반 장 (시설6급 고○○) | 현장대응 복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및 현장상황 전달 ◦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요인 차단 등 ◦ 복구업체 연락 및 작업지도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인별 임무카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앞면)

| 상황반(성명:서○○) | | |
|--|--|---|
| ☎연천소방서: 119, 031-830-0471 ☎연천경찰서: 112, 031-839-532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상황반장 : 031-839-2602 | | |

| 대피유도반(성명:최○○) | | |
|--|--|--|
| ☎연천소방서: 119, 031-830-0471 ☎연천경찰서: 112, 031-839-532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1. 1층 비상대피로 확보 3. 1층 및 2층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 ☎ 대피유도반장 : 031-839-264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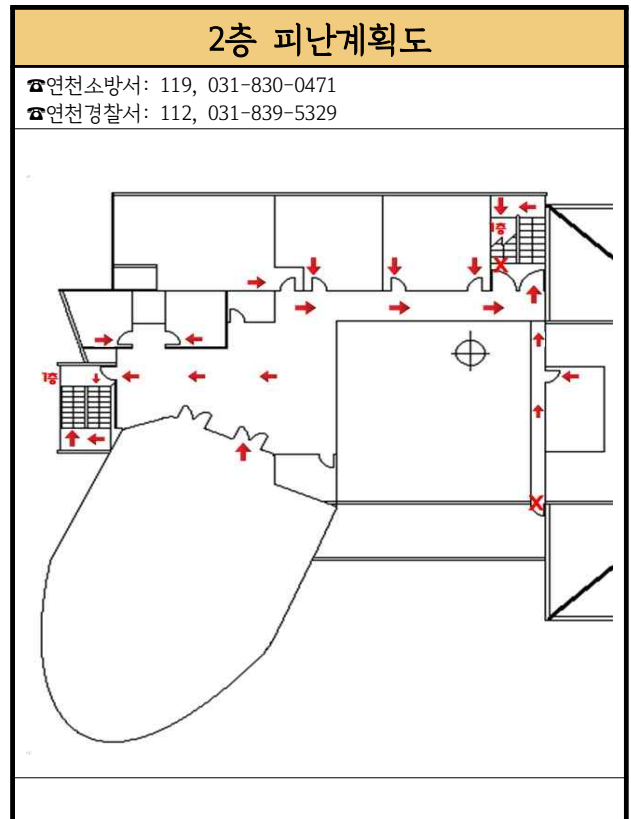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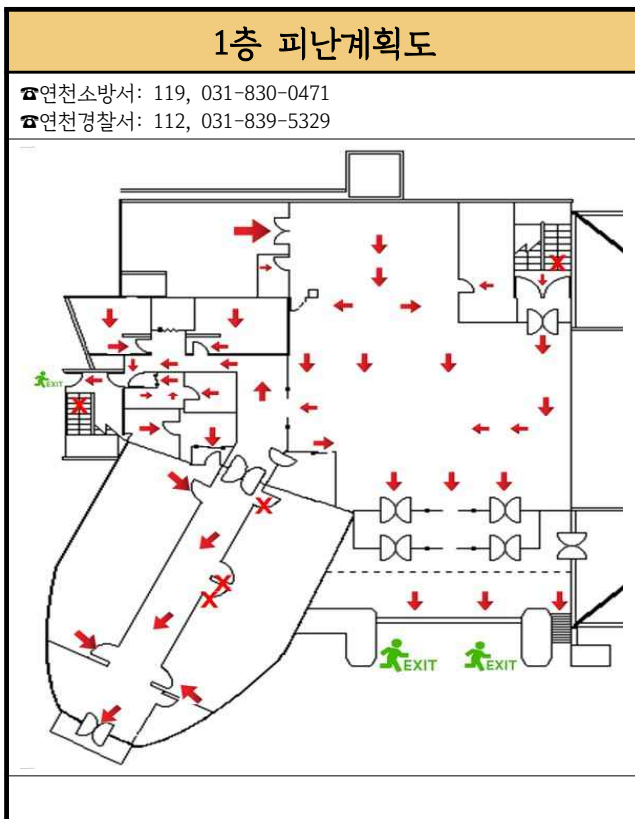
| 현장대응반(성명:고○○) | | |
|--|----------------|--|
| ☎연천소방서: 119, 031-830-0471 ☎연천경찰서: 112, 031-839-532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031-839-2612 | | |

| 의료지원반(성명:김○○) | | |
|--|--|--|
| ☎연천소방서: 119, 031-830-0471 ☎연천경찰서: 112, 031-839-5329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의료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의료지원반장 : 031-839-2652 | | |

(뒷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1) | | | |
|---------------------------|----|-----|--------------|
| ☎연천소방서: 119, 031-830-0471 | | | |
| ☎연천경찰서: 112, 031-839-532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상황반 | 반장 | 서○○ | 031-839-2602 |
| | 반원 | 조○○ | 031-839-2702 |
| | 반원 | 윤○○ | 031-839-2662 |
| | 반원 | 이○○ | 031-839-2872 |
| | 반원 | 신○○ | 031-839-2732 |
| | 반원 | 민○○ | 031-839-2692 |
| | 반원 | | |
| 대피유도반 | 반장 | 최○○ | 031-839-2642 |
| | 반원 | 염○○ | 031-839-2742 |
| | 반원 | 황○○ | 031-839-2752 |
| | 반원 | 김○○ | 031-839-2588 |
| | 반원 | 한○○ | 031-839-2882 |
| | 반원 | 남○○ | 031-839-2585 |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2) | | | |
|---------------------------|----|-----|--------------|
| ☎연천소방서: 119, 031-830-0471 | | | |
| ☎연천경찰서: 112, 031-839-5329 | | | |
| 비상조직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의료지원반 | 반장 | 김○○ | 031-839-2652 |
| | 반원 | 동○○ | 031-839-2593 |
| | 반원 | 엄○○ | 031-839-2587 |
| | 반원 | 임○○ | 031-839-2598 |
| | 반원 | 홍○○ | 031-839-2722 |
| | 반원 | 주○○ | 031-839-2592 |
| | 반원 | 현○○ | 031-839-2586 |
| | 반원 | 한○○ | 031-839-2589 |
| | 반원 | | |
| 현장대응반 | 반장 | 고○○ | 031-839-2612 |
| | 반원 | 주○○ | 031-839-2712 |
| | 반원 | 백○○ | 031-839-2622 |
| | 반원 | 전○○ | 031-839-2892 |
| | 반원 | 이○○ | 031-839-2590 |



□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재해발생 원인규명 등 사고조사 수행계획

- 사고경위서 작성 절차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고조사 수행계획 수립

*사고경위서란?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기록하는 문서, 손해 배상의 증빙자료로 활용

- 필요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동행하여 사고조사 시행

<사고경위서 / 사고발생 및 대응보고(안) 활용>

| 운영절차 | 운영내용 |
|---------------|---|
|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노인, 소아 이용객의 경우 동반 보호자 유무 확인 |
| 작성자 인적사항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직원의 성명, 근무처, 직급, 연락처 |
| 최초 발견자·목격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격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연락처 및 성명 기록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서를 필요할 수 있음 ex) 주변에서 샤워를 하던 홍00 학생, 000-0000-0000 |
| 사고 장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 ex) 1층 로비 미디어홀 아래 3번째 키오스크 앞 |
| 사고자 피해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록 •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호소하는지 기록 ex) 오른쪽 무릎 2cm 열상, 왼쪽 발목 통증, 14:30부터 구토 |
| 안전상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시각의 안전요원, 직원의 유무 • 교육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하였는지 유무 •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진으로 기록 • 안전 설비 또는 이용객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 사고 시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순서대로 직원의 대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시에 발생한 사고인가? - 몇 시에 구급차(또는 간호사)가 도착하였는가? - 몇 시부터 회원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가? - 몇 시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였는가? |
| 사고경위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의 인과관계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간호사를 호출하였는가, 누가 119에 신고하였는가? - 누가 구급차에 동승하였는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가? - 누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는가? - 누가 현장의 다른 이용객들을 통솔하고 질서를 유지했는가? - 누가 어떤 보호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였는가? |

○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 사고원인에 따른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서식 및 참고자료

| | | | | |
|--------------------------------------|--|------------------------|-----------------------------------|-----------------------------------|
| 6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해당여부 :) - 계약명 : , 안전기준 반영여부 , 점검일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계약명 : , 안전기준 반영여부 , 점검일 : | | | |
| | 관련근거 : 시행령 제10조제8호 | | | |
| 7 | 관련법령 상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모두 조치하였음. | | | |
| | | 연도 | 점검내용 | 개선명령(건) 조치완료(건) |
| | | 2023 |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 2022 |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2021 |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관련근거 : 시행령 제11조제2호 | | | | |
| 8 |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업무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 | |
| | | 교육명(법령상) | 교육주기 | 수료일자 수료인원 |
|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 연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 분기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 3년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 3년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 「소방시설법」 소방안전교육 | 연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 「수도법」 교육 | 5년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소방안전교육 | 상황에 따라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관련근거 :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 | | | | |
| 9 |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 | |
| | | 훈련명(법령상) | 훈련주기 | 시행일 참여인원 |
| | 「소방시설법」 소방훈련 실시 | 연 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 관련근거 :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 | | |
| 10 |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 | |
| | | 관련법 | 점검명 | 주기 점검일 점검내용 |
| | 사격장안전관리법 | 사격장안전점검 | 월1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총포도검 | 자체안전점검 | 연2회 | <input type="checkbox"/> (예정 : 월) | |

선임장

| 소속부서 | 직위 | 성명 | 선임일 |
|----------|-----------|-----|------------------------|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회계과 | 회계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건설과 | 건설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의료지원과 | 의료지원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농업개발과 | 농업개발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 전곡읍 | 전곡읍장 | ○○○ | 2024. 2. 00. ~ 변동사유발생일 |

위 사람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의거 사업장 및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증진 시키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선임된 사람은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방호장치 점검과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년 0월 0일

연 천 군 수 [인]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원료·제조물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체크리스트 활용

□ 공통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공통 분야 |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 여부(소방계획서) | | | | |
| | 2.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 | | | |
| |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 여부 | | | | |
| | 4.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 | | |

□ 원료·제조물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현장안전 관리 상태검사 | 1. 안전장비 착용 및 비치 여부(모든 출입자) | | | | |
| | 2. 위험요인 누출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 | | | |
| | 3. 위험요인 누출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 | | | |
| | 4. 중간밸브와 자동차단장치 정상 작동 여부 | | | | |
| | 5. 작업 이후 안전관리(세척, 환기 등) 절차 수립 여부 | | | | |
| 시설 유지관리 상태검사 | 5. 별도 작업실 설치 여부 및 위험표시 안내 여부 | | | | |
| | 6. 관계자 외 출입 시 절차 수립 여부 (접근금지구역 지정, 관계자 외 출입자 명단 작성 등) | | | | |
| | 7. 원료·제조물과의 안전거리 유지 여부 | | | | |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건축물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체크리스트 활용

□ 공통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공통 분야 |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 여부(소방계획서) | | | | |
| | 2.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 | | | |
| |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 여부 | | | | |
| | 4.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 | | |

□ 건축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주요 시설 | 1.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 | | |
| | 2.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 | | |
| | 3. 슬래브(바닥판)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 | | |
| | 4. 주계단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 | | |
| | 5.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 | | |
| | 6.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 | | |
| |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 | | |
| | 8.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 | | | |
| 일반 시설 | 9. 지붕(옥상)의 균열 및 상태 | | | | |
| | 10.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상태 | | | | |
| | 11. 외벽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탈락상태 | | | | |
| |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 | | | |
| |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 | | | |
| 부대 시설 | 일반 | 14. 용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 | | |
| | |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 | | |
| | |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 | | |
| | 공사장 | 17. 대형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안전성 및 관리상태 | | | |
| | | 18. 안전망 등의 설치 여부 및 상태 | | | |
| | | 19. 공사용 안전 가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및 상태 | | | |

□ 전기분야

| 구분 | 점 검 항 목 | 점검 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인입구 배선 (육안으로 점검할 것) | 1.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 | | | |
| | 2. 전선 접속 상태 | | | | |
| |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 | | | |
| |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 | | | |
| 옥내배선 (옥외, 옥측배선 포함) (육안으로 점검할 것) |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 | | | |
| |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 | | | |
| |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 | | | |
| |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 | | | |
| | 9. 보행로 전선 노출 여부 | | | | |
| 누전차단기 | 10.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 | | |
| | 11. 열화 및 손상 여부 | | | | |
| 개 폐 기 (차단기를 포함한다) | 12.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 | | | |
| | 13.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 | | |
| | 14.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 | | |
| | 15. 개폐기의 결선 상태 | | | | |
| | 16. 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 | | | |
| 비상전원설비 | 17. 정전 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 여부 | | | | |
| 배 전 반 | 18. 배전함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 여부 | | | | |
| 부하설비 | 19.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 여부 | | | | |
| 조명시설 | 20.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상태 | | | | |

□ 기계분야

| 구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시설영역 | 1.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 | | | |
| |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 | | |
| |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 | | | |
| |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 | | | |
| |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 | | | |
| |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 | | |
| |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 | | |
| | 8.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 | | | |
| | 9.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 | | | |
| | 10.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 | | | |

□ 가스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현장안전 관리 상태검사 | 1. 가스누출 여부(비누방울 시험법) | | | | |
| | 2. 가스누출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 | | | |
| | 3. 중간밸브와 자동차단장치 정상 작동 여부 | | | | |
| | 4. 노출배관 및 부속물 유지관리 상태 | | | | |
| | 5. 철거된 가스시설의 배관 또는 호스 끝 마감 처리 여부 | | | | |
| | 6. 호스 T 사용 여부 및 호스 3m 이상 사용 여부 | | | | |
| 시설 유지관리 상태검사 | 7. 저장용기 보관실 설치 여부 및 위험물표시 (100kg 이하는 차양조치) | | | | |
| | 8. 보일러실에 보일러 이외의 적치물 보관 여부 | | | | |
| | 9. 가스보일러가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 | | |
| | 10. 가스저장탱크 안전거리 유지 여부 (화기와의 거리 유지) | | | | |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도로교량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체크리스트 활용

| | | | |
|-------|--|-------------|-------|
| 시설물명 | | 관리주체 | |
| 준공년월일 | | 최종점검 년월일 | 년 월 일 |

□ 공통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공통 분야 |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 여부(소방계획서) | | | | |
| | 2.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 | | | |
| |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 여부 | | | | |
| | 4.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 | | |

□ 교량분야 점검표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O,x | 내용(위치, 상태) | |
| ■ 배수시설 • 배수관 파손에 따른 낙하위험 유무 • 배수관 막힘·물고임의 발생 여부 | | | |
| ■ 신축이음 • 유간이격의 발생 여부 • 단차의 발생 여부 • 파손의 발생 여부 | | | |
| ■ 받침부 • 받침장치 파손의 발생 여부 • 받침부 균열, 파손의 발생 여부 | | | |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 조 치 사 항 |
|-----------------|---------|------------|---------|
| | O,x | 내용(위치, 상태) | |
| • 받침편기의 발생 여부 | | | |
| • 받침과 거더의 분리 여부 | | | |
| ■ 교대·교각 | | | |
| • 균열의 발생 여부 | | | |
| • 파손의 발생 여부 | | | |
| • 변형, 회전의 발생 여부 | | | |
| ■ 기 초 | | | |
| • 세굴의 발생 여부 | | | |
| • 침하의 발생 여부 | | | |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터널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체크리스트 활용

| | | | |
|-------|--|-------------|-------|
| 시설물명 | | 관리주체 | |
| 준공년월일 | | 최종점검 년월일 | 년 월 일 |

□ 공통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공통 분야 |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 여부(소방계획서) | | | | |
| | 2.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 | | | |
| |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 여부 | | | | |
| | 4.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 | | |

□ 터널분야 점검표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O,× | 내용(위치, 상태) | |
| ■ 갱문 및 옹벽 • 신규균열·박락발생 유무 • 주변지반의 세굴 발생 여부 • 주변지반의 융기 발생 여부 • 주변지반의 침하 발생 여부 • 시공이음부 단차발생 유무 • 배수구 막힘 여부 • 배수시 흙, 모래 유출 여부 | | | |
| ■ 갱구주변 경사면 • 균열의 발생 여부 | | | |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 조 치 사 항 |
|----------------------|-----------------|------------|---------|
| | O, ^x | 내용(위치, 상태) | |
| • 침하 또는 융기의 발생 여부 | | | |
| • 새로운 지하수 유출지점 발생 여부 | | | |
| • 수목의 전도 여부 | | | |
| • 낙석 발생 여부 | | | |
| ■ 사면 보호공 또는 보강공 | | | |
| • 단차발생 여부 | | | |
| • 보호공 또는 보강공 파손발생 여부 | | | |
| • 배수공의 막힘 여부 | | | |
| • 모르타 표면의 습윤 여부 | | | |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사면(급경사지)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체크리스트 활용

| | | | |
|-------|--|-------------|-------|
| 시설물명 | | 관리주체 | |
| 준공년월일 | | 최종점검 년월일 | 년 월 일 |

□ 공통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공통 분야 |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 여부(소방계획서) | | | | |
| | 2.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 | | | |
| |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 여부 | | | | |
| | 4.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 | | |

□ 사면(급경사지)분야 점검표

| 세 부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 | | |
|------------------------------|--------------------------|--------------------------|--------------------------|---------------------------|
| | 적 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 (위치·상태 등) |
| ○ 경사면내는 안전한가? | | | | |
| - 균열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침하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융기(배부름)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수목 전도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낙석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뜬 돌 존재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하단부 침식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지하수 유출 및 탁수의 용출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사면 붕괴 이력 및 규모, 위치는 관리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기타 점검 의견>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세 부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해당란에 ✓체크) | | | |
|---|--------------------------|--------------------------|--------------------------|---------------------------|
| | 적 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 (위치·상태 등) |
| ○ 상·하부 사면 및 도로면은 안전한가? | | | | |
| - 균열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침하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용기(배부름)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낙석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사면 종·횡단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사면 종·횡단배수로 막힘이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 ○ 보호공 혹은 보강공 등 구조물은 안전한가? | | | | |
| - 평면상 높낮이 차(단차)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모르터 표면 습윤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배수공 막힘 등 배수기능 저하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보호·보강 구조물 파손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소규모 낙석, 붕괴에 의한 보호·보강 효과 저하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기타 점검 의견>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 기초 세굴·부등침하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확인 점검 실시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서식3

유해·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옹벽

※ 부서별 상황에 맞게 체크리스트 활용

| | | | |
|-------|--|-------------|-------|
| 시설물명 | | 관리주체 | |
| 준공년월일 | | 최종점검 년월일 | 년 월 일 |

□ 공통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 | |
|----------|----------------------------------|------|----|----|----------|
| |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
| 공통 분야 |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 여부(소방계획서) | | | | |
| | 2.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부재 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 | | | |
| | 3. 긴급재난 시 대피지침 수립 여부 | | | | |
| | 4.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 | | |

□ 옹벽 분야 점검표

| 세부 점검 사항 | 점검결과(해당란에 ✓체크) | | | |
|------------------------|--------------------------|--------------------------|--------------------------|------------------------|
|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 (위치·상태 등) |
| ○ 옹벽 전면은 안전한가? | | | | |
| -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이음부 이격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전면부 배부름(돌출)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주변부 탁한 용수 유출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낙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단차, 전도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배수구 막힘이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기타 점검 의견 >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 옹벽 배면은 안전한가? | | | | |
| - 지반의 균열 및 침하 발생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세 부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 | | |
|--|--------------------------|--------------------------|--------------------------|--------------------------|
| | 적 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부적합 세부 내용 (위치 · 상태 등) |
| - 배수로의 기능저하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옹벽 인접 교목 식생(2m이내)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콘크리트 파손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기타 점검 의견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 ○ 옹벽 기초부는 안전한가? | | | | |
| - 지반응기가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옹벽 침하가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이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세굴의 발생이 없어야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기초부 지반활동으로 인한 기울어짐이 없어야 함 | | | | |
| <기타 점검 의견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 | | |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서식4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대장

공중이용시설 순회점검·신고시 유해·위험요인 점검대장

실시방법 점검자가 점검대장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
 (경미한 요인)

점검자 성명 :
 점 검 일 시 :
 점 검 결 과

※ 분기별 1회 이상 작성

| 연번 | 점검대상 시설물 | 점검내용 | 점검결과 (이상유무 및 결함유형) | 조치계획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함의 유형

- | | |
|---------|-----------|
| ① 균열·박리 | ⑨ 누전 |
| ② 누수 | ⑩ 폭발·파열 |
| ③ 파손 | ⑪ 화재 |
| ④ 전도 | ⑫ 화학물질 누출 |
| ⑤ 침식 | ⑬ 기타 |
| ⑥ 부식 | |
| ⑦ 설비 불량 | |
| ⑧ 정비 불량 | |

(서식설명) 시민신고 등 접수 및 담당자의 일상점검 후의 관리대장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실시 개요

- 실시기간 : 2024 00. 00. ~ 00. 00.
- 점검대상 : 000터널 외 000개 시설물(재해 이력 시설물 중점점검)
- 점검부서 : 000 외 3
- 점 검 자 : 관리부서 팀장, 직무 담당자(0명), 민간전문가(0명)
- 점검내용 :

점검 결과

| 연번 | 시설물명 | 점검내용 | 유해위험요인 | 조치계획 | 비고 |
|----|------|-------|--------|-----------------|----|
| 계 | | | 000 | | |
| 1 | 00 | 터널보수 | 000 | 긴급안전점검 필요 | |
| 2 | 00 | 터널관리 | 000 | 3월 중 보수보강계획(추진) | |
| 3 | 00 | 건축물정비 | 000 | 시설물 현지 조치(완료) | |

조치 계획

- (이용 제한) 이용 제한범위(부분/전체), 제한시점, 제한기간, 안내방법 등
- (보수·보강) 00시설 등 00건은 '24 00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개선 조치
- (정밀안전점검·진단) 00시설 등 00건은 '23.00월까지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이상 여부 확인

※ 조치결과 총괄부서 제출 및 경영책임자 별도 보고

서식6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국토부)」 참조

○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 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 평가절차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운영 가능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예시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항목 및 기준 예시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결과 | | |
|--------------------|---|------|---|---|
| | | 상 | 중 | 하 |
|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 |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 | |
| 재해대응체계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
| 교육 및 훈련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 | | |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 | | |

※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서식7

대피(훈련) 실시(안)

00 시설 기본현황 ※ 서식 변경 가능

| 관리주체 | 구분유형 | 사용용도 | 층수 | 연면적(㎡) | 비고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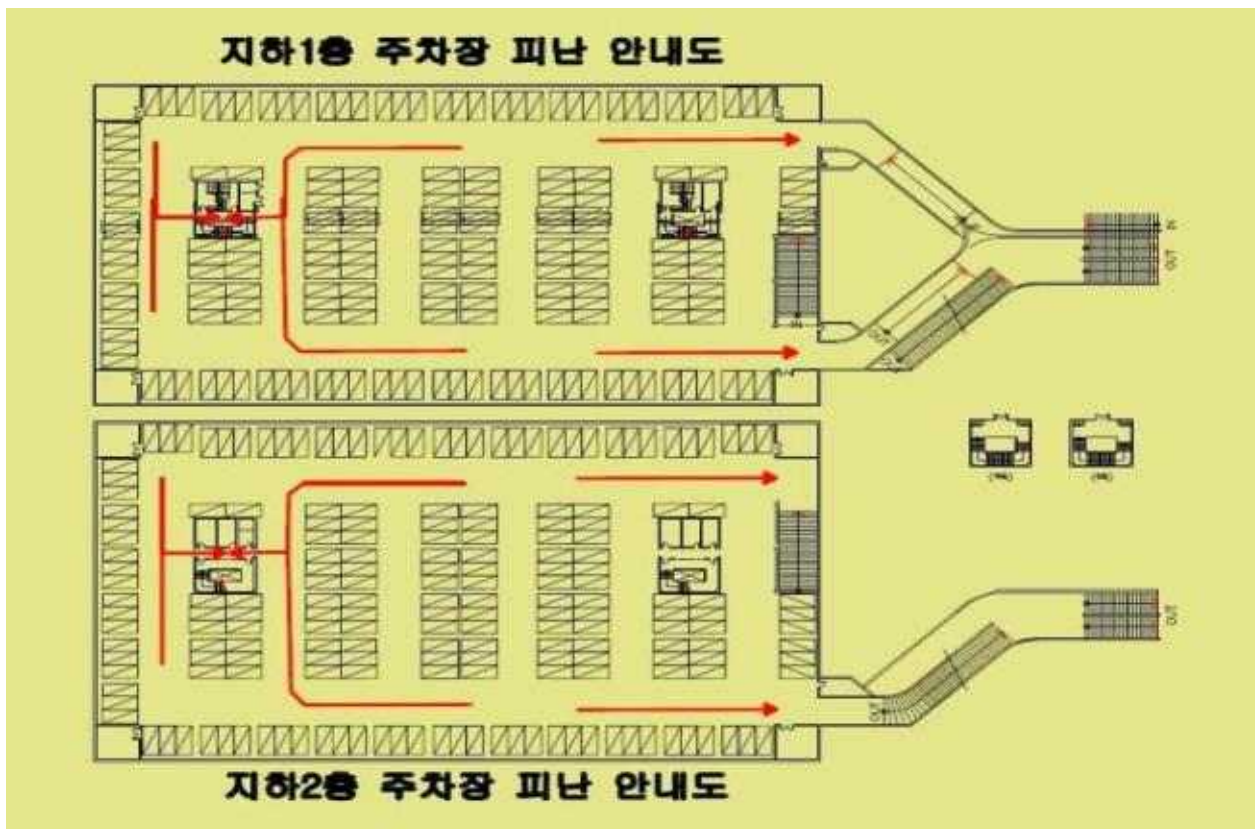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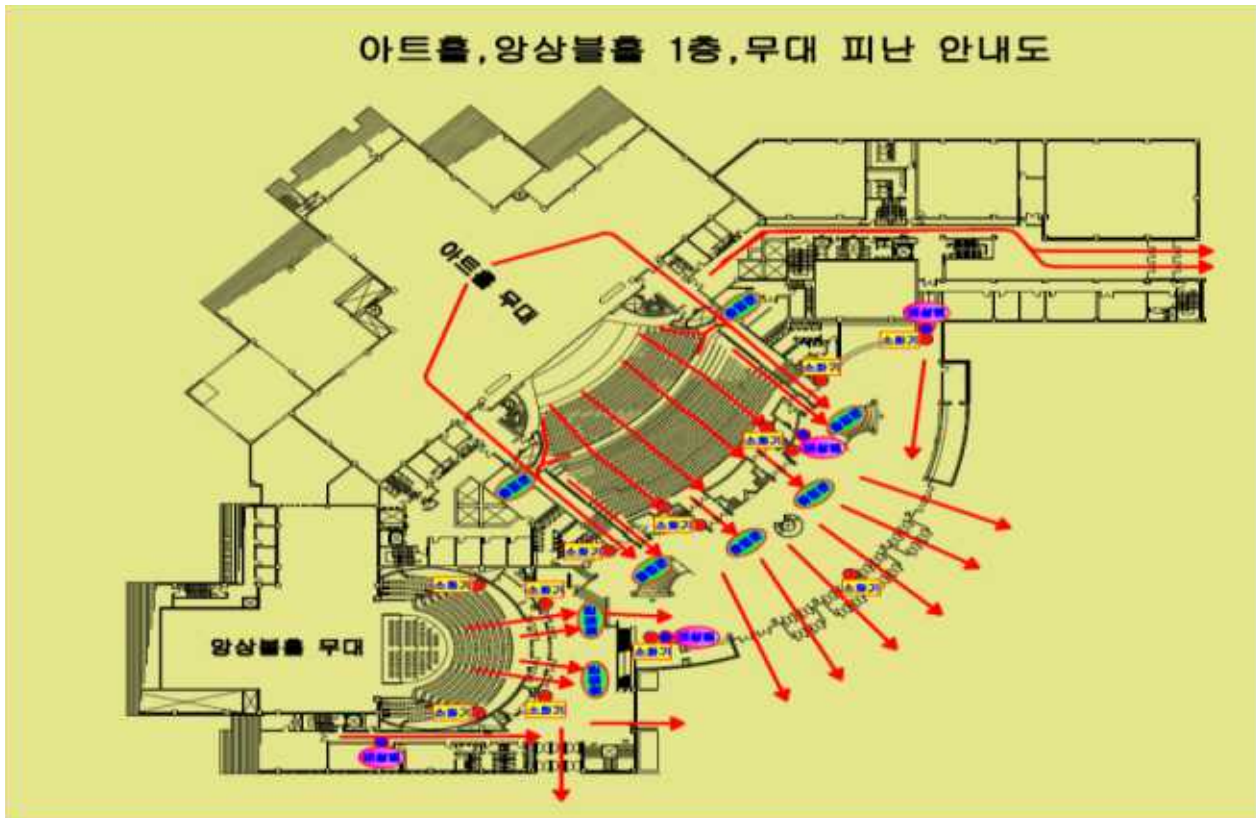
재난 발생 시 업무분담표

| 담당자 | 평상시 업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 비고 |
|-----|---|---|----|
| 000 | - 지휘명령 총괄 (안전관리책임관) | - 지휘명령 총괄 - 응급기관 연락 - 화재 및 재난장소 확인 - 보고 및 보고서 작성(외부) | |
| 000 | - 소방시설유지 - 시설 및 설비 최종점검 | - 비상사태 시 비상벨 - 관계기관 통보 - 보고서 작성(내부) - 대피유도 | |
| 000 | - 문서관리 (연간소방교육 계획,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등) | - 주요 서류와 물건반출 - 대피유도 및 최종점검 | |
| 000 | -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매뉴얼 관리 - CCTV 관리 | -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 - 비상문 개방 | |
| 000 | - 비상시 통합 연락망 관리 - 안전관리기관 연락망 관리 | - 현관(비상)문 개방 - 대피유도 | |
| 000 | - 현관,화장실 등 관리 - 가스, 보일러, 전기관리 | - 구급약품관리 - 대피유도 | |
| 000 | - 가스, 보일러, 전기점검 | - 가스 및 전기 차단 - 대피유도 | |

※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직원별 역할을 분담하고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실제 또는 도상훈련을 실시함

※ 재난상황 업무분담 계획 수립 후에는 모든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본인의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함

1. 비상시 대피도



3. 비상대피 훈련 시나리오 (지진 발생 시)

| | | | |
|-----------|---|-----|--|
| 훈련명 | 지진 대피 훈련 | 훈련일 | 월 일 |
| 참가자 | 시설 이용 시민 (명) / 종사자(명) | 시간 | 시 분 |
| 훈련종류 | 지진재대피 실제훈련 | | |
| 훈련목적 |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고, 지진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
| 재난상황 시나리오 | 규모 5.8 지진 발생으로 대피 | | |
| 훈련전 점검 | 훈련계획의 내용 숙지, 재난 시 업무분담 숙지, 대피로 동선, 소화기 위치 파악 등 | | |
| 훈련내용 | 1.경보사이렌 → 2.대피경로로 대피, 대피장소 집결 → 3.부상자, 사상자 확인과 응급처치 및 피해상황 파악 보고, 4.시청각 교육 → 5.훈련 종료 | | |
| 시나리오 세부내용 | 훈 련 | | 평가중점내용 |
| | <p>1.안내방송</p> <p>① 사전안내방송 및 훈련 시작 (예시: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00시 00분부터 2023년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 전역에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시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시설물 이용자 및 전직원이 실제로 대피해 봄으로써 지진 등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p> <p>② 지진 경보 발령 / 사이렌 울림 (예시: 현재시각 00:00시를 기해 우리나라 전역에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근무 직원들은 출입문을 열어 비상 탈출구를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자들이 깨서는 책상 등의 시설물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면서 훈련상황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대피시작 / 지정된 대피경로를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예시:이 상황은 훈련 상황입니다.(2번 반복) 우리나라 전역에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용객들은 대피유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을 피하여 정해진 넓은 장소로 피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대피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p> <p>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 파악 보고 - 대피상황 파악과 부상자 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119 신고 - 지진 파동이 안정화되면, 남은 인원 확인을 위해 건물 내 진입하여 미대피자가 있는지 최종 확인하고 피해상황 취합 보고 ※총원 00명, 대피인원 00명, 미대피자 0명, 대피인원 중 환자 0명</p> <p>4. 시청각 교육 - 시청각실에서 재난대응 훈련 동영상 상영 및 훈련 종료</p> | | <p>육성 전달 여부</p> <p>사이렌소리</p> <p>질서유지하며 대피</p> <p>부상자 응급조치/후송 피해상황 보고</p> |

시민재해조사표

| | | | | | |
|------------------|----------|--|------|----|-----------------|
| I. 사고 개요 | 사고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 | |
| | 사고장소 | | | | |
| | 발생원인 | | | | |
| II. 피해 상황 | 인명피해 | 00명(사망 00명, 실종 00명, 부상 00명) | | | |
| |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피해상황 (예)의식불명 |
| | 재산피해 | | | | |
| | 기타사항 | | | | |
| III. 조치 상황 | 조치내역 | 구급사항 | | | |
| | | 복구사항 | | | |
| | | 언론모니터링 | | | |
| | | 기타 | | | |
| IV. 향후 계획 | 복구계획 | | | | |
| | 피해자 지원 | | | | |
| | 기타 | | |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연천군수 귀하

서식9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개인별 임무카드(예시)

○ 개인별 임무카드(예시)

- 위기상황 발생시 시설 직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개인임무 숙지

| 방재팀(성명:○○○) | | |
|---|--|---|
| ☎방재팀:000-0000-0000 ☎00소방서:000-0000-0000 ☎00경찰서:000-0000-0000 ☎00병원:000-0000-0000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방재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2. 준공 도면 확보(소방, 건축) 3. 시설물 사전 예방 점검 4. 관련 유관 기관 신고 5. 내부 비상연락망 가동 6. 상황별 안내방송 실시 7. 대피인원 및 환자 인원 집계 등 |
| ☎ 방재팀장 : 휴대폰 번호 | | |

| 대피유도반(성명:○○○) | | |
|---|--|--|
| ☎방재팀:000-0000-0000 ☎00소방서:000-0000-0000 ☎00경찰서:000-0000-0000 ☎00병원:000-0000-0000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대피 유도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누출 | 1. ○○층 ○○구역 비상대피로 확보 2. ○○층 ○○구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진입을 통제하고 비상구로 대피 유도 ※ 유도봉 소지 3. ○○층 ○○구역 화장실 등 사각 지대에 잔류인원 있는지 확인 등 |
| ☎ 대피유도반장 : 휴대폰 번호 | | |

| 현장대응반(성명:○○○) | | |
|---|----------------|--|
| ☎방재팀:000-0000-0000 ☎00소방서:000-0000-0000 ☎00경찰서:000-0000-0000 ☎00병원:000-0000-0000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현장 대응 | 화재 테러 | 1. 초기 화재진압(확산지연 등) 2. 위험물 또는 테러용의자 주변 접근통제 3. 유관기관 도착 시 안내 등 |
| | 침수 가스누출 | 1. 배수 펌프 가동 및 차수판 설치 2. 시설의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 요인 차단 등 |
| | 지진 폭설 붕괴 | 1. 대피유도반/의료지원반 지원 2.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3.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
| ☎ 현장대응반장 : 휴대폰 번호 | | |

| 의료지원반(성명:○○○) | | |
|---|--|--|
| ☎방재팀:000-0000-0000 ☎00소방서:000-0000-0000 ☎00경찰서:000-0000-0000 ☎00병원:000-0000-0000 | | |
| 임무 | 위기유형 | 임 무 |
| 기본 | 공통 | 1. 위기상황 전파, 신고(방재팀, 소방서, 경찰서 등) 2. 현 위치 초동대응 등 3.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유도 4. 환자 발생 신고, 응급처치 등 |
| 의료 지원 | 화재 지진 폭설 붕괴 테러 침수 가스유출 | 1. 부상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지원 2. 부상자 인원이 적을 경우 인명대피 유도 지원 3. 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에게 연락 조치 등 |
| ☎ 의료지원반장 : 휴대폰 번호 | | |

000사고 상황판단 회의자료(예시)

□ 사고개요

- 일 시: '24 0. 00(월) 00:00경
- 장 소: 00스포츠센터 (00읍 00로 00번길, 운동시설, 연면적<0,000m²>)
- 사고원인: 원인 미상의 지하층 화재발생, 현재 원인 조사 중
- 피해상황
 - 인명피해: 사상 0명(사망 0, 부상 0), 응급환자 분류(중·경상) 이송
 - 시설피해: 조사 중
 - 환자이송 상황: 00명(환자 00, 직원 0) ※ 이송병원 현황(별첨)

□ 응급조치 사항

- 14:00 0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현장 작업자)
- 14:01 연천군/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사고 발생 보고 (시설물 담당자)
- 14:05 연천소방서 도착,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수행
(건물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사 다수, 다수인명피해 발생 가능)
- 14:05 연천경찰서 현장 출동 및 대피지원 등 사고발생 현장 통제
- 14:05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현장 가스차단 조치 요청 등 유관기관
에 2차 피해확산방지 조치 및 복구 지원 요청
- ⋮
- ⋮
- ⋮

□ 회의안건

①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정

- 각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위기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이【심각 단계】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결정 필요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② 실무반 편성 및 유관기관 역할에 관한 사항 ※ 사고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참조

- (실무반 편성) 13개 협업분야 10개 부서는 현 위치 근무
- (실무반별,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③ 향후 중점 대처 사항

- 긴급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소방본부장(관할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 및 긴급 복구(경기도 협조)·현장 교통통제(경찰 협조) 등 2차 피해방지 조치
 - 수습주관부서와 행정복지국은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구성하여 의료지원, 피해자·유가족 연락, 의료지원, 장례 절차 지원 등 담당

①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체계 구축

- 수습주관부서(또는 복지정책과)는 사상자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가족에게 연락

② 생존자, 피해자 등 대기실, 교통, 숙박시설 지원

- 수습주관부서에서는 장기화 대비 유가족 등 편의시설을 재난 현장 인근에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설치 지원

③ 후송병원, 영안실 등에 직원 파견

- 수습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사상자에 대한 병원 입원실, 장례식장, 장의용품 및 직원 배치 지원

④ 병원별 사상자 현황 파악

- 구조희생자 신원 파악, 명단작성 등은 긴급구조기관(소방, 경찰)에서 발표하는 피해 현황으로 일원화
- 긴급구조통제단의 활동이 종료(지휘권 이양)된 후에는 재난 수습주관부서에서 통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SNS 등을 통해 신속히 파악

⑤ 급식, 구호물품 배부, 자원봉사자 배치(행정담당관)

⑥ 각종 참여 자원봉사자 등 역할 분담 조정 담당 직원 배치

- 사고 현장 긴급구조·구급·복구 등 대응인력 안전확보 철저

4]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 수습주관부서장은 필요한 자원 신속히 파악 및 응원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을 자체 조달하고, 추가 필요시 연천군 통합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 연천군 통합지원본부 및 수습주관부서는 필요한 자원 부족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파악·응원 요청 및 지원
 - 필요시 건설협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에 장비와 인력 요청

| 장비·자재 동원순서 |
|--|
| ① 긴급구조통제단 자체 조달 ② 연천군 통합지원본부 지원 ③ 경기도 가용 자원 동원 |

※ 재난 초기의 인명구조 및 이송은 소방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의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상황이 종료된 후 이재민 구호, 시설물 복구는 통합지원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5] 시장 현장지휘 판단

- 재난수습부서 부서장은 피해상황 등을 감안 시장의 재난현장 확인 여부 판단

6] 기타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대상시설: 해당(연면적 5,000㎡이상 운동시설)
- 적용요건*: 미해당(부상자만 현재 5명)

* 중대재해요건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인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要

※ 다만 추후 사고(화재) 원인으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법 적용 가능

붙임 1. 실무반 편성 및 유관기관 임무 역할 1부. ※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참고 첨부

2. 00년 000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결과 1부. ※ 반기별 자체 이행점검결과 첨부

(참고) 상황판단회의 절차

- 개최시기: 재난 발생 시 및 재난 발생 우려시기
- 개최장소: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구관2층) 등
- 상황판단회의 단계별 조치사항 및 회의내용

| | |
|-----------------------------|--|
| 【사전 조치】 (주관부서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징후) 1차 판단, 부서 전파 ■ 긴급구조 상황정보 지속 수집, 판단 |
| ↓ | |
| 【회의 개최】 (주관부서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개최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현재까지의 재난상황 및 앞으로 재난 전망 분석) 및 보고(주관부서의 장 → 담당 국장)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 등 - 주재: 본부장(연천군수) 또는 차장(연천부군수) - 참석: 재난 주관(협업)부서의 국장, 과장 및 담당, 필요시 유관기관 관계자 |
| ↓ | |
| 【재난상황 분석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일시, 형태, 원인, 인적/물적 동원현황(파악 가능 시) - 현장지휘본부 운영상황 ■ 현장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및 대피명령 - 초기진화, 수방조치 및 응급의료 -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전기, 수도 등) - 유관기관 지원 여부 ■ 기타 중점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확산 여부 - 재난수습 가능성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향후 대응 계획에 관한 방향 등 |
| ↓ | |
| 【논의 및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대응 단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정 ■ 현장상황관리 ■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상황 보고 및 지원 요청 |
| ↓ | |
|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

사업장 개요

| | | | |
|-------|---------|------------------|---------------------|
| 시설물명 | 00시설 | | |
| 시설종류 | | 시설규모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 | |
| 소재지 | | 사고종류 | |
| 구조물손실 | 백만원 | 인적피해 | 사망()명, 부상()명 |
| 장비손실 |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 | 해 당 () 해당없음 () |

재해자 개요

| | |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직업 | | 상해종류 | | 상해부위 | | 가해물 |

※ 위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 기재함.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

| | | |
|-------------|---|--|
|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 재해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함. | |
| | 1) 재해발생 과정 | |
| | 언제 (재해발생일시) | |
| | 어디서 (지역, 공간 등 재해발생장소) | |
| | 누가 | |
| | 무엇을 사용, 어떤 환경에서 (작업환경) | |
| |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작업내용 및 목적) | |

| | | |
|--|------------------|------------|
| | 어떻게 하다가(재해자의 동작) | |
| | 어떻게 재해를 당함(발생형태) | |
| | 2) 재해발생원인 | |
| | 가. 인적원인 | |
| | 나. 물적원인 | |
| | 다. 관리적원인 | ① 기술적 원인 |
| | | ② 교육적 원인 |
| | | ③ 작업관리상 원인 |

재해 재발방지 대책

○ 인적원인에 대한 대책(재해원인 중 인적원인이 있는 경우)

-

○ 물적원인에 대한 대책(재해원인 중 물적원인이 있는 경우)

-

○ 관리적 원인에 대한 대책(재해 주요 원인 한가지 선택)

- 기술적 원인에 대한 대책
- 교육적 원인에 대한 대책
- 작업관리상 원인에 대한 대책

○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각기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

참고1**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주소****□ 원료 및 제조물**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주 소 |
|----|-------|----------------------------------|---------------------|
| 1 | 농업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나동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 |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 2 | 농업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다동 (친환경농업관리실) |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 3 | 농업개발과 | 연천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42번길 80 |
| 4 |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센터 마동 (유용미생물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 5 |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센터 바동 (고체미생물발효실) |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 6 | 의료지원과 | 연천군보건의료원(구내식당) | 연천군 은대성로 95 |
| 7 | 의료지원과 | 연천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 연천군 은대성로 95 |
| 8 | 의료지원과 | 연천군보건의료원(약국) | 연천군 은대성로 95 |
| 9 | 사회복지과 | 연천군노인복지관 |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108번길 11 |
| 10 | 행정담당관 | 연천군청 구내식당(본관 지하1층)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 공중이용시설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주 소 |
|----|-------|------------|---------------------|
| 1 | 문화체육과 | 고대산 야구장 옹벽 |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0 |
| 2 | 문화체육과 | 연천수레올아트홀 |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50 |
| 3 | 복지정책과 | 연천군 종합복지관 |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
| 4 | 사회복지과 | 백학꿈나무어린이집 | 연천군 백학면 두일로 113 |
| 5 | 사회복지과 | 연천어린이집 |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73 |
| 6 | 회계과 | 연천군청(본관)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 7 | 회계과 | 연천군청(신관) |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 8 | 건설과 | 남계대교 |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
| 9 | 건설과 | (구)초성교 |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153 |
| 10 | 건설과 | (구)한탄교 | 연천군 전곡읍 한여울로 54 인근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주 소 |
|----|------|--------|--------------------------------|
| 11 | 건설과 | 고탄교(구)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3-13 |
| 12 | 건설과 | 고탄교(신)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3-13 |
| 13 | 건설과 | 궁신교 |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7-37 |
| 14 | 건설과 | 대광교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872-2 |
| 15 | 건설과 | 동막1교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361-1 |
| 16 | 건설과 | 백의교 |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1-4 |
| 17 | 건설과 | 보막교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25 |
| 18 | 건설과 | 사랑교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69 |
| 19 | 건설과 | 신천교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42-5 |
| 20 | 건설과 | 옥산2교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62-14 |
| 21 | 건설과 | 옥산교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10-2 |
| 22 | 건설과 | 와초교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41-1 |
| 23 | 건설과 | 왕림교 |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90-1 |
| 24 | 건설과 | 조형석옹벽 |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
| 25 | 건설과 | 구미1제 |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5 ~ 구미리 11-4 |
| 26 | 건설과 | 구미2제 |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14-3 ~ 구미리 221-2 |
| 27 | 건설과 | 군남제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63 ~ 진상리 622-5 |
| 28 | 건설과 | 노곡석장제 |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22-5 ~ 노곡리 631-5 |
| 29 | 건설과 | 대전제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8-2 ~ 대전리 634-8 |
| 30 | 건설과 | 동이1제 |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20 ~ 동이리 73 |
| 31 | 건설과 | 동이2제 |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395-3 ~ 동이리 425-2 |
| 32 | 건설과 | 무등제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29-2 ~ 무등리 8-8 |
| 33 | 건설과 | 복삼1제 | 연천군 왕징면 복삼리 183-6 ~ 복삼리 217 |
| 34 | 건설과 | 복삼2제 | 연천군 왕징면 복삼리 222-4 ~ 복삼리 259-1 |
| 35 | 건설과 | 선곡제 |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844 ~ 삼거리 532-8 |
| 36 | 건설과 | 아미제 |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0-4 ~ 아미리 134-1 |
| 37 | 건설과 | 우정1제 |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78-3 ~ 우정리 149-1 |
| 38 | 건설과 | 우정2제 |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48-2 ~ 우정리 169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주 소 |
|----|------|---------|--------------------------------|
| 39 | 건설과 | 원당1제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9-5 ~ 원당리 408-22 |
| 40 | 건설과 | 원당2제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536-3 ~ 원당리 954-4 |
| 41 | 건설과 | 원당3제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924-3 ~ 고랑포리 35-3 |
| 42 | 건설과 | 초성1제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11-9 ~ 초성리 232-5 |
| 43 | 건설과 | 초성2제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28-31 ~ 초성리 392-1 |
| 44 | 건설과 | 초성3제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97-2 ~ 초성리 500-8 |
| 45 | 건설과 | 초성제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22-5 ~ 초성리 산93-12 |
| 46 | 건설과 | 학곡1제 |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513 ~ 노곡리 600-2 |
| 47 | 건설과 | 학곡2제 |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992-2 ~ 학곡리 853-4 |
| 48 | 건설과 | 학곡제 |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588-18 ~ 노곡리 620-8 |
| 49 | 건설과 | 강내1교 |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420 |
| 50 | 건설과 | 강내3교 |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219 |
| 51 | 건설과 | 강내4교 |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101 |
| 52 | 건설과 | 강내5교 |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093 |
| 53 | 건설과 | 강내6교 |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063 |
| 54 | 건설과 | 공삼교 | 연천군 중면 적거리 58-1 |
| 55 | 건설과 | 내산1교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54-4 |
| 56 | 건설과 | 내산2교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24-4 |
| 57 | 건설과 | 내산5교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278-7 |
| 58 | 건설과 | 내산새마을1교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67-2 |
| 59 | 건설과 | 노동2교 |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506-4 |
| 60 | 건설과 | 노동3교 |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221-3 |
| 61 | 건설과 | 노동5교 |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482-24 |
| 62 | 건설과 | 노동교 |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333-1 |
| 63 | 건설과 | 논골교 |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17-1 |
| 64 | 건설과 | 대광2교 |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98-6 |
| 65 | 건설과 | 대만교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25 |
| 66 | 건설과 | 동막2교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262-53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주 소 |
|----|------|-------|--------------------|
| 67 | 건설과 | 동막3교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23 |
| 68 | 건설과 | 두일교 |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93 |
| 69 | 건설과 | 마전2교 |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356 |
| 70 | 건설과 | 백석교 |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127-3 |
| 71 | 건설과 | 백세교 | 연천군 중면 합수리 905 |
| 72 | 건설과 | 백학교 |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51-3 |
| 73 | 건설과 | 부흥2교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2-1 |
| 74 | 건설과 | 부흥교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79-1 |
| 75 | 건설과 | 삼거1교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61-11 |
| 76 | 건설과 | 삼거2교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08-1 |
| 77 | 건설과 | 석장1교 |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12 |
| 78 | 건설과 | 석장2교 |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43 |
| 79 | 건설과 | 석장교 |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29 |
| 80 | 건설과 | 설운교 |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857-3 |
| 81 | 건설과 | 성창마을교 |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194-2 |
| 82 | 건설과 | 수동1교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9-3 |
| 83 | 건설과 | 수동교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53-2 |
| 84 | 건설과 | 신기교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32-3 |
| 85 | 건설과 | 아미교 |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242 |
| 86 | 건설과 | 양원2교 |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932-11 |
| 87 | 건설과 | 양원3교 |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295-3 |
| 88 | 건설과 | 양원4교 |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275 |
| 89 | 건설과 | 양원교 |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457-1 |
| 90 | 건설과 | 연못교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49-4 |
| 91 | 건설과 | 옥계2교 |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035 |
| 92 | 건설과 | 옥계3교 |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931-3 |
| 93 | 건설과 | 옥계4교 |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170-1 |
| 94 | 건설과 | 옥계교 |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261-3 |

| 연번 | 소관부서 | 시설물명 | 주 소 |
|-----|-------|---------------------|--------------------|
| 95 | 건설과 | 옥골교 |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381-7 |
| 96 | 건설과 | 와천교 |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869-7 |
| 97 | 건설과 | 유촌1교 |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987-5 |
| 98 | 건설과 | 유촌2교 |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03-1 |
| 99 | 건설과 | 유촌3교 |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28-1 |
| 100 | 건설과 | 유촌4교 |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33-1 |
| 101 | 건설과 | 은대교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88-1 |
| 102 | 건설과 | 절골천2교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 1-35 |
| 103 | 건설과 | 진천교 | 연천군 중면 적거리 55 |
| 104 | 건설과 | 집중교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12-2 |
| 105 | 건설과 | 찬우물교 |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0-17 |
| 106 | 건설과 | 학곡교 |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993-1 |
| 107 | 건설과 | 골미교 |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66 |
| 108 | 건설과 | 차탄잠수교 |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524-2 |
| 109 | 건설과 | 마거교 |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189-1 |
| 110 | 보건의료원 | 연천군보건의료원 |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
| 111 | 농업개발과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가동 |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 112 | 전곡읍 | 연천군문화체육센터(전곡행정복지센터) |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45 |

| | | | | | |
|---|-------------------------------------|-------------------|------------------|--------------|--|
| 1. 사업장 일반현황 | | | | | |
| 상호(명칭) | | 업종 | 취급하는 원료제조물 종류 | 안전보건담당자 | |
| 연락처 |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 사무실 등 | | | | |
| 주소(사업장) | | | | | |
| 2.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안전장치 | | | | | |
| ①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 | | | | |
| ②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 | | | | |
| 3.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 | | | | |
| 내용 |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시 조치계획 | |
| (점검대상 내용 등) | 점검주기, 수시점검 요건 및 준비사항 등 | 결과보고, 피드백 절차 등 | | | |
| 4.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에 따른 조치 | | | | | |
| ① 내부 대응 | 비상 연락체계 및 비상 대응조직 상세, 신고접수 및 조치방안 등 | | | | |
| ② 외부 대응 | 관계기관의 신속한 보고 및 신고 절차 | | | | |
| 5.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신고 및 조치 계획 | | | | | |
| ①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신고, 전파절차 등) 및 가동중지에 관한 절차 등 | | | | | |
| ② 응급조치계획(가동중지, 회수, 응급구호조치 등) | | | | | |
| 6.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 | | | |
| ①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 | | | | |
| ②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 계획 | | | | | |

참고3

법 적용대상 (원료 및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원료·제조물

|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
| 원 료 | (별도 정의규정 없음) | |
| 제 조 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외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필요
 - 필요한 인력 편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등

☐ 업무처리절차 마련 대상 원료 · 제조물

| 관련법 | 원료·제조물 | 세부내용 | 비고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독성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아나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 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호) | |
| 농약관리법 | 농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병해충(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 |
| | 천연식물 보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20호) 충족하는 것 | |
| | 원제(原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 |
| | 농약활용 기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 농약활용기지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9호) 참조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毒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

| 관련법 | 원료·제조물 | 세부내용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외마약(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규칙 2조 참조 | |
| | 향정신성 의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동법 시행령 [별표 3] 부터 [별표7]까지 참조 | |
| | 대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위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7의2] 참조 위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
| 비료관리법 | 보통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 |
| | 부산물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 |
|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
| | 살생물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
| 식품위생법 | 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 |
| | 식품첨가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 포함] | |
| | 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
| | 용기·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 |
| 약사법 | 의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
| | 의약외품 (醫藥外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 |

| 관련법 | 원료·제조물 | 세부내용 | 비고 |
|--------------------------|--------------|---|----|
| | | <p>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생리대, 마스크, 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구취 등 방지제, 모기 기피제 등,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p>※ 자세한 내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참조)</p> | |
|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약사법」제85조제1항 참조 | |
| 원자력 안전법 | 방사성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 |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 |
| | 폭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 함유한 폭약 • 초유폭약 • 함수폭약 •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항공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 포함) • 실탄(實彈)(산탄 포함) 및 공포탄(空砲彈) • 신관 및 화관 | |

| 관련법 | 원료·제조물 | 세부내용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 시동약(始動藥) • 꽃불 • 장난감용 꽃불 ※ 등법 시행규칙 4조 참조 •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 |
| 화학물질 관리법 | 유독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참조 | |
| | 허가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
| | 제한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참조 | |
| | 금지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참조 | |
| | 사고대비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 참조 | |

※ 위 목록(11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의 원료 또는 제조물로 **그 밖에*** 제1~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될 수 있음.

- * **그 밖에** :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예시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2. 화장품법 3. 사료관리법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 광산안전법 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9. 승강기안전관리법
10. 위험물안전관리법 11. 해사안전법 12. 지하수법 13. 수도법 14. 먹는물관리법 15. 도시가스사업법
16. 선박안전법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8. 전기안전관리법 19. 자동차관리법
20. 석면안전관리법 21.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법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공중이용시설

| 관련법 | 구분 | 세부구분 | 적용대상 | 비고 |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특별법 | 교량 | 도로교량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 | | |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3종교량 중 「도로법」 10조의 도로 외에 설치된 교량 제외 | |
| | | 철도교량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철도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 | | |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철도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
| | | 복개구조물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 | 터널 | 도로터널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 | | |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 중 준공 10년 경과 도로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
| | | 철도터널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철도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
| | | |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철도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
| | | 지하차도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지하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 관련법 | 구분 | 세부구분 | 적용대상 | 비고 |
|---|-----------|-------------|--|----|
| | 옹벽 및 절토사면 | 옹벽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옹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 | | 절토사면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절토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 | 상하수도 | 광역상수도 | 시설물안전법 상 1종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 |
| | | 지방상수도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지방상수도 |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물안전법 상 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하천 | 하구둑 | 시설물안전법 상 1종 하구둑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방조제 | |
| | | 제방 | 시설물안전법 상 2종 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 |
| | | 보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 | 건축물 | 1·2종 철도 역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 시설 | |
| | | 1·2종 대형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의 건축물 | |
| | | 1·2종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의료시설 | |
|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수련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운동시설 | | | | |
| 연면적 5천㎡ 이상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 | | |

| 관련법 | 구분 | 세부구분 | 적용대상 | 비고 |
|------------------|--|------------|---|----|
| | 항만 | 방파제·파제제·호안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방파제·파제제·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
| | | 계류시설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계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
| | | 댐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 실내 공기질 관리법 | 건축물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에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
|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 |
| | | 도서관 | 「도서관법」 상 도서관 중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 | |
| | |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미술관 | |
| | | 옥내 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상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 이상 옥내 전시시설 | |
| | | 실내 공연장 | 「공연법」 상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공연장 | |
| | | 실내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 |
| | | 의료기관 | 「의료법」 상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
| | | 지하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 이상 지하 장례식장 | |
| |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 |
|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
| | |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 |
| 업무시설 | 「건축법」 상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 | |

| 관련법 | 구분 | 세부구분 | 적용대상 | 비고 |
|-----|--|-------------|--|----|
| | | 복합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 |
| | | 운수시설 대합실 | 철도역사 시설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 | | |
| |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대합실 | | | |
| |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여객터미널 | | | |

공중교통수단

| 구분 | 적용대상 | 비고 |
|--------|---|----|
| 도시철도차량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
| 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제외) | |
| 시외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시외버스운송사업) | |
| 여객선 | 「해운법」 상 여객선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중 • 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 |
| 항공기 |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 |

「다중이용업소법」 관련 법률

| 다중이용업소법(소관 부처 : 소방청) | | |
|----------------------|---------|---|
| 구 분 | 관련 법률 | 비고 |
| 휴게음식점 | 식품위생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全 업종) 중 공중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적용됨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 |
|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 |
| 제과점 | 식품위생법 | |
| 단란주점 | 식품위생법 | |
| 유흥주점 | 식품위생법 | |
| 목욕장(찜질방) | 공중위생관리법 | |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 |
| 안마시술소 | 의료법 | |
| 영화상영관 | 영화비디오법 | |
| 비디오감상실 | 영화비디오법 | |
| 비디오소극장 | 영화비디오법 | |
|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화비디오법 | |
| 게임제공업 | 게임산업법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법 |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법 | |
|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법 | |
| 가상체육시설업 중 골프 | 체육시설법 | |
| 학원 | 학원법 | |
| 실내(권총)사격장 | 사격장안전법 | |
| 고시원 | 자유신고업 | |
| 화상대화·전화방 | | |
| 콜라텍 | | |
| 수면방 | | |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4

유해·위험요인 목록(예시)























□ 교량

| 연번 | 부재명 | 세부항목 | 결합사례 | 사례1 | 사례2 |
|----|-----------|--------|-----------------------------|---|---|
| 1 | 상부구조형(거더) | 강재 | 사례1)받침부 복부부식 사례2)받침부 부식 |  |  |
| 2 | 상부구조 바닥판 | 콘크리트 | 사례1)거더교망상균열 사례2)균열 |  |  |
| 3 | 하부구조 | 기초 | 사례1)콘크리트침식 사례2)콘크리트침식 |  |  |
| 4 | 하부구조 | 교대 | 사례1)두부박락 사례2)받침부파손 |  |  |
| 5 | 받침 | 강재받침 | 사례1)면받침파손 사례2)선받침들뜸 |  |  |
| 6 | 배수시설 | 배수관 | 사례1)오물퇴적 사례2)그레이팅파손 |  |  |
| 7 | 난간·연석 | 강재난간 | 사례1)가드레일파손 사례2)강재난간파손 |  |  |
| 8 | 교면포장 | 아스팔트 | 사례1)균열,박리 사례2)균열 |  |  |
| 9 | 신축이음 | 본체 | 사례1)고무마모,강판노출 사례2)본체유간과다 |  |  |
| 10 | 기타 | 붕괴유발부재 | 사례1)가로보하부플랜지 사례2)받침강재하단 |  |  |

□ 터널

| 연번 | 부재명 | 세부항목 | 결함사례 | 사례1 | 사례2 |
|----|------|-------|--|---|---|
| 1 | 본체부 | 천정부 | 사례1)천정부배면공동 사례2)천정부종방향균열 |  |  |
| 2 | 본체부 | 어깨부 | 사례1)어깨부 단차균열 사례2)어깨부 단차균열 |  |  |
| 3 | 본체부 | 어깨부 | 사례1)터널 단면변화부위의 균열 및 백태 사례2)누수.박락.배수관노출 |  |  |
| 4 | 본체부 | 측벽부 | 사례1)라이닝 모르터 균열 사례2)유해수에 의한 라이 닝 열화 |  |  |
| 5 | 본체부 | 측벽부 | 사례1)시공이음의 균열누수 사례2)조적식 라이닝의 박리 |  |  |
| 6 | 본체부 | 바닥부 | 사례1)도로터널 바닥부 균열 사례2)배수구 정비불량 |  |  |
| 7 | 본체부 | 바닥부 | 사례1)배수구 측면파손 사례2)배수구 정비불량 |  |  |
| 8 | 부속시설 | 내부설비 | 사례1)소화전의 상태불량 사례2)전원설비 불량 |  |  |
| 9 | 부속시설 | 외부배수로 | 사례1)갱문 상부배수로 상태불량 사례2)갱문 상부배수로 이물질 퇴적 |  |  |
| 10 | 부속시설 | 옹벽 | 사례1)파손 사례2)전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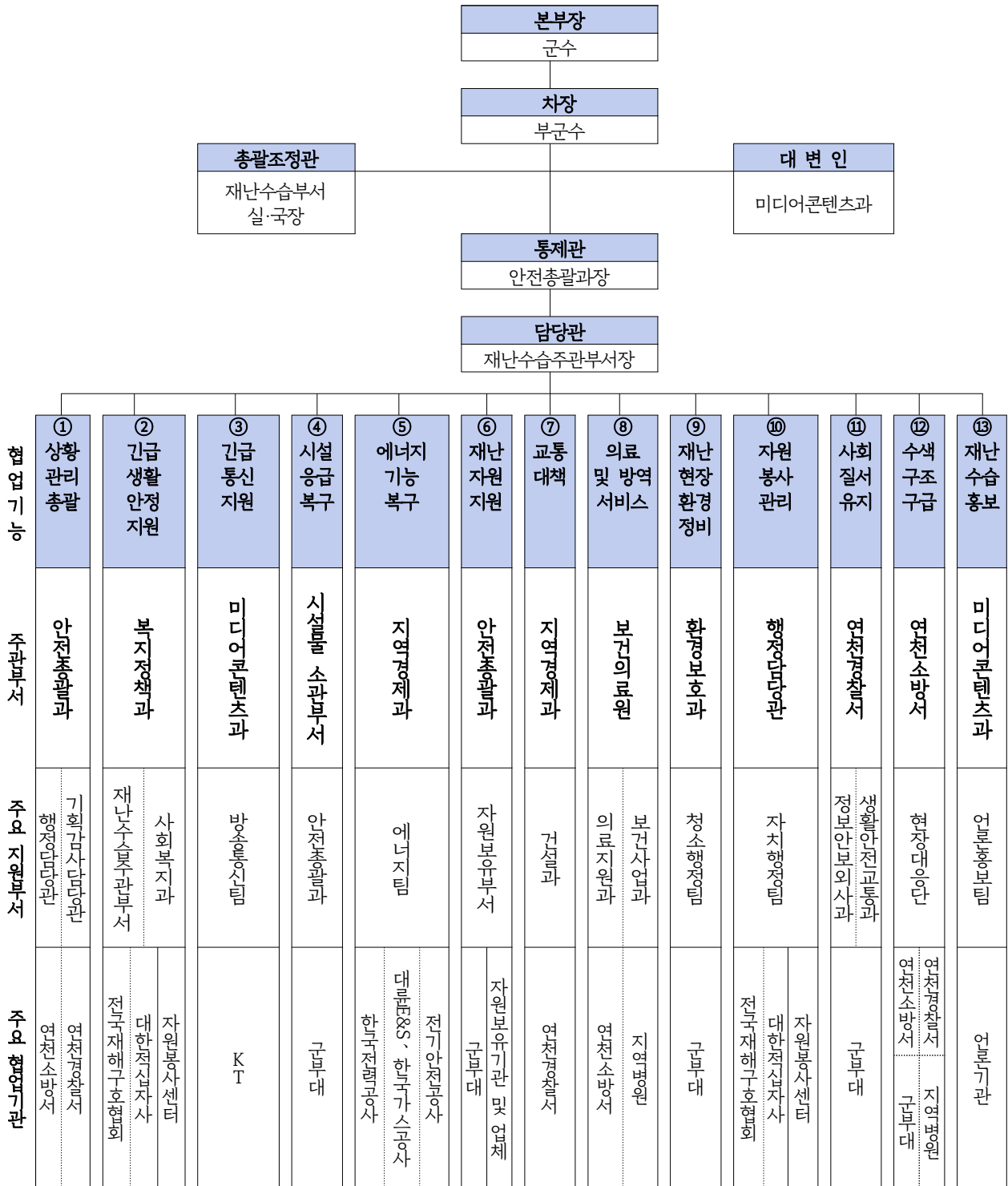
□ 건물

| 연번 | 부재명 | 세부항목 | 결합사례 | 사례1 | 사례2 |
|----|-------------------|-------------------|--|---|---|
| 1 | 박리,박락 (타일,화강석) | 박리,박락 (타일,화강석) | 사례1)타일 박리 및 탈락 사례2)화강석판 탈락 |  |  |
| 2 | 도장면 박리,박락 | 도장면 박리,박락 | 사례1)내벽체 도장 박리 및 박락 사례2)외벽체 도장 박리 및 박탈 |  |  |
| 3 | 누수 | 지하벽체 누수 | 사례1)지하벽체 누수 사례2)지하벽체 누수 |  |  |
| 4 | 누수 | 화장실 누수 | 사례1)화장실 누수 사례2)화장실 누수 |  |  |
| 5 | 균열 | 균열 | 사례1)보 전단균열 사례2)슬래브 중앙부 균열 |  |  |
| 6 | 철골부재결함 | 철골부재결함 | 사례1)내부 마스트 부식 사례2)테크 플레이트 부식 |  |  |
| 7 | 철근부식 | 철근부식 | 사례1)보 철근노출 사례2)피복두께 부족 철근 |  |  |
| 8 | 콘크리트, 재료분리 | 콘크리트, 재료분리 | 사례1)보 재료분리 사례2)보 재료분리 |  |  |
| 9 | 유지관리, 결함 | 유지관리, 결함 | 사례1)맨홀 내부 청소불량 사례2)벽체절단 후 방치 |  |  |
| 10 | 유지관리, 결함 | 유지관리, 결함 | 사례1)보 절단 (설비 덕트 작업) 사례2)지붕층 우수 드레인 배수불량 |  |  |
| 11 | 유지관리, 결함 | 유지관리, 결함 | 사례1)지붕층 피뢰침 기능 상실 사례2)지하층 피트 설비 폐기물 방치 |  |  |

참고5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및 주요 임무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지역의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필수 실무반은 반드시 포함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 임무

| 구성 | | 주요 임무 |
|-----|---------------------------|---|
| 지휘부 | 본부장 (군수) |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
| | 차장 (부군수) |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
| | 총괄조정관 (재난수습부서 실·국장) |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 | 대변인 (미디어콘텐츠과장) | ○ 재난수습홍보 총괄 |
| | 통제관 (안전총괄과장) | ○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 |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
| 실무반 | ① 재난상황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 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 |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 등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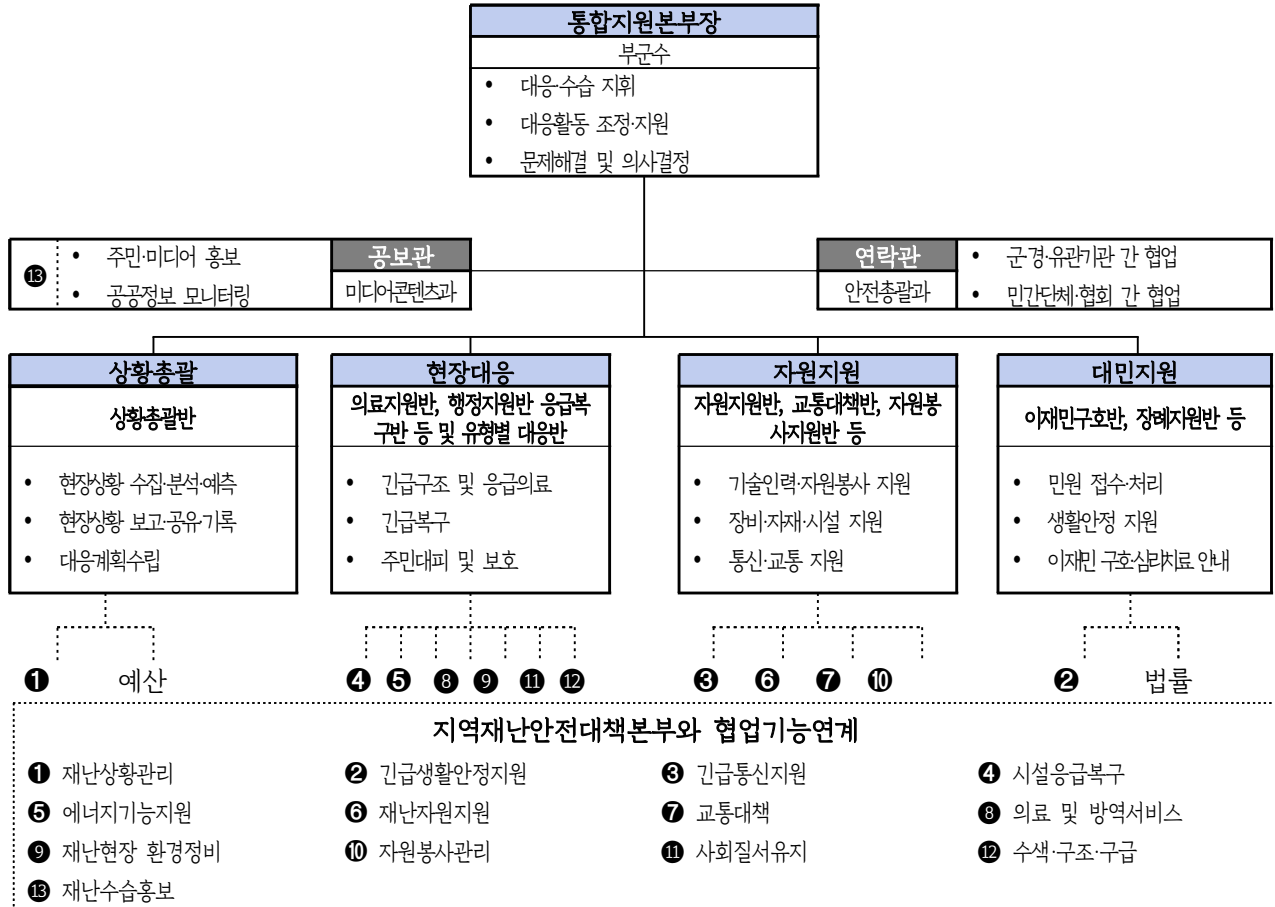
| 구성 | 주요 임무 |
|---------------------|---|
| ③ 긴급 통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기반시설 긴급 복구 지원 ○ 통신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 ④ 시설 응급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 복구상황 파악 ○ 공공·사유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 복구현황 파악 |
| ⑤ 에너지 기능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 ⑥ 재난자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 ⑦ 교통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도로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 구성 | | 주요 임무 |
|----|-------------------|---|
| | ⑩ 자원봉사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사유시설 응급 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 | ⑪ 사회질서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 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 | ⑫ 수색·구조 ·구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 | ⑬ 재난수습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참고6

연천군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도 및 주요 임무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주요 임무

| 구분 | 실무반 | 주요 임무 | 소관 부서 | 지대본 연계 |
|----------|--------|---|--------------------|--------------------------|
| 지휘부 | 본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부군수 (필요시 군수) | ① 재난상황관리 |
| | 공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브리핑 • 취재지원 | 미디어 콘텐츠과 | |
| | 연락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 안전총괄과 | |
| 상황 총괄 | 상황총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수립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 예산 확보 및 집행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브리핑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현장상황수집·보고(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 안전총괄과 | ① 재난상황관리 |
| | 피해조사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 | |
| | 전문자문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 외부전문가 (필요시) | |
| 현장 대응 | 응급복구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 복구 •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 활동 | 시설물 소관부서 | ④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
| | 에너지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 지역경제과 | ⑤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복구 |

| 구분 | 실무반 | 주요 임무 | 소관 부서 | 지대본 연계 | |
|---------|---------|--|---|---|------------------|
| 유형별 대응반 | 의료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 보고 | 의료지원과 |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 |
| | 환경정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 환경보호과 |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 |
| | 질서유지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교통통제 및 현장 통제 | 지역경제과 | ⑪ 사회질서유지 | |
| | 구조구급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 안전총괄과 | ⑫ 수색·구조·구급 지원 | |
| |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 산림녹지과 | ① 재난상황관리 |
| | | 건물 안전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 시설물 소관부서 | ④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
| | | | 제설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리조트 붕괴 사고) | 건설과 |
| | | 오염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 환경보호과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 | | 농·축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피해능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 축산과 농업정책과 | ① 재난상황관리 |
| | 자원 지원 | 통신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 | 미디어 콘텐츠과 | ③ 긴급 통신 지원 |
| 교통대책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 지역경제과 | ⑦ 교통대책 | |

| 구분 | 실무반 | 주요 임무 | 소관 부서 | 지대본 연계 |
|----------|---------|---|----------------|---------------------|
| | 자원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 피해지역 응급 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에너지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 안전총괄과 |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
| | 자원봉사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 피해상황 전달 등 지원단과 상황 공유 • 자원봉사 활동 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 행정담당관 | ⑩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
| 대민 지원 | 이재민구호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재난지원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② 긴급생활안정지 원 |
| | 장례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 | |
| | 법률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및 민간법률자문 | 기획감사 담당관 | |
| 유관 기관 | 유관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 유관기관 파견자 | - |

참고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p style="text-align: center;">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p>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 |
|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 | <p>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p> |

| | |
|--|--|
| <p>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p> <p>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p> <p>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p> <p>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p> <p>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p> <p>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p> <p>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p> | |
|--|--|

| | |
|---|--|
| <p>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p>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 |
| <p>제2장 중대산업재해</p> | |
| <p>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p>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 |

| | |
|--|--|
| | <p>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p> <p>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p> <p>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p> <p>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p> |
|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p> <p>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p> <p>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 <p>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p> <p>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p> <p>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p> <p>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p> |

| | |
|--|---|
| | <p>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p> <p>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p>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p> <p>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p> <p>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p> <p>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p> <p>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 <p>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p> <p>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p>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p> |
|--|---|

| | |
|--|---|
| | <p>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p> <p>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p> <p>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p>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p> | <p>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

| | |
|---|--|
| <p>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p>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 <p>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p> |

| | |
|--|--|
| | <p>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p> <p>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p> <p>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p> <p>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p> |
| <p>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p> <p>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p> | <p>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
| <p>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p>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p> <p>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p> <p>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p> <p>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p> |

| | |
|---|--|
| | <p>하는 사항</p> <p>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p> <p>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p> <p>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p> <p>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p>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p> <p>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p> <p>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p> <p>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
| 제3장 중대시민재해 | |
| <p>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 <p>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p> |

| | |
|---|--|
| <p>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
| <p>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제10조(공중이용시설·대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p> <p>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p> <p>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p> <p>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p> |

| | |
|--|--|
| | <p>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p> <p>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p> <p>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p> <p>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p> <p>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p> <p>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p> |
|--|--|

| | |
|--|---|
| | <p>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p> <p>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p> |
| <p>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p>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 |

| | |
|--|---|
| | <p>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대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
| <p>제4장 보칙</p> | |
| <p>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p> |
| <p>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p> | <p>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p> |

| | |
|--|---|
| <p>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p> |
| <p>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 |
| <p>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
| <p>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 |

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